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  
(최종보고서)

2018. 10. 22

연구수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연구결과보고서를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정용찬

참여 연구원 : 신지형

최지은

김규성

윤 건

오윤석

유선실

김유진

이 호





# 목 차

<b>제 1 장 연구 개요</b> .....	<b>11</b>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3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 필요성 .....	13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	18
1. 연구 범위 .....	18
2. 연구 방법 .....	19
<b>제 2 장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편 방안</b> .....	<b>23</b>
제1절 통계승인제도 개요 .....	25
1. 국가통계의 개념 .....	25
2. 통계작성기관 .....	28
3. 통계작성지정기관 .....	29
4. 통계작성의 승인 .....	31
5.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	33
제2절 국가통계 운영 현황 .....	35
1. 국가승인통계 현황 .....	35
2. 통계작성기관 이외 주요 국가 기관의 통계 관리 현황 .....	45
3. 주요국의 통계승인제도 .....	61
제3절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방안 .....	72
1. 개요 .....	72
2.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	72
3.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	78
4. 통계 관리 체계 개선 .....	84
<b>제 3 장 품질관리제도 개편방안</b> .....	<b>97</b>
제1절 통계품질진단 개요 .....	99
1. 통계품질관리 개편 필요성 .....	99
2. 우리나라 통계품질관리 제도 .....	101
3. 통계품질진단 방법 .....	105

4. 국가승인통계 현황 .....	109
5. 주요국의 품질관리제도 .....	111
제2절 품질진단제도 평가 .....	116
1. 정기통계품질진단 .....	116
2. 자체통계품질진단 .....	120
3. 수시통계품질진단 .....	122
제3절 품질관리제도 개선 방안 .....	124
1. 승인제도 개선에 따른 품질관리제도 개편 .....	124
2. 품질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관리 방안 .....	137
<b>제 4 장 통계기반정책평가 .....</b>	<b>141</b>
제1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의의 .....	143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기초 .....	143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내용 .....	146
제2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증거기반정책 검토	152
1. 증거기반정책의 이론적 논의 .....	152
2. 주요국의 증거기반정책 사례 .....	158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의 함의 .....	163
제3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	167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양적 성과 분석 .....	167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74
제4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	179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개선 방안 .....	179
2.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184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단계별 실행 전략 .....	191
4. 소결 .....	192
<b>제 5 장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 .....</b>	<b>195</b>
제1절 정책과정과 선순환 체계의 의의 .....	197
제2절 주요국의 선순환 구조 사례 .....	200
1. 미국 .....	200
2. 영국 .....	208
3. 호주 .....	217

4. 일본 .....	223
5. 시사점 .....	227
제3절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	231
1. 관련 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	231
2.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수요자 관점의 조직 개선 .....	240
3.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	243
4. 국가통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245
5. 관련 기관간 협업 제도화로 통계관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	246
6. 데이터 시대의 대비 위한 통계청의 위상 재정립 .....	250
7. 단계별 실행 전략 .....	253
참 고 문 헌 .....	257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통계’, 평가기관 지정 관련 규정 .....	261

## 표 목 차

〈표 1-1〉 전략체계 방향 .....	19
〈표 1-2〉 통계전문가협의체 구성 .....	20
〈표 1-3〉 과제 추진 현황 .....	21
〈표 2-1〉 통계법의 통계 용어 관련 조항 .....	26
〈표 2-2〉 통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	27
〈표 2-3〉 통계법의 통계작성기관 관련 조항 .....	28
〈표 2-4〉 지정요건 심사 기준 .....	30
〈표 2-5〉 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	31
〈표 2-6〉 통계법의 통계 승인 관련 조항 .....	32
〈표 2-7〉 국가 승인/인증 제도 .....	33
〈표 2-8〉 분야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	37
〈표 2-9〉 작성방법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	38
〈표 2-10〉 기관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	39
〈표 2-11〉 통계 작성승인, 변경 승인 및 취소 현황 .....	40
〈표 2-12〉 ICT 관련 통계의 승인 추진 현황 .....	43
〈표 2-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처리의안통계(의안종류별·위원회별) ...	46
〈표 2-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계류의안통계(위원회별+의안종류별) ...	47
〈표 2-15〉 최근 10년간 예산 결산 현황 .....	48
〈표 2-16〉 2018년도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	49
〈표 2-17〉 국회도서관 장서현황 .....	51
〈표 2-18〉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원통계월보 종류 .....	52
〈표 2-19〉 전체 사건 법원별 총괄-접수 .....	54
〈표 2-20〉 인구 및 전체 사건수의 연도별 비교-접수 .....	54
〈표 2-21〉 민사사건 누년비교표(총괄표)-전심급 .....	55
〈표 2-22〉 사건통계의 일반통계 중 사건 누계표 .....	57
〈표 2-23〉 2018년 7월 진정사건 처리 현황(2018. 7. 1.~7. 31.) .....	60
〈표 2-24〉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2007의 통계 정의 .....	63
〈표 2-25〉 영국의 공식통계 판단 기준 .....	64
〈표 2-26〉 공식통계 식별 종합 기준 .....	64
〈표 2-27〉 통계 및 사회연구의 구분 공동 안내서 .....	65

<표 2-28> 일본 통계법(평성19년법률제53호)의 통계 정의 .....	68
<표 2-29> 일본 통계법의 통계조사 승인 관련 조항 .....	70
<표 2-30> 일본의 통계조사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	71
<표 2-31>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통계의 분류 .....	73
<표 2-32> 국제기구 등의 official statistics의 정의 .....	74
<표 2-33> 국가별 통계 명칭 .....	74
<표 2-34> 공공통계 중 국가승인통계 판단 기준 .....	76
<표 2-35> 통계 명칭 개선(안) .....	78
<표 2-36> 통계작성기관과 승인통계 현황(2018년 9월) .....	79
<표 2-37> 주요 법령의 공공기관 정의 .....	80
<표 2-38> 공공데이터법의 공공기관 지정 방식 .....	81
<표 2-39> 공공기관 지정 현황 .....	83
<표 2-40> 통계현황신고 제도 사례(과기정통부) .....	86
<표 2-41> 기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위한 보완책 .....	87
<표 2-42>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안) .....	89
<표 2-43> 통계 유형별 관리체계 개선(안) .....	89
<표 2-44> 통계승인 관리에 대한 차등화 방안 .....	90
<표 2-45> 개선안의 기대 효과와 후속 조치 .....	91
<표 2-46> 공공통계 재분류 시뮬레이션 결과 .....	92
<표 2-47>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의 최근 3년간 자체품질진단 결과 .....	93
<표 2-48> 국토교통부 승인통계의 최근 3년간 자체품질진단 결과 .....	95
<표 3-1> 품질진단 현황(2006~2010) .....	102
<표 3-2> 통계품질진단 및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	105
<표 3-3> 기관구분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	109
<표 3-4> 분야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	110
<표 3-5> 미국의 기관별 통계품질 관리체계의 예 .....	112
<표 3-6>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	117
<표 3-7> 작성방법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	118
<표 3-8> 품질차원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	119
<표 3-9> 분류별 개선과제수 및 이행률 .....	119
<표 3-10> 자체통계품질진단 점수 .....	121
<표 4-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기초 .....	144
<표 4-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연혁 .....	145

<표 4-3>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종류: 예비평가와 실질평가 .....	147
<표 4-4>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별 내용 .....	149
<표 4-5> 증거의 유형 .....	153
<표 4-6> 연구설계에 기초한 증거의 위계 .....	153
<표 4-7> 증거의 질 .....	154
<표 4-8> 증거기반정책의 유형 .....	155
<표 4-9> 증거기반정책의 성공요인 .....	156
<표 4-10> 증거기반정책의 제약요인 .....	157
<표 4-11> “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 실행전략 ...	158
<표 4-12> 미국의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	160
<표 4-13> 미국 증거기반정책에서의 증거포트폴리오 .....	161
<표 4-14> 영국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	162
<표 4-15> 지역경제성장센터의 증거기반정책 .....	163
<표 4-16>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변화 추이 .....	168
<표 4-17> 법령 유형별 평가 건수 변화 추이 .....	169
<표 4-18> 연도별 평가 소요기간 .....	170
<표 4-19> 연도별 부처별 평가 추이 .....	172
<표 4-20> 연도별 이행점검 결과 .....	173
<표 4-21> 연차별 완료지표 건수 및 비율 .....	173
<표 4-2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비판적 검토 결과 .....	175
<표 4-23> 통계기반정책평가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 예시 .....	177
<표 4-24>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미시적 운영 개선 방안 .....	183
<표 4-25>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참여자와 참여자 의 역할 .....	189
<표 4-26> (구)중소기업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예시(2015년)	190
<표 4-27>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단계별 실행 전략 .....	192
<표 5-1> 미국 주요 통계 분야별 협업체계 .....	201
<표 5-2> 미국 통계 관련 법령 .....	202
<표 5-3> 미 연방 통계기관의 통계사업 품질평가 기준 .....	207
<표 5-4> 영국 부처 소유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개정 소요 기간 .....	213
<표 5-5> 영국 통계법의 국가통계와 통계품질간의 연계 조항 .....	214
<표 5-6> 정부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 위한 다양한 절차 .....	216

<표 5-7> SBTP의 주요 내용 .....	218
<표 5-8> 호주 통계청 FOWARD WORK PROGRAM의 구성 .....	222
<표 5-9> 일본 공적통계의 품질평가 사항 .....	226
<표 5-10> 일본 통계조사 실시과정의 질평가 사항 .....	227
<표 5-11> 국가별 통계 생산 체계와 특징 .....	228
<표 5-12> 분산형 통계 제도 국가의 통계조정 .....	229
<표 5-13>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현행 프로세스 .....	232
<표 5-14>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안) .....	236
<표 5-15> 선순환제도 개선 기대효과 .....	238
<표 5-16> 국가통계 예산 편성 개선안 .....	239
<표 5-17> 현행 조직 및 업무분장 .....	241
<표 5-18> 감사원, 특허청 조직 구성 특징 .....	242
<표 5-19> 수요자 관점의 조직 개선(안) .....	243
<표 5-20> 통계전문가 확보 법령 개정안 .....	245
<표 5-21> 주요 부처의 통계 담당 조직 .....	246
<표 5-22> 데이터(통계) 기반 정책 및 인프라 구축 계획 .....	251
<표 5-23> 통계조직 개편안 .....	252
<표 5-24> 관리체계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 .....	255

## 그 립 목 차

[그림 1-1] 국가통계 작성 체계의 복잡성-ICT 분야 .....	15
[그림 1-2]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	16
[그림 1-3]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 계획 추진방향 .....	17
[그림 1-4]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기본 방향 .....	18
[그림 1-5] 과제 수행체계 .....	20
[그림 2-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좌측은 개정 전, 우측은 개정 후) .....	26
[그림 2-2] 분야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	36
[그림 2-3] 작성방법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	38
[그림 2-4] 기관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	39
[그림 2-5]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추이 .....	41
[그림 2-6] 조사 방법별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현황 .....	41
[그림 2-7] 통계 분야별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현황 .....	41
[그림 2-8]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추이 .....	42
[그림 2-9] 조사 방법별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현황 .....	42
[그림 2-10] 통계 분야별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현황 .....	42
[그림 2-11] 분석평가보고서 목록 .....	50
[그림 2-12] 법원통계월보 조회 화면(민사-본안-상고심-접수 처리 미제) .....	53
[그림 2-13] 한눈에 보는 헌법재판 .....	56
[그림 2-14] 사건통계의 그래프통계 중 접수 및 처리현황 .....	58
[그림 2-15] 최근선거통계 목록 .....	59
[그림 2-16] 역대 선거 투표율 .....	59
[그림 2-17] 공식통계 판단을 위한 흐름도(flow chart) .....	66
[그림 3-1] 미국의 통계품질 관리체계 .....	112
[그림 3-2] 영국의 정기품질평가 개요 .....	115
[그림 4-1]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 .....	148
[그림 4-2]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건수 변화 추이 .....	167
[그림 4-3]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예비/실질평가율(%) 변화 추이 .....	167
[그림 4-4] 법령 유형별 평가완료건수 변화 추이 .....	168
[그림 4-5] 평가 소요기간 연도별 추이 .....	170
[그림 4-6] 부처별 평가 현황: 평가완료건수(2014~2017) .....	171



[그림 4-7] 부처별 평가 현황: 실질평가율*(2014~2017)	171
[그림 4-8] 부처별 평가 현황: 개발개선율**(2014~2017)	171
[그림 4-9] 이행점검 결과: 연도별 완료지표수 및 진행지표수(2018년 기준)	174
[그림 5-1] OECD 규제정책 평가의 선순환 구조 개념도	198
[그림 5-2] UN의 통계 품질의 구성과 차원	199
[그림 5-3] 미국의 통계 관리 체계	200
[그림 5-4] 미국 노동통계국 성과목표 사례	207
[그림 5-5] 영국의 통계 거버넌스 구성	208
[그림 5-6] 통계실천규약의 기본 개념	210
[그림 5-7] 영국의 수량적 정보(numerical information) 구분	211
[그림 5-8] 호주 통계청 조직도	217
[그림 5-9] ABS Funding, 2000-01 to 2020-21	219
[그림 5-10] 일본의 통계 관리 체계	224
[그림 5-11]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231
[그림 5-12]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안)	237
[그림 5-13] 통계청 조직도	240
[그림 5-14] 감사원 조직도	242
[그림 5-15] 특허청 조직도	242
[그림 5-16] 국가별 통계인력 비교	244
[그림 5-17] 통계 체계화 및 전문화 구조도(안)	249
[그림 5-18] 통계 거버넌스 체계(안)	256



## 제 1 장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의 목적

- 국가통계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연구하여 최적의 단계별 개선방안 추가 제시

### 2. 연구 필요성

-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정부와 공공부문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표방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은 물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
    - ※ 영국 정부의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과 오픈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map, 2015), 미국의 오픈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 2013)과 빅데이터 활용 전략(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014), EU의 ‘유럽 데이터 경제 구축(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
  -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data-driven)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 체계의 정립은 매우 중요
-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강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음
  - 국가승인통계의 표준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접조사는 원천적 접촉 불가능(보안시스템 강화 공동주택), 조사 거부(프라이버시 보호 등), 접촉 곤란(1인 가구, 특정 직업/연령대 등), 응답부담 호소 등 가구는 물론 사업체 대상의 조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정부 조사의 경우 조사 거부, 불응 등 응답률 저하가 심각한 상황인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응답 거부율이 2007년 17%에서 2012년 20%로 증가. 또한 통계청은 광업·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사에 대해 2012년 말 처음으로 과태료를 업체당 40만에서 50만원씩 부과(매일경제, 2013. 9. 23)

○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여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통계 생산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

- 조사 환경 악화 해결과 더불어 빅데이터 환경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 모색 중
- 비용 부담이 큰 인구주택총조사의 대안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도가 추진
- 통계조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불가, 에너지 분야의 통계에서 인구통계, 실업통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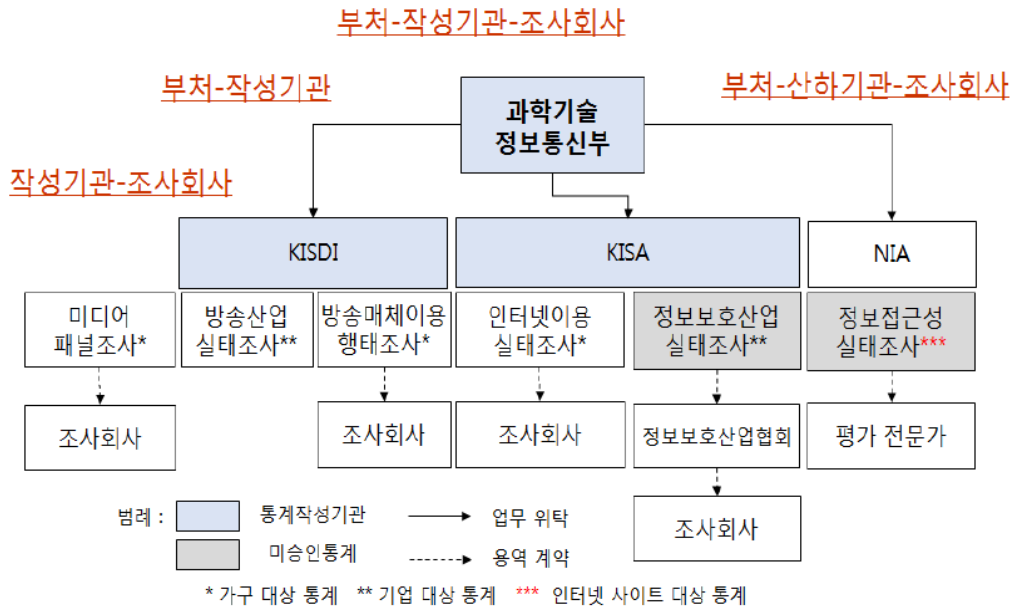
※ 독일의 구인구직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추정, 벨기에 통계청과 Eurostat의 모바일폰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 통계의 생산, 스페인 통계청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 관광통계 생산 등

○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통계 생산 및 산업화 지원 필요성 대두
- 산업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시장 현황 파악과 수요 조사가 필수적임.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는 시장 규모 파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속 조사 가능성에 대한 불명확 등을 이유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행되는 특성을 지님
-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생멸 주기가 짧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ICT 분야의 경우 미승인 통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품질진단을 통해 승인화를 추진하는 등 개선 노력이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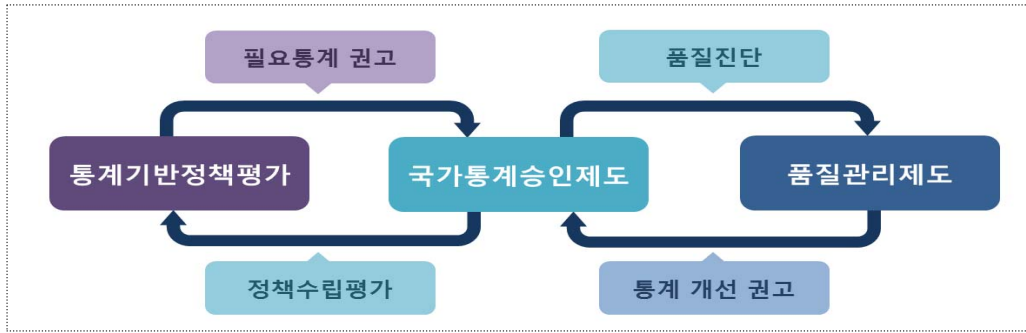
- 국가승인 통계의 경우 통계를 주관하는 부처와 관련 진흥원, 연구소 등 작성기관과 실제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회사 등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이 업무 위탁과 용역 계약 등의 형태로 통계 생산에 관여하여 품질 관리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

[그림 1-1] 국가통계 작성 체계의 복잡성-ICT 분야



- 빅데이터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계 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국가 통계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
- 특히 통계 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 관리체계(통계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품질관리)의 선순환 구조 체계 구축 방안 연구가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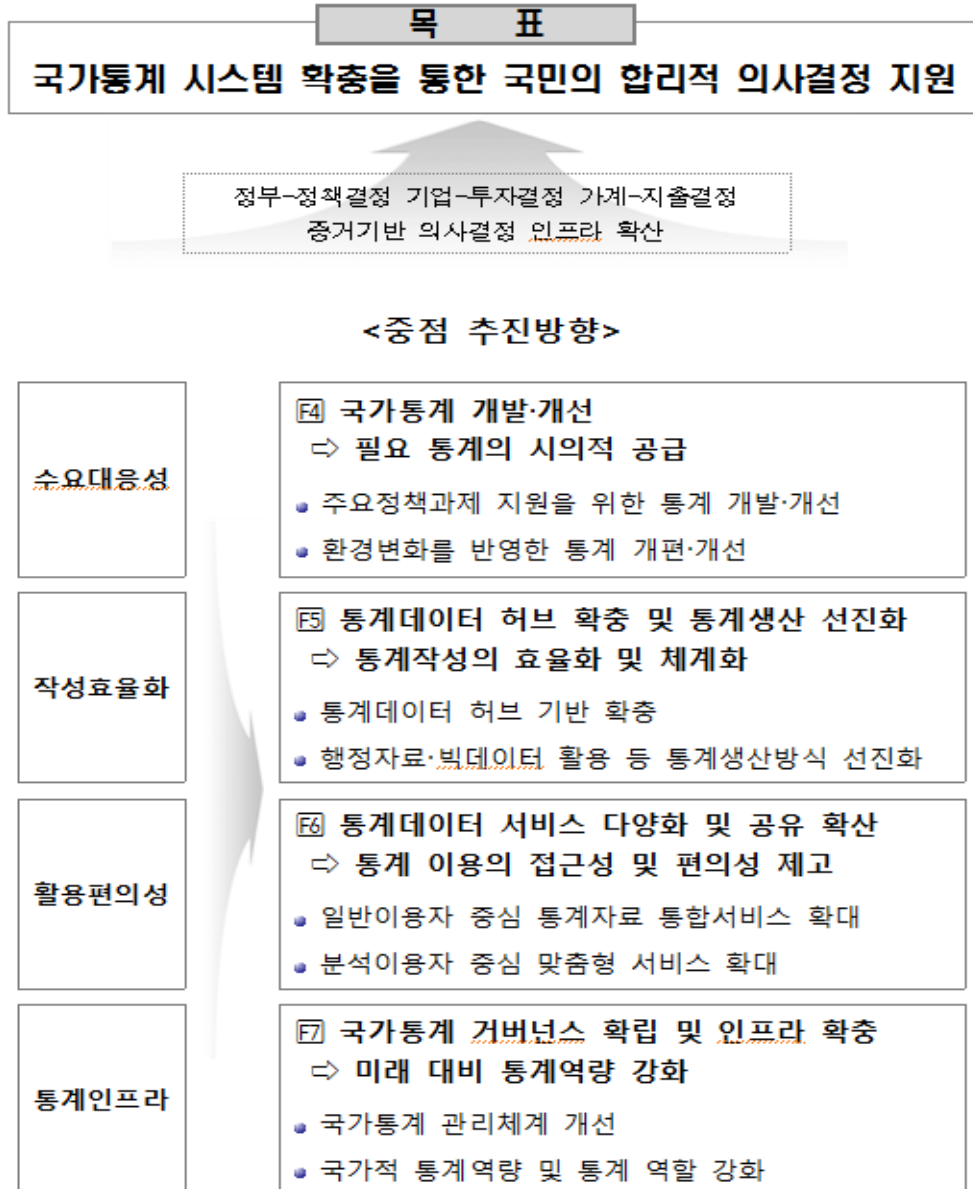
[그림 1-2]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 최근 통계청은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목표로 한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 계획(2018~2022)’을 발표
  - 통계 수요 대응성, 작성 효율화, 활용편의성, 통계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해 국가통계 개발·개선,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 특히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체계와 제도를 선순환 구조로 개편 할 것을 강조
  - 이는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개선이 증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임을 시사



[그림 1-3]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 계획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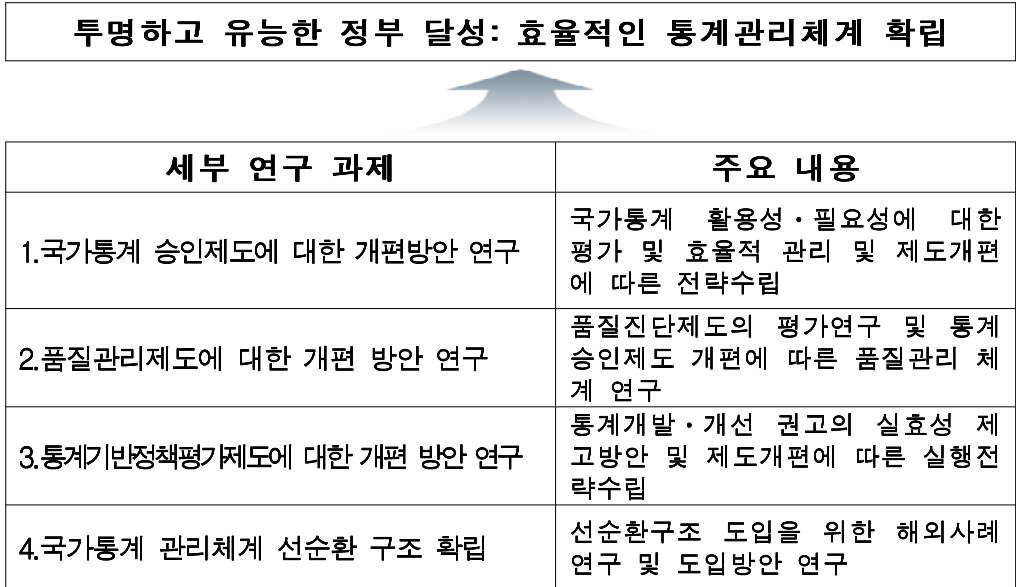


##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 1. 연구 범위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대상을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 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특정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을 제시함
- 영국, 미국 등 주요 통계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연구 세부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

[그림 1-4]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기본 방향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전략
  - 효율적인 통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전략 체계를 기본 방향과 세부하여 설정함

- 국가통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별 개편과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개선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방향을 국가통계 승인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연구,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 선순환 구조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연구로 설정 연구를 진행함

<표 1-1> 전략체계 방향

<b>기본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통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별 개편</li> <li>②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li> </ul>
<b>세부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1. 국가통계 승인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연구</li> <li>①-2.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li> <li>①-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li> <li>②-1. 선순환 구조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li> <li>②-2.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연구</li> </ul>

## 2. 연구 방법

-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문헌 연구, 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
- 문헌연구와 해외 사례 조사
  - 국가통계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통계 작성 기관, 연구소 등의 연구보고서와 회의 자료 등 발간물 분석
  -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통계관리체계 벤치마킹을 위해 주요국의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발간 보고서, 보도자료, 관련 자료를 검색, 내용 분석
- 통계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구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 분석과 사후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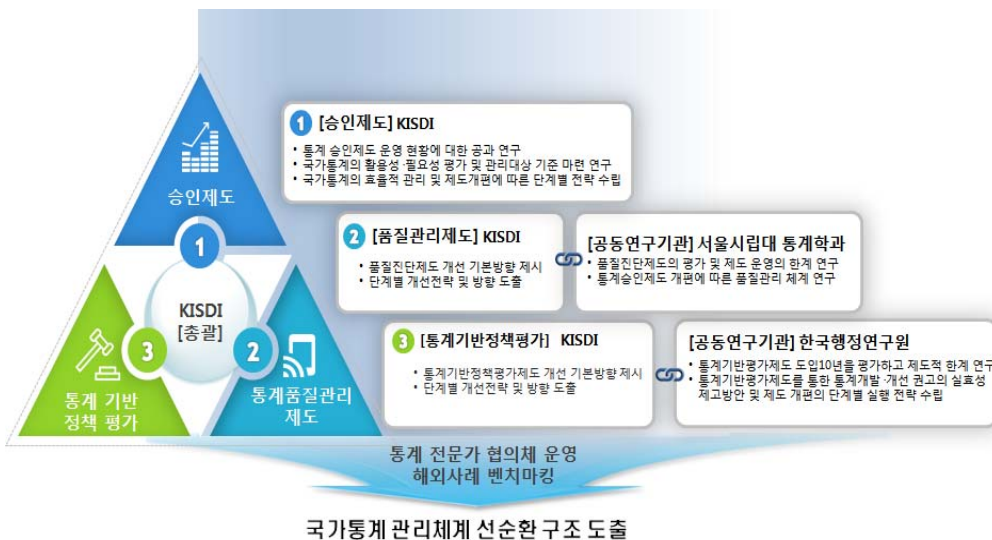
-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거시 환경 분석(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과 연구 목표를 정립
- 통계 법·제도, 통계 생산, 통계 수요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연구 계획,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표 1-2> 통계전문가협의체 구성

구분	전문가
통계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담당자</li> <li>• 통계법·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li> </ul>
통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승인통계 작성 관련 정부 부처 통계 승인/품질진단/통계기반제도 업무 담당자</li> <li>• 정부승인통계 작성 기관(진흥원, 연구소등) 승인/품질진단/통계기반정책제도 유경험자</li> <li>• 정부승인통계 실사 회사(민간 조사회사 등) 실무자</li> </ul>
통계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정부승인통계 수요자</li> </ul>

- 품질진단 및 통계기관 정책관리제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서울시립대 통계학과), 국책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의 품질 향상 도모

[그림 1-5] 과제 수행체계



<표 1-3> 과제 추진 현황

구분	일자	내용	참석자
착수 보고	4.11	착수보고	통계청 각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연구방향 협의	4.25	연구 기본방향 논의	통계정책국장, 통계청 담당과, KISDI
월간 보고	6.8	과제 진행 사항 논의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5.17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정해일교수, 구교준교수, 이명진교수(고려대학교)
전문가인터뷰	6.7 6.8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진단	정용찬박사(KISDI), 정규남원장, 윤석강 부장(한국통계진흥원), 조경호(前 통계청)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최현수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영남사무관(복지부)
전문가인터뷰	7.3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최현수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영남사무관(복지부)
중간 보고	7.12	과제 중간보고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7.19	통계품질진단 개선방안	김규성교수(시립대), 윤석강부장(한국통계진흥원)
월간 보고	8.14	과제 진행 사항 논의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8.16	통계법 체계 검토	정용찬박사(KISDI), 정경오변호사
통계 작성기관 담당자 인터뷰	9.7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담당자 인터뷰	9.11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담당자 인터뷰	9.17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이기준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김수현박사(한국고용정보원), 김수범팀장(보건산업진흥원),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위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9.19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IITP 통계 작성 담당자, KISDI 연구진
월간 보고	9.20	과제 진행 사항 논의	통계청 담당과, KISDI 연구진
통계 작성기관, 위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9.21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정보보호산업협회, 클라우드협회, 정보화진흥원 통계작성담당자, KISDI 연구진
전문가인터뷰	10.5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선순환제도 개선 방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이명진교수(고려대), 정해일교수(고려대)
전문가인터뷰	10.8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선순환제도 개선 방안	윤건박사(한국행정연구원), 구교준교수(고려대), 최현수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 보고	10.18	과제 최종보고	통계청 담당과, KISDI 등 연구진



## 제 2 장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편 방안





## 제1절 통계승인제도 개요

### 1. 국가통계의 개념

- 통계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여 일반명사로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
- 제2조(기본이념)에서도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작성”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함”을 선언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의 중요성과 작성, 활용 원칙을 강조
- 이에 반해 제3조(정의)에서는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정의하여 제1조와 제2조에서 언급한 ‘통계’와는 달리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국가통계’임을 의미하여 용어상의 혼란 야기
- ‘국가통계’는 국가통계위원회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관련 규정에서 사용
- 통계와 국가통계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법과 시행령에서 ‘국가승인통계’, 또는 ‘승인통계’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관련 사항에서 ‘국가통계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

- 통계조사표와 결과보고서에 사용하는 마크에는 ‘국가통계(영문으로는 NATIONAL STATISTICS)’로 표시하도록 규정

※ ‘국가승인(협의)통계’로 표현하던 국가통계 마크는 ‘국가통계’로 명칭을 개정(2018. 2. 21.). ‘협의’란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함을 의미

<표 2-1> 통계법의 통계 용어 관련 조항

구분	관련 조항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li> <li>•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li> <li>• 제12조, 20조, 21조, 21조의2, 23조(통계 작성 관련)</li> <li>•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li> <li>•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li> <li>•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li> </ul>
국가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li> <li>•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li> <li>•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li> </ul>
국가통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법시행규칙 제20조(국가통계승인 (협의) 마크)</li> </ul>

[그림 2-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좌측은 개정 전, 우측은 개정 후)



- 통계법의 '통계'의 정의에서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 사용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제3조 정의).<sup>1)</sup>
  - 이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의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통계 생산 기관과 통계청의 관리 부담을 줄여 효과적인 통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임
  - "행정자료"는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 규정(제3조 7)하여 통계와 구분

<표 2-2> 통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구분	관련 조항
내부 활용	•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시험 작성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 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학술 연구	•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보고/집계 자료	•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인식 조사	• 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기타	•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1) 통계법 시행령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는 통계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2. 통계작성기관

- 현행 통계법은 통계 생산의 주체를 통계작성기관으로 규정하고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의
  -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국가통계임을 의미
  - 통계법의 "통계종사자"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제3조 정의)
  - 통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2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4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 국가통계 생산 주체인 통계작성기관의 행위와 책무 등에 관한 기술로 구성

<표 2-3> 통계법의 통계작성기관 관련 조항

구분	관련 조항
통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li> <li>•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li> <li>•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li> <li>•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li> <li>•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li> </ul>
통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li> <li>• 제16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li> <li>•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li> <li>•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li> <li>•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li> <li>•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li> <li>•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li> </ul>

### 3. 통계작성지정기관

- 통계작성지정기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중에서 주요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을 국가통계 생산기관으로 포괄하기 위한 제도
- 통계법 제15조는 통계청장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통계법 시행령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li><li>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li><li>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li></ol> |
|--|

- 또한 중요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직권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2016년에 신설
- 통계법 15조 2항에서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표 2-4> 지정요건 심사 기준

구분	내용
법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li> <li>- 국가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li> <li>-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의 이상 유무, 정관에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포함 여부 등</li> </ul>
통계조직 및 인력, 예산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은 2명 이상의 정규직 통계전문인력 확보</li> <li>- 2명중 1명은 통계업무를 50% 이상 담당</li> <li>• 예산은 조사규모를 감안하여 인건비, 조사표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을 충분히 확보</li> </ul>
국가통계 작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 또는 1년 이내에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가 국가승인통계 요건을 충족할 것</li> <li>• 작성하는 통계가 조사통계인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li> <li>※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보고·가공통계는 공표(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공표, 인터넷 공개 등) 등으로 국가정책수립 및 국민에게 널리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함</li> </ul>

자료: 통계청(2015).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p.20.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면 통계법에 규정된 각종 권한과 함께 의무도 동시에 발생
- 지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 자격요건 이외에도 지정 이후 의무 사항이 부과되므로 직권지정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지정 기관 수의 확대는 매우 제한적임

<표 2-5> 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구분	내용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통계법 제13조 및 제21조)</li> <li>• 승인통계 작성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통계법 제23조)</li> <li>• 지정통계 작성 위한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 명령 요청(통계법 제25조)</li> <li>• 통계 작성을 위해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나 질문(통계법 제26조)</li> <li>•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 제공 요청(통계법 제30조)</li> </ul>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통계법 제6조)</li> <li>•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통계법 제7조)</li> <li>•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통계법 제8조)</li> <li>• 통계품질진단(정기, 수시, 자체) 실시(통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li> <li>•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해야 함(통계법 제12조)</li> <li>• 통계의 작성, 승인(협의)을 받은 통계의 변경 또는 작성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협의)을 받아야 함(통계법 제18조, 제20조)</li> </ul>

자료: 통계청(2015).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pp.21 ~ 22.

#### 4. 통계작성의 승인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정책에 이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지정기관(한국은행 등)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새로운 통계의 작성 승인이나 변경 승인 관련 법조문에서는 통계의 형태(조사, 보고, 가공 등)와 관련 없이 모든 통계를 동일한 관리 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여 관리의 효율화 방안 모색이 필요
  - ※ 조사, 보고, 가공 통계의 구분은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식(통계의 종류)이나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의 진단표에는 특성을 반영하여 서식

이 구분되어 있음. 특히 보고통계의 작성은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엄격한 승인 절차 준용이나 정기품질진단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 수행으로 예산 및 인력 낭비 발생

- 통계승인제도의 대상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 규정하여 통계승인제도 개선은 결국 통계작성기관 지정의 실효성과 포괄 범위, 대상 통계의 포괄 범위의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함

<표 2-6> 통계법의 통계 승인 관련 조항

구분	관련 조항
통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li> <li>•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li> <li>•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li> <li>•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li> <li>•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li> <li>•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li> <li>•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li> <li>•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li> <li>• 제26조(실지조사 등)</li> </ul>
통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li> <li>•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li> <li>•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li> <li>•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li> <li>•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li> <li>•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li> <li>•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li> <li>•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li> <li>•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li> </ul>

- 국가 승인/인증 관련 제도의 경우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는 존재하나 인증 대상 기관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제도는 통계승인제도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됨



〈표 2-7〉 국가 승인/인증 제도

구분	승인/인증 주체	승인/인증 대상
통계승인	정부(통계청)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KS인증	공공기관(한국표준협회)	제품·서비스·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광공업품
SW품질인증 (GS인증)	공공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	SW 제품(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 디지털콘텐츠SW, 임베디드SW)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승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예) 건설비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등
인터넷사이트 시스템 보안 인증(i-Safe)	민간기관(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사이트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인증(ePRIVACY)	민간기관(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사이트

주: 1.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진흥법」 2조6항)

## 5.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 최근 통계응답자의 부담완화 및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보유기관과 활용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한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
-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로<sup>2)</sup> 통계작성기관이 적절한 행정자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2) 통계청(2018. 2).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매뉴얼

- 통계작성기관이 행정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통계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청도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의 소재, 주요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통계법 제18조②항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승인이나 협의 전, 행정자료 활용 통계 작성 가능여부를 판단 또는 통계청장(행정자료관리과)에 판단 의뢰

## 제2절 국가통계 운영 현황

### 1. 국가승인통계 현황

#### 가. 분야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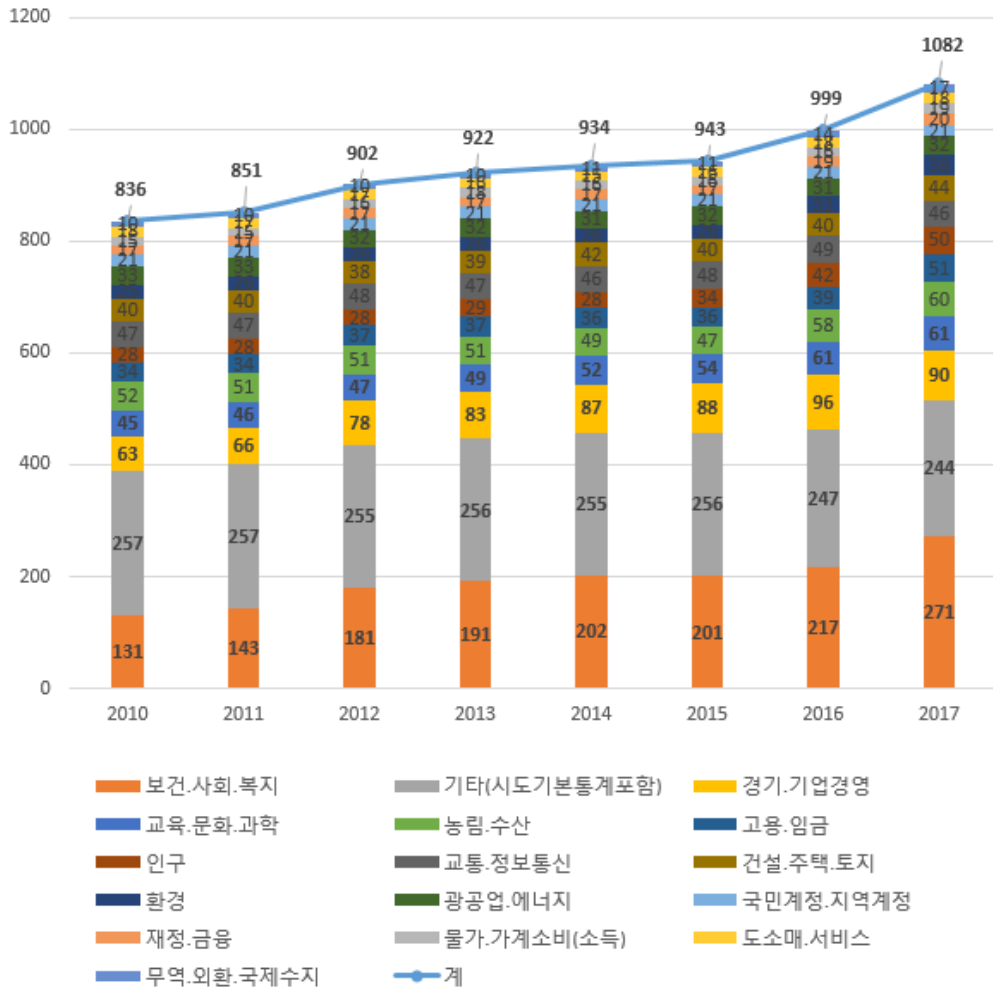
- 국가승인통계는 2010년 836종에서 2017년 말 1,082종으로 크게 증가
  -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승인통계가 2010년 131종에서 2017년 271종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28종에서 50종), 고용·임금(34종에서 51종), 환경(25종에서 38종), 경기·기업경영(63종에서 90종), 교육·문화·과학(45종에서 61종) 분야에서도 꾸준히 증가함
  - 이는 국가통계가 경제통계 위주에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
  - 최근 통계청의 위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에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sup>3)</sup>되는 배경도 승인통계의 포괄범위가 전 부처와 관련되어 통계 승인이나 조정도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

3) 이재형 외(2017),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전하고 통계청의 업무를 평가하여 독립성이 높은 업무분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능은 분리하여 (준)공공기관 등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

[그림 2-2] 분야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표 2-8> 분야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36	851	902	922	934	943	999	1,082
인구	28	28	28	29	28	34	42	50
고용.임금	34	34	37	37	36	36	39	51
물가.가계소비(소득)	15	15	16	18	16	16	16	19
보건.사회.복지	131	143	181	191	202	201	217	271
환경	25	26	26	26	26	26	31	38
농림.수산	52	51	51	51	49	47	58	60
광공업.에너지	33	33	32	32	31	32	31	32
건설.주택.토지	40	40	38	39	42	40	40	44
교통.정보통신	47	47	48	47	46	48	49	46
도소매.서비스	18	17	17	16	15	16	18	18
경기.기업경영	63	66	78	83	87	88	96	90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1	21	21	21	21	21	21
재정.금융	17	17	17	17	17	17	19	20
무역.외환.국제수지	10	10	10	10	11	11	14	17
교육.문화.과학	45	46	47	49	52	54	61	61
기타(시도기본통계포함)	257	257	255	256	255	256	247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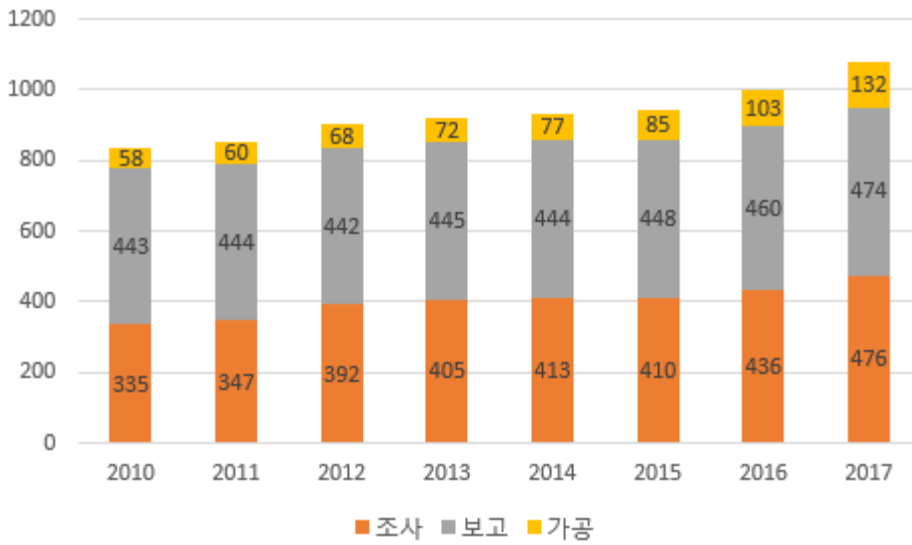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 나. 작성방법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가공통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는 조사 환경 악화와 함께 행정 자료 등 기존 자료의 활용이 앞으로 활성화 될 것임을 시사

[그림 2-3] 작성방법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표 2-9> 작성방법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36	851	902	922	934	943	999	1,082
조사	335	347	392	405	413	410	436	476
보고	443	444	442	445	444	448	460	474
가공	58	60	68	72	77	85	103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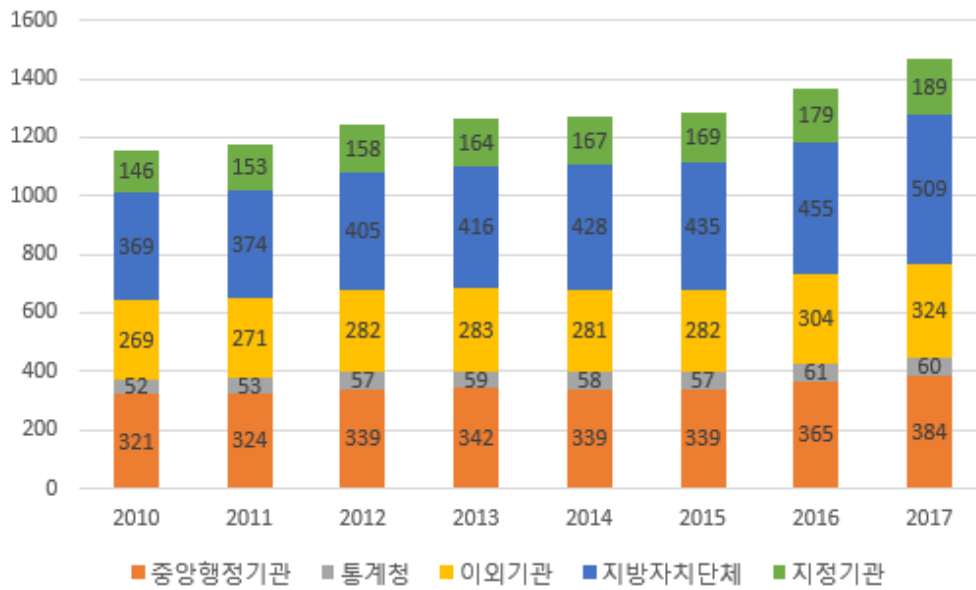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 다. 작성 기관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 작성 기관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정보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통계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지정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협회/조합은 감소 추세를 보임

[그림 2-4] 기관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표 2-10> 기관별 국가통계 추이 현황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36	851	902	922	934	943	999	1,082
정부기관	690	698	744	758	767	774	820	893
중앙행정기관	321	324	339	342	339	339	365	384
통계청	52	53	57	59	58	57	61	60
이외기관	269	271	282	283	281	282	304	324
지방자치단체	369	374	405	416	428	435	455	509
지정기관	146	153	158	164	167	169	179	189
금융기관	24	24	25	24	24	23	23	23
공사/공단	42	43	42	43	44	49	52	55
연구기관	23	26	28	34	36	36	38	44
협회/조합	38	39	39	37	34	33	34	31
기타기관	19	21	24	26	29	28	32	36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pms/index.do>), 승인통계현황

라. 신규·승인취소 통계 현황

- 신규 승인통계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성중지 통계 건수는 감소하고 있고, 승인취소 통계는 2015년 3건 이후 발생하지 않음
- 변경승인이 작성승인에 비해 6배 이상 규모로 대부분의 승인 관련 행정 소요가 변경승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

<표 2-11> 통계 작성승인, 변경 승인 및 취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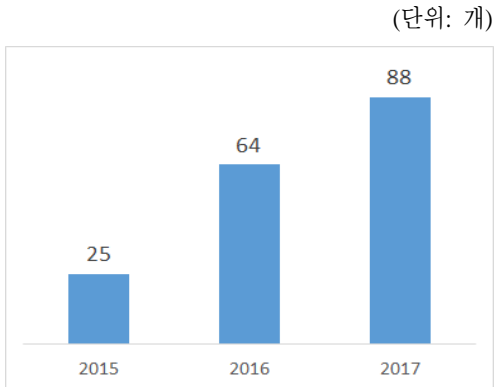
년	지정기관		작성 승인	작성 중지	승인 취소	변경 승인	미공표 승인	주의 촉구	계
	지정	취소							
계	73	14	534	233	94	3,336	40		4,324
2008	2	1	73	56	4	313	9		458
2009	4		44	37	73	384	10		552
2010	19	1	20	43	9	215	2		309
2011	1	1	41	17	1	198			259
2012	7		61	5	1	225	3		302
2013	5	2	37	13		313	7		377
2014	5	7	34	15	3	321	3		388
2015	8		28	16	3	331	3		389
2016	8		66	10		326	2		412
2017	12		91	8		391	1		503
2018	2	2	39	13		319			375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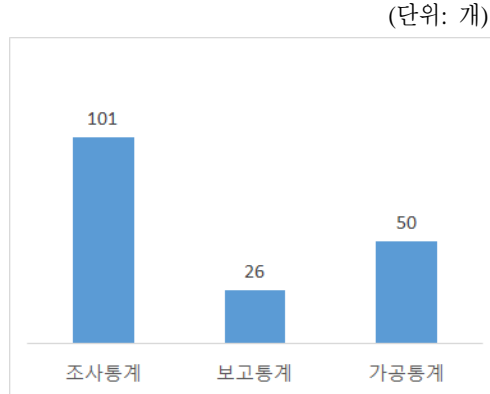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승인통계 건수 중 조사통계가 57.6%로 가장 많음
- 통계분야별로는 '사회'분야의 통계가 48개(2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복지, 인구 분야의 순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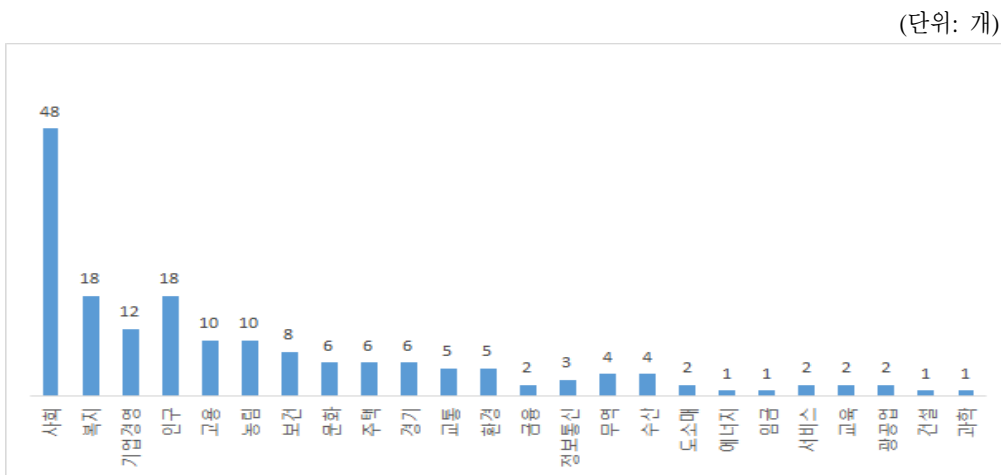
[그림 2-5]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추이



[그림 2-6] 조사 방법별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현황



[그림 2-7] 통계 분야별 최근 3년간 신규 승인통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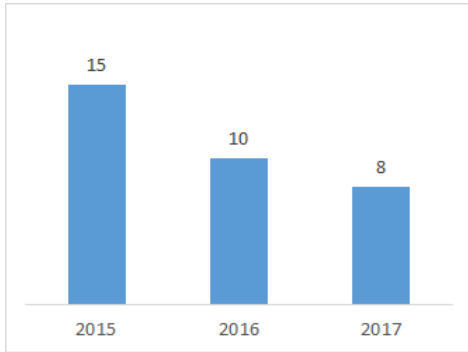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정책지원서비스

(<https://www.narastat.kr/pms/scs/css/selectConfirmStatsList.do?selectMenuId=0010002300427436>)

- 중지 승인통계 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조사통계인 것으로 보임
- 통계분야별로는 신규 통계가 많았던 ‘사회’분야의 통계가 11개(33.3%)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농림, 정보통신 분야의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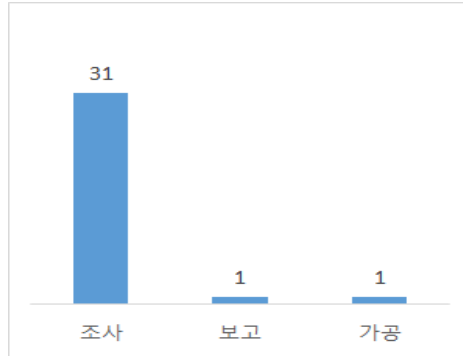
[그림 2-8]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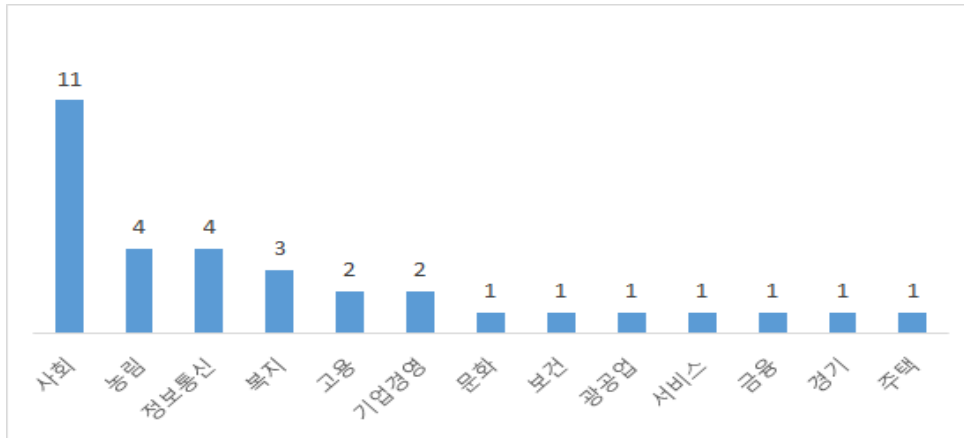
[그림 2-9] 조사 방법별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그림 2-10] 통계 분야별 최근 3년간 중지 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정책지원서비스

(<https://www.narstat.kr/pms/scs/css/selectConfirmStatsList.do?selectMenuId=0010002300427436>)

#### 마. 미승인 통계 현황

- 현행 통계법에서는 통계승인의 대상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 규정하여 통계청의 관리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미승인통계 생산으로 인한 범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상존

- 특히 ICT와 같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빈번한 분야의 경우 시장 규모와 수요의 파악, 산업진흥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조사가 빈번하게 생멸하고 있는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ICT융합생태계 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빅데이터 시장현황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2016년부터 미승인통계의 부처 자체 품질진단을 통해 승인 통계화 추진

〈표 2-12〉 ICT 관련 통계의 승인 추진 현황

ICT 미승인 통계명	조사기관	승인 추진 현황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KISIA	'18년 승인 완료('17년에는 모집단 정비 미비로 승인 보류)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NIPA	'18년 승인 완료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KDATA	승인 완료 ('16.11.16)
빅데이터시장 현황조사	NIA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와 통합
정보접근성실태조사*	NIA	'18년 승인 완료
SW 수출통계	SPRI (KAIT)	ICT실태조사 부가조사로 조정
ICT실태조사 SW(광의)부문부가조사	SPRI	ICT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승인완료 ('17.11.8)
ICT중소기업 실태조사	KOVA	두 조사를 통합, '18년 승인 완료
ICT창업기업 실태조사	KOVA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KAIT	'18년 승인 완료

주: \*는 인터넷 대상 조사 통계

- 이러한 미승인 ICT통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존 통계와의 중복,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등 조사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통계 생산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인 부처, 작성기관, 협회, 조사회사 등 여러 기관이 업무 위탁과 용역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통계 생산에 관여하여 품질 관리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존재
  - 2015년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 공공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통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6개 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채 실태조사 등 계 11건의 미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공표된 내용은 백서 발간에 이용되는 등 정부정책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 **현행 통계법에서는 작성기관에 따라 관리대상 통계 범위가 결정되므로 중요한 통계임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 발생**
  - 공공기관이 통계작성 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정부정책 활용 목적 등의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통계 간 유사중복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예산이 낭비되거나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 등의 미승인 통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권고(감사원, 2015)
- 빅데이터의 중요성 부각,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따라 기존 승인 통계는 물론 새로운 정보원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가치 있는 정보가 사장될 우려
  - 국가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통계 파악 및 국가통계의 범위 확대 방안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통계, 분석자료 등에 대한 기준 검토 필요

## 2. 통계작성기관 이외 주요 국가 기관의 통계 관리 현황

### 가. 국회

#### (1)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의 의사국 의사과는 위원회 의안 등의 접수·배부·회부 및 이송,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편집 및 발간, 통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안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
- ‘의안정보시스템’은 의안을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의안에 대해 역대 국회기간별로 ‘처리의안통계’와 ‘계류의안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 역대 국회기간별 외에도 본회의처리일자를 통해 원하는 기간의 통계를 검색할 수 있으나 처리된 의안에 대한 통계만 제공되며, 접수 및 미처리 의안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움
- 처리의안통계는 총괄, 위원회별, 의안종류별·위원회별, 위원회별 법률안, 발의주체별 법률안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
- 계류의안통계에서는 위원회별+의안종류별 통계만 제공

<표 2-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처리의안통계(의안종류별·위원회별)

총괄	위원회별		의안종류별·위원회별						위원회별 법률안			발의주체별 법률안				
			법률안			동의 (승인) 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중요 동의	의결 장제	의원 자격 심사	총계
			예산안 등	결산 등	의원		정부	계	일반							
본회의						19	28		28	1		26	46			120
국회운영위원회			66		66		42		42		9					117
법제사법위원회			151	20	171		2		2							173
경무위원회			273	29	302	2	3	1	4							308
기획재정위원회			305	31	336	4	2	1	3							343
교육위원회			1		1		1		1							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1	4	15	3										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1	7	98	3	1	1	2							10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34	25	259	2	6	1	7							268
외교통일위원회			39	6	45	37	8		8							90
국방위원회			75	9	84	6	5	1	6							96
안전행정위원회			142	22	164	1	1		1							166
행정안전위원회			184	20	204	1	3		3							2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83	88	471	2	3		3							47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98	4	102	1	1	1	2							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9	8	137	2	4		4							143
보건복지위원회			445	19	464	2	2	2	4							470
환경노동위원회			260	28	288		3	1	4							292
국토교통위원회			551	27	578		5		5							583
경보위원회							2		2							2
여성가족위원회			82	15	97		3		3							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0	2				2		1	1							45
윤리특별위원회													3			3
특위			6		6	15	5		5		1					27
미확정			3		3	1	1		1							5
총계	40	2	3,530	362	3,892	103	131	10	141	1	10	26	46	3		4,26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MooringBill.do>)

<표 2-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계류의안통계(위원회별+의안종류별)

제20대(2016-2020) 국회 계류의안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숫자를 누르시면 해당 의안 목록이 나옵니다.

구분	헌법개정안	예산안 등	결산 등	법률안			동의(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중요동의	의원징계	의원자격심사	기타	총계
				의원	정부	계										
본회의	1						3	4				2				10
국회운영위원회				286	2	288		18		3						309
법제사법위원회				1,009	16	1,025		7								1,032
정무위원회				777	31	808										808
기획재정위원회				863	13	876		1								877
교육위원회				550	16	566		1								56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57	23	480	2	1								483
외교통일위원회				143	4	147	7	24								178
국방위원회				229	6	235		9								244
행정안전위원회				1,429	47	1,476		9								1,48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58	25	383		3								38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85	68	553		4								55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85	26	611		5								616
보건복지위원회				1,098	41	1,139		2								1,141
환경노동위원회				1,001	61	1,062		6								1,068
국토교통위원회				735	25	760		2								762
정보위원회				25	1	26										26
여성가족위원회				142	3	145		1								1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	1								3
특위				12		12		1								13
미확정		3		246	20	266	5			1			18			293
총계	1	3	1	10,430	428	10,858	18	99		4		2	18			11,00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MooringBill.do>)

(2)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재정에 대한 전문 조직으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준추 보고서의 일부 표와 분석평가보고서를 통해 국회재정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예산준추: 계절별로 발행되는 내부 발간물로, 여름호에서는 국회의 당해년도의 결산분석 주요내용 및 시사점, 결산심사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으며, 가을호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분석내용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음

<표 2-15> 최근 10년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조 원)

연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포함		결산		결산 총수입 - 결산 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2017	414.3	400.5	423.1	410.1	430.6	406.6	24.0
2016	391.2	386.4	401.0	398.5	401.8	384.9	16.9
2015	382.4	375.4	377.7	384.7	371.8	372.0	△0.2
2014	369.3	355.8	369.3	355.8	356.4	347.9	8.5
2013	372.6	342.0	360.8	349.0	351.9	337.7	14.2
2012	343.5	325.4	343.5	325.4	341.8	323.3	18.5
2011	314.4	309.1	314.4	309.1	323.0	304.4	18.6
2010	290.8	292.8	290.8	292.8	299.6	282.8	16.8
2009	291.0	284.5	279.8	301.8	276.4	294.0	△17.6
2008	274.2	257.2	274.2	262.8	275.2	259.8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예산준추 2018년 여름호



<표 2-16> 2018년도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조 원, %)

	2017 본예산(A)	2018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	400.5	429.0	28.5	7.1
1.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6.7	12.9
2. 교육	57.4	64.1	6.7	11.7
3. 문화·체육·관광	6.9	6.3	Δ0.6	Δ8.2
4. 환경	6.9	6.8	Δ0.1	Δ2.0
5. R&D	19.5	19.6	0.1	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Δ0.1	Δ0.7
7. SOC	22.1	17.7	Δ4.4	Δ20.0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0.0	0.1
9. 국방	40.3	43.1	2.8	6.9
10. 외교·통일	4.6	4.8	0.2	5.2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0.8	4.2
12. 일반·지방행정	63.3	69.6	6.3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예산준추 2017년 가을호

-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매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분석과 예산안 분석 등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함

## [그림 2-11] 분석평가보고서 목록

### 분석평가보고서 | 분야별 보기

홈 > 보고서 > 분석평가보고서 > 분야별 보기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기타
----------------	-------------	-------------	----

목록건수

번호	보고서명	부서명	발간일	조회수
749	[결산분석시리즈 VI]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행정예산분석과	2018-08-20	2137
748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경제산업사업평가과	2018-08-14	2882
747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예산분석총괄과	2018-08-13	2216
746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예산분석총괄과	2018-08-13	2257
745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	공공기관평가과	2018-08-13	1102
744	[결산분석시리즈 IV]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	예산분석총괄과	2018-08-13	646
743	[결산분석시리즈 V] 성인지 결산서 분석	사회예산분석과	2018-08-13	519
742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행정예산분석과	2018-08-09	1021
7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총괄과	2018-05-15	3834
740	대한민국 공공기관	공공기관평가과	2018-03-26	3595

« < 1 2 3 4 5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이트 ([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

### (3)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으로, 각종 국가서지에 대한 작성업무와 해외 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문화교류사업을 진행하며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 소장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장서현황'과 '데이터베이스현황'으로 구성되어있음

<표 2-17> 국회도서관 장서현황

(2018년08월31일 현재)

자료	소장량	비고		
		언어별	분야별	
일반도서	단행본	2,514,021 책	한국어(75%) 3,429,092 책 영어(14%) 628,431 책 일어(6%) 294,740 책 기타(4%) 195,746 책	사회과학(47%) 2,152,740 책 인문과학(27%) 1,243,210 책 순수 응용과학(25%) 1,152,059 책
	석박사학위논문	1,668,431 책		
	제본정기간행물	365,557 책		
	소계	4,548,009 책		
전자파일도서	1,267,414 책			
비도서	전자자료	50,028 점		
	오디오·비디오	82,999 점		
	마이크로자료	325,393 점		
	지도,기타자료	8,580 점		
	미술품	368 점		
	세미나자료	59,577 점		
	소계	526,945 점		
총계	6,342,368 책/ 점			
디지털콘텐츠	3,239,424 건			
정기간행물	26,642 종	국내 19,671 종 국외 6,971 종		
신문	1,029 종	국내 893 종 국외 136 종		

자료: 국회도서관 사이트 (<https://www.nanet.go.kr/libintroduce/etc/libDataStatusView.do#>)

## 나.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은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재·개정을 비롯하여 민사, 형사, 가사, 도산절차 등 재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그중 사법지원실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에서는 대법원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사법통계를 제공함

-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건(법원조직법 제2조)을 통계분석의 편의상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다시 소송사건은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소년보호·가정보호·인신보호사건 등으로 비송사건은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사건으로 분류하여 전체사건의 동향을 정리·분석함
- 전체 사건에 대한 수치는 통계자료집중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하거나 각급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함

(1) 법원통계월보

- ‘법원통계월보’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12개 재판부에서 진행한 소송을 본안, 조정, 신청, 항고 등 사건종류별로 접수된 건수와 처리된 건수에 대해 월별 통계수치를 제공함

<표 2-18>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원통계월보 종류

민사	본안   조정   신청   항고   재항고   민사비송   민사독촉   민사집행   도산관련
형사	공판   치료감호처분   약식명령   즉결심판   영장   신청   항고   재항고   보석   체포·구속적부심사   국선변호인선정
가사	소송   조정   신청   항고   재항고   가사비송
행정	소송   신청   항고   재항고
특허	소송   신청   재항고
선거	소송   신청   재항고
소년보호	소년보호   신청   항고   재항고
가정보호	가정보호   항고   재항고   임시조치
인신보호	인신보호   신청   항고   재항고
등기	등기신청, 등기사항증명서, 기타
가족관계등록비송(접수)	가족관계등록비송(접수)
공탁	공탁

자료: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 민사 본안의 경우 상고심, 항소심, 제1심-합의/단독/소액 등 분류체계 별로 통계표를 제공
- 조회 화면은 월별 접수와 처리 건수, 연간 누계와 전년도 누계를 제공 하며 엑셀로 내려받기와 인쇄하기 기능을 제공

[그림 2-12] 법원통계월보 조회 화면(민사-본안-상고심-접수 처리 미제)

년월 2018년 07월 사건검색 본안 상고심-접수-처리-미제

**2018년 8월 20일 추출**

1심사물관할	구분	2018년 7월		누계		미제
		접수	처리	접수	처리	
단독		582	468	3,649	3,658	2,021
합의		356	404	7,122	6,302	5,388
소액		216	157	1,129	1,144	569
<b>총계</b>		<b>1,154</b>	<b>1,029</b>	<b>11,900</b>	<b>11,104</b>	<b>7,978</b>
금년누계		11,900	11,104			
전년누계		7,660	7,861			

자료: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 (2) 사법연감(통계)

- ‘사법연감(제5장 통계)’을 통해 매년 집계된 사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의 개황(제1절)과 최근 10년간의 사건의 추이에 대한 누년비교(제2절), 당해 연도의 사건 세부 현황(제3절)을 통계표와 그래프 형태로 수록
- 사건의 개황은 전체 사건의 종류별, 법원 규모별 총괄 통계와 함께 최근 10년간 인구 변동과 사건 추이를 대비한 사건 추세, 각종 사건의 중요 사항을 요약, 제시함
- 사건의 증감추이(누년비교)는 종류별, 법원 유형별(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10년간의 사건 추세를 통계표로 제공하며, 사건 세부 내역별 통계는 사건 종류별, 법원 유형별로 상세 통계표를 제공

<표 2-19> 전체 사건 법원별 총괄-접수

구 분	총 계	소 송 사 건								비 송 사 건			
		합 계	민 사	가 사	행 정	특 허	선 거	형 사	소 년	합 계	등 기	가 족 관 계 등 록	공 탁
총 계	18,069,526	6,742,783	4,826,944	161,285	49,777	1,590	59	1,614,463	88,665	11,326,743	10,835,685	288,790	202,268
대 법 원	62,075	62,075	20,434	1,035	5,527	362	58	34,529	130	-	-	-	-
고 등 법 원 계	71,949	71,949	23,804	1,245	10,672	1,228	1	34,999	-	-	-	-	-
지 방 법 원 계	17,935,502	6,608,759	4,782,706	159,005	33,578	-	-	1,544,935	88,535	11,326,743	10,835,685	288,790	202,268
- 항 소 심 계	142,064	142,064	60,448	4,131	-	-	-	76,216	1,269	-	-	-	-
- 제 1 심 계	17,793,438	6,466,695	4,722,258	154,874	33,578	-	-	1,468,719	87,266	11,326,743	10,835,685	288,790	202,268

자료: 대한민국 법원(2017). 사법연감

<표 2-20> 인구 및 전체 사건수의 연도별 비교-접수

구 분	인 구		전 체 사 건		소 송 사 건				비 송 사 건 (등기, 가족관계 등록, 공탁)	
	인 구 수	지 수	사 건 수	지 수	본 안 사 건		본 안 외 사 건		사 건 수	지 수
연 도					사 건 수	지 수	사 건 수	지 수	사 건 수	지 수
2008	49,540,000	100.0	18,402,098	100.0	1,753,088	100.0	4,592,473	100.0	12,056,537	100.0
2009	49,773,000	100.5	17,910,728	97.3	1,594,952	91.0	4,750,487	103.4	11,565,289	95.9
2010	50,515,000	102.0	17,405,933	94.6	1,482,074	84.5	4,734,122	103.1	11,189,737	92.8
2011	50,734,000	102.4	18,295,844	99.4	1,503,696	85.8	4,784,127	104.2	12,008,021	99.6
2012	50,948,000	102.8	18,020,241	97.9	1,573,652	89.8	4,744,390	103.3	11,702,199	97.1
2013	51,141,000	103.2	18,466,987	100.4	1,605,623	91.6	4,985,097	108.5	11,876,267	98.5
2014	51,327,000	103.6	18,986,585	103.2	1,657,385	94.5	4,843,459	105.5	12,485,741	103.6
2015	51,529,000	104.0	20,609,851	112.0	1,525,846	87.0	4,835,939	105.3	14,248,066	118.2
2016	51,696,000	104.4	18,978,570	103.1	1,523,108	86.9	5,224,405	113.8	12,231,057	101.4
2017	51,778,000	104.5	18,069,526	98.2	1,555,602	88.7	5,187,181	112.9	11,326,743	93.9

자료: 대한민국 법원(2017). 사법연감

<표 2-21> 민사사건 년별비교표(총괄표)-전심급

연도	구분	사건 수		지 수		처리율 (%)
		접수	처리	접수	처리	
<b>합 계</b>						
2008		4,080,033	4,246,492	100.0	100.0	104.1
2009		4,135,591	4,184,296	101.4	98.5	101.2
2010		4,236,740	4,242,345	103.8	99.9	100.1
2011		4,351,411	4,351,262	106.7	102.5	100.0
2012		4,403,094	4,366,341	107.9	102.8	99.2
2013		4,632,429	4,623,706	113.5	108.9	99.8
2014		4,610,899	4,572,941	113.0	107.7	99.2
2015		4,445,269	4,463,749	109.0	105.1	100.4
2016		4,735,443	4,746,995	116.1	111.8	100.2
2017		4,826,944	4,944,994	118.3	116.4	102.4
<b>본안사건</b>						
2008		1,314,833	1,341,882	100.0	100.0	102.1
2009		1,133,537	1,161,003	86.2	86.5	102.4
2010		1,041,468	1,049,851	79.2	78.2	100.8
2011		1,048,963	1,027,402	79.8	76.6	97.9
2012		1,110,770	1,082,755	84.5	80.7	97.5
2013		1,164,395	1,182,553	88.6	88.1	101.6
2014		1,207,673	1,191,627	91.8	88.8	98.7
2015		1,078,878	1,093,040	82.1	81.5	101.3
2016		1,048,749	1,036,026	79.8	77.2	98.8
2017		1,095,931	1,105,938	83.4	82.4	100.9
<b>본안외사건</b>						
2008		2,765,200	2,904,610	100.0	100.0	105.0
2009		3,002,054	3,023,293	108.6	104.1	100.7
2010		3,195,272	3,192,494	115.6	109.9	99.9
2011		3,302,448	3,323,860	119.4	114.4	100.6
2012		3,292,324	3,283,586	119.1	113.0	99.7
2013		3,468,034	3,441,153	125.4	118.5	99.2
2014		3,403,226	3,381,314	123.1	116.4	99.4
2015		3,366,391	3,370,709	121.7	116.0	100.1
2016		3,686,694	3,710,969	133.3	127.8	100.7
2017		3,731,013	3,839,056	134.9	132.2	102.9

자료: 대한민국 법원(2017). 사법연감

#### 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심판사무과에서 심판사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재판 통계로써 사건통계에 대한 누계표 및 현황표를 제공하고 있음
- 헌법재판 통계에는 각 이슈별로 간략하게 누계수치를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헌법재판’과 연도별, 청구원인별, 각하사유별 등 세분화하여 월마다 심판사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사건통계’가 있음
  - ‘한눈에 보는 헌법재판’은 그림아이콘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주요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사건통계’에서는 표를 제공하는 일반통계와 시계열 그래프를 제공하는 그래프통계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와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3] 한눈에 보는 헌법재판



자료: 헌법재판소 사이트 (<https://www.court.go.kr/cckhome/kor/newinfo/newEventStaticBoard1.do>)



<표 2-22> 사건통계의 일반통계 중 사건 누계표

○ 누계표

2018년 ▼ 08월 ▼ 검색

1988.09.01 ~ 2018.08.31 현재

구분	점수	처리											미제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위헌법률	956	282	77	18	7		340			72		123	919	37
탄핵	2					1		1					2	
정당해산	2					1				1			2	
권한명의	104					17		20		38		19	94	10
헌법소원	§68①	27,018	109	68	20		662	4	7,494	17,498 (15,962)	8	681	26,544	474
	§68②	6,860	246	101	32	21		2,169		3,881 (3,536)	2	119	6,571	289
	계	33,878	355	169	52	21	662	2,173	7,494	21,379 (19,498)	10	800	33,115	763
합계	34,942	637	246	70	28	681	2,513	7,515		21,490 (19,498)	10	942	34,132	810

※ 주 1) 정당해산심판사건 2건 중 1건은 재심사건임.  
 2)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자료: 헌법재판소 사이트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EventGeneralStats.do>)

[그림 2-14] 사건통계의 그래프통계 중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 및 처리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접수건수	1,969	1,859	1,951	2,626	1,725
처리건수	1,888	1,937	1,976	2,425	1,837

검색기간 : 2018.08.3



자료: 헌법재판소 사이트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EventGraphStats.do>)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국에서 각종 조치통계 및 현황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하여 최근선거통계 및 역대선거통계를 제공함
-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 대해서 선거일정, 선거구수 및 정수현황, 선거구 및 읍명동현황을 볼 수 있는 기본현황과 후보자 명부 및 사퇴/사망/등록무효 등 후보자 통계, 투표현황과 사전투표현황, 개표현황 등 투표개표에 관한 통계, 당선인 명부 및 당선인 통계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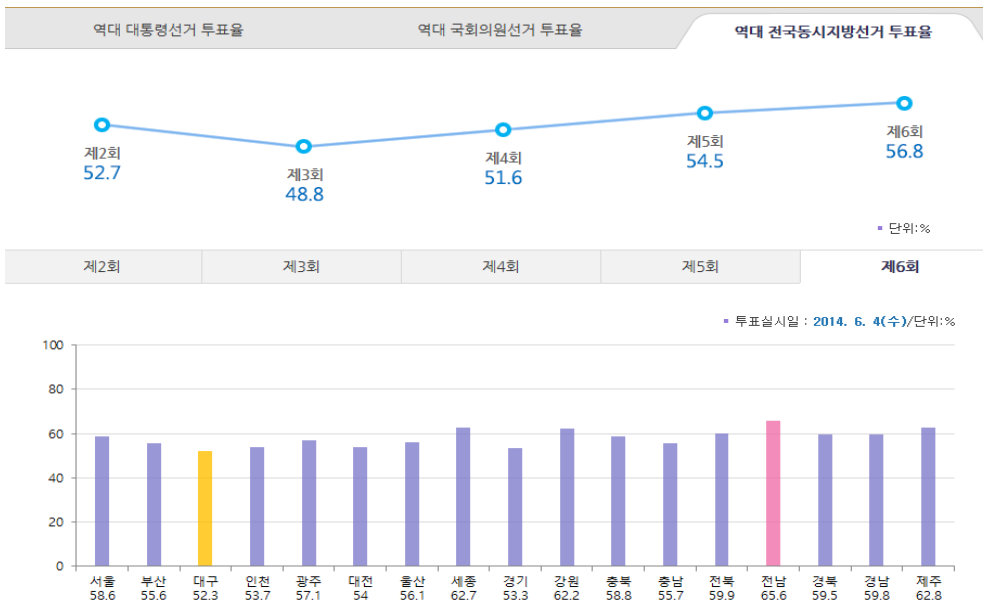
[그림 2-15] 최근선거통계 목록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 역대 선거에 대해서는 메인화면을 통해 최근 5개 선거에 대한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을 제공하며, 세부적인 현황 및 통계는 최근 선거와 유사하게 제공함

[그림 2-16] 역대 선거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마.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침해조사국의 조사총괄과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조사총괄과는 매월말 기준 진정사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

<표 2-23> 2018년 7월 진정사건 처리 현황(2018. 7. 1.~7. 31.)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내역												조사 진행 중	
		합계	수사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전체	838	832	-	-	18	1	-	-	2	47	523	8	233	-	4,004
침해	684	692	-	-	13	1	-	-	1	20	460	8	189	-	2,603
차별	151	137	-	-	5	-	-	-	1	27	60	-	44	-	1,395
기타	3	3	-	-	-	-	-	-	-	-	3	-	-	-	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7월말 현재 사건 처리 현황

-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실적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통계’를 사이트에 공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통해 위원회의 핵심업무인 인권정책 권고, 인권상담, 진정 접수 및 처리, 권고수용률 및 인권교육에 대한 통계를 제시함

바. 시사점

- 입법·사법기관에서는 집계 방식의 보고통계 유형의 통계를 작성, 제공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는 통계편의 형태로 종류별, 사건 유형별로 월별,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여 정비된 형태임
- 반면 국회사무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회기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별로 정보를 제공하여 통계 작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
- 정기 간행물의 발간, 시계열 정보의 제공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승인 추진보다는 통계 개선을 위한 통계청의 기술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이용자가 입법·사법기관의 통계를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계청에서 관련 통계를 모아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사법기관의 통계를 어떤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지와 어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지를 일반 이용자들은 인지하기 어려움
- 국회사무처의 의안정보시스템과 같이 통계 제공 사이트가 따로 있거나, 기관 사이트의 보고서 목록에 있는 등 접근해야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통일이 필요함

### 3. 주요국의 통계승인제도

#### 가. 미국

- 상무부 센서스국과 경제분석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등 13개 주요 연방 통계 생산 기관이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 생산 체계를 운영하는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통계수석(Chief Statistician of the United States)이 통계의 중복, 통계기준 일치 등 총괄조정기능 수행
- 각 부처의 통계작성활동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통계작성기관에게는 정보 수집을 위해 각 부처, 연방정부사무소 등에 정보를 요구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작성된 통계 들은 OMB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미국은 정부통계를 ‘공식통계’로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정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OMB가 예산을 통해 국가통계기능을 엄격히 조정·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통계지정제도가 작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 OMB 내에 통계 담당부서가 80여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프로그램 및 예산을 통합하여 검토하므로 전체 연방통계시스템의 우선순위에 맞춘 체계적인 통계프로그램의 재정 배분이 가능함
- OMB 내 통계수석(Chief Statistician)과 통계 및 과학정책과는 각 통계작성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를 검토·평가하여 연방통계예산 전체의 우선순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배정하여 통계의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계조정을 하고 있음
- OMB는 통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조사계획서를 검토하며 각 부처의 통계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평가함

#### 나. 영국

- 영국은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agencies)의 조사에 대해 승인권한을 지님
-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2007(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에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를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로 정의하고 공식통계 중에서 통계실천규약(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을 준수한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정의
-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제6조는 공식통계를 정의하고 제8조는 공식통계의 모니터링과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of official statistics) 조항을 두어 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가 공식통계의 생산

과 발간을 모니터하도록 규정. 또한 공식통계의 품질과 모범 사례 등과 관련한 견해를 해당 통계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10조는 통계실천규약(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 제정과 개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는 공식통계의 평가(assessment)를 통  
해 공식통계의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해야 함을 규정
- 국가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1조  
는 사전접근(pre-release access), 제13조는 지속적인 규약 준수 의무,  
제14조는 재평가, 제15조는 평가 프로그램, 제16조는 평가 요청, 제17  
조는 평가 원칙과 절차, 제18조는 국가통계목록, 제19조는 규약에 관  
한 경과 규정을 명시

<표 2-24>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2007의 통계 정의

구분	법조문 내용
공식 통계 (official statistics)	제6조. 공식통계는 통계위원회, 정부 부처,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웨일즈 지방정부, 북아일랜드 정부가 작성하거나 이들 기관의 명령에 의해 작성된 통계를 말한다.
통계실천규약 (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	제10조. 통계위원회는 통계실천규약을 준비하고, 적용하고 공표해야 하며, 필요시 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웨일즈 지방정부, 북아일랜드 정부,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상의(consult)해야 한다.
국가 통계 (Systemic reviews)	제12조. 평가(assessment) (1)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통계위원회는 공식 통계가 제10조의 통계실천규약을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2) (1) 항에 의거하여 통계위원회가 통계실천규약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통계를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해야 한다.

- 통계위원회는 "공식통계 식별 가이드라인(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을 통해 특정 자료가 공식통계로 간주되어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작성 자료의 정책 활용 목적 부합성과 공표시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역할로 요약 가능
- 특정 수량적 정보가 공식통계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자료수집, 방법론, 대상, 주제, 접근성의 관점에서 제시함

- 또한 통계와 사회연구(social research)를 구분하는 ‘공동 안내서’를 제 공하여 통계생산기관이 산출물이 공식통계로 여겨져야 할지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줌

〈표 2-25〉 영국의 공식통계 판단 기준

기준 1	부처의 주요 정책관련 의사결정, 자원배분 및 기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주제를 지원하는 데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
기준 2	공표 시 대중의 논쟁이 예견되며 통계위원회가 이러한 수치가 공식통계로 제공됨으로써 그 논쟁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표 2-26〉 공식통계 식별 종합 기준

기준	내용
자료수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쓰이는 원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앞으로 그러할 의사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방법론	원자료의 수집과 그 결과의 작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을 따른 경우
대상	원자료를 통해 작성된 정보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주제	<p>자료가 다루는 주제가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성과 및 이행여부(일반적으로 또는 공식 목표에 대해)를 관리 또는 평가하는 데 쓰이는 정보</li> <li>- 공공정책 수립, 실행, 평가 및 관리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li> <li>- 공공서비스 관리 또는 공공기금 및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li> <li>- 공공업무를 확인할 수 있게 기능하는 정보 (예: 국민이 공공정책과 관련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게 하는 정보)</li> <li>- 기업, 학계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 공적자산이 될 수 있는 정보</li> <li>- 이전에 대중의 높은 관심을 가졌던 정보 (예: 인쇄매체에 주기적으로 컬럼이 기재된 정보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정보) 또는 향후 상당한 대중 관심 또는 논쟁을 끌어낼 수 있는 정보</li> <li>-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보 (예: 특정 투자의 가치나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li> </ul>
접근성	원자료에서 추출된 정보는 전자 또는 인쇄물로 공개되고 공식 ‘공공기록’의 일부를 포함함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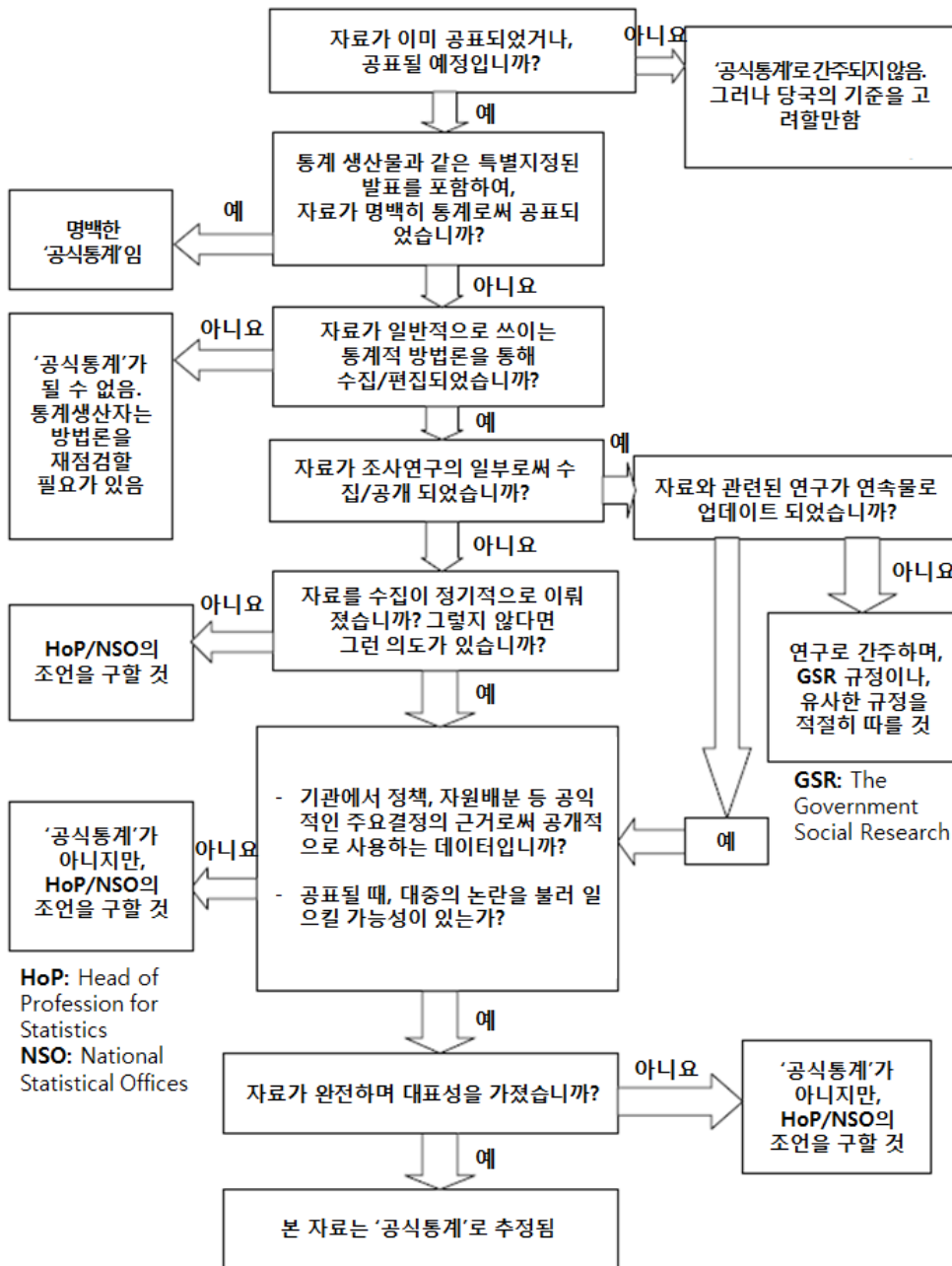


<표 2-27> 통계 및 사회연구의 구분 공동 안내서

원칙	통계	사회연구
국가차원의 대표성	한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리적 영토를 다루는 국가차원의 완성된 자료 또는 개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	국가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음 : 관심 대상 그룹을 통계적으로 대표해 경험 및 특징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선정된 질적 표본
계열의 일부	a. 계열의 일부가 되는 구조적 정보 수집: 자료수집 과정이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짐 또는 이 같은 계열을 개발하는 계획이 공표됨 예) 국가적으로 마련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영 정보 또는 기타 자료에서 추출한 정례 자료 예) 국가차원의 대표성을 갖춘 정기적 조사의 첫 공표 산출물 b. 어느 계열이 개발될 수 있거나 기존의 통계수집 자료를 벤치마크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이뤄진 통계수집 작업. 예) 실험 통계	자료수집이 구조적인 경우, 반복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 계열의 일부가 될 의도가 없음 예) 특정 정책 문제의 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일회성 조사 예) 조사, 경영정보 및 기타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시범정책의 평가보고서
정보수집과 증거 및 분석 기반이 탄탄함	타당한 통계원칙의 적용 : 국제 통계 관행과 일관성 있게 타당한 통계원칙의 적용과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품질	증거 및 분석이 과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탄탄함 : 사용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전문적 기준이 적용됨. 이는 필요한 경우, 특히 통계적 추론과 관련된, 통계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그 방법 및 산출물의 품질이 검증됨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그림 2-17] 공식통계 판단을 위한 흐름도(flow chart)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재구성

## 다. 일본

- 일본은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재무성 등 부처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생산체계를 적용
  - 총무성 통계국이 중앙통계기관으로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 수행과 인구조사 등 국가 기초 통계조사를 담당하며, 정부기관 간의 통계업무 조정은 총무성 정책총괄관(통계기준 담당)이 담당
- 일본 통계법에서는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를 공식통계라고 하며, 중요성에 따라 기간(基幹)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
  - 기간통계는 법에서 정한 법정 기간통계와 지정 기간통계로 구분하는데, 법정 기간통계는 국세통계(인구주택총조사통계)와 국민경제계산(국민계정) 2종이 있으며, 지정 기간통계는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통계로 정책기획 지원, 민간의 의사결정 지원, 국제기구 제공이나 국제비교 목적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일반통계에 대한 정의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조사의 정의에서는 기간통계조사와 일반통계조사로 구분하고 일반통계조사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중 기간통계조사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여 이 정의에 의거 일본의 공적통계는 기간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 가능

<표 2-28> 일본 통계법(평성19년법률제53호)의 통계 정의

구분	법조문 내용
공적통계 (公的統計)	3. 이 법률에서 '공적통계'란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칭함)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기간통계 (基幹統計)	제2조 4. 이 법률에서 '기간통계'란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말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통계 2)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경제계산 3) 행정기관이 작성하거나 작성해야 할 통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것 가. 전국적인 정책을 기획 입안하거나 또는 이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통계 나. 민간에서의 의사결정 또는 연구활동을 위해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계 다. 국제조약 또는 국제기구가 작성할 계획에 있어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통계 그 외 국제 비교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통계
기간통계 조사	제2조 6. 이 법률에서 '기간통계조사'란 기간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조사를 말한다.
일반통계 조사	제2조 7. 이 법률에서 '일반통계조사'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중 기간통계조사 이외의 것을 말한다.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법([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houbun2n.htm](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houbun2n.htm))

- 일본의 통계승인제도는 통계법 제2장(공적통계의 작성) 제2절(통계조사)에서 기간통계조사의 승인과 일반통계조사의 승인으로 구분하여 명시
  - 기간통계조사의 승인은 승인 기준, 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조치 요구, 보고 의무, 통계조사원,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사무, 기간통계 조사와 오인시키는 조사의 금지, 명령의 위임 등으로 구성
  - 일반통계조사의 승인, 승인 기준, 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개선 요구, 결과의 공표로 구성
  - 이외에 제3관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이 실시하는

### 통계조사에 관해 규정

- 일본 통계법은 통계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통계조사에 대한 승인이라는 점이 특징적임
  - 즉 통계 생산이 아닌 통계조사의 주체를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행하는 통계조사에 대한 승인과 변경, 중지, 개선 요구, 공표의무를 부과
  - 특히 통계조사의 주체에 따라 승인과 신고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기간 통계와 행정기관이 행하는 통계조사는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나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통계조사는 신고하도록 차등 관리하고 있어 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는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아님. 통계 생산 주체의 역량을 감안한 규제 강도 차등화와 생산되는 통계의 성격(조사, 보고)에 따른 관리 차등화는 시사하는 바가 큼

〈표 2-29〉 일본 통계법의 통계조사 승인 관련 조항

구분	법조문 내용
기간통계 조사	<p>제2장 공적통계의 작성, 제2절 통계조사, 제1관 기간통계조사 (기간통계조사의 승인)</p> <p>제9조 행정기관의 장은, 기간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미리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 전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승인의 기준), (기간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조치요구), (보고의무), (통계조사원), (출입검사 등),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사무), (기간통계조사와 오인시키는 조사의 금지), (명령의 위임)</p>
일반통계 조사	<p>제2관 일반통계조사 (일반통계조사의 승인)</p> <p>제19조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승인의 기준)</p> <p>제20조 총무대신은 전조제1항의 승인신청과 관련된 일반통계조사가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p> <p>1 통계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p> <p>2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통계조사와의 중복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p> <p>(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 (일반통계조사의 개선 요구), (일반통계조사의 결과의 공표 등)</p>
기타 조사	<p>제3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이 행하는 통계조사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통계조사)</p> <p>제24조 지방공공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p> <p>(독립행정법인 등이 행하는 통계조사)</p> <p>제25조 독립행정법인 등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 각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p>

<표 2-30> 일본의 통계조사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기간통계조사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통계조사 신고서 기재사항
1. 조사 명칭 및 목적 2. 조사 대상 범위 3.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과 그 기준이 되는 기일 또는 기간 4. 보고를 요구하는 자 5. 보고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6. 보고를 요구하는 기간 7. 집계 사항 8. 조사 결과의 공표의 방법 및 기일 9. 사용되는 통계기준 기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조사의 명칭 및 목적 2 조사 대상의 범위 3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과 그 기준이 되는 기일 또는 기간 4 보고를 요구하는 자 5 보고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6 보고를 요구하는 기간

자료: 임준규·김두만(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 제3절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방안

### 1. 개요

- 승인제도의 취지(통계청, 통계조정업무메뉴얼, 2015)
  - 유사, 중복 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효율)
  -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제거(품질)
- 개선 필요성
  - 행정부처 이외 중요한 국가 기관의 통계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
  - 관리 대상 통계 증가에 따른 예산, 인력 제약 하의 관리 효율화 대두
  -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 활용 통계의 관리 대상에 포괄 필요
- 개선 기본 방향
  - 관리의 실효성 확보 지향
  - 비용 효율적인 관리체계 지향
  - 통계 작성 환경 변화에 부응

### 2.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 현행 통계법은 '통계'의 정의를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생산하여 공표하는 수량적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통계'로 지칭
  - 즉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는 모두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국가통계'로 규정. 국가통계의 통계조사표와 결과보고서에 사용하는 마크에는 '국가통계(영문으로는 NATIONAL STATISTICS)'로 표시하도록 규정



- 이와 별도로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통계법 시행 규칙에 서는 조사, 보고, 가공 통계로 구분

<표 2-31>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통계의 분류

구분	개선(안)
조사통계	•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보고통계	•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행정집계: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
가공통계	•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자료: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계작성(승인신청서)

- UN, OECD 등 국제기구는 국가통계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통계생산 활동이나 국제기구의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는 통계를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로 정의하고 있음(OECD의 통계 용어집에는 **national statistics**는 정의하지 않음)
  - 주요국의 경우 국가통계, 연방통계(연방제 국가), 공식통계(일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등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를 지칭하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와 이 중 제시된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통계는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
  -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라는 명칭은 국가적으로 규정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통계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4)

4) 한국통계학회 산하 연구회 중에는 국가통계연구회가 있으며, 과거 공식통계연구회에서 명칭을 개정함(한국통계학회의 정관 및 운영세칙)

<표 2-32> 국제기구 등의 official statistics의 정의

구분	정의
OECD	• Official statistics are statistics dissemina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excepting those that are explicitly stated not to be official.(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2007)
UN	• Any statistical activity carried out within a national statistical system, or under the statistical programme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a href="http://data.un.org">http://data.un.org</a> )
Wikipedia	• Official statistics are statistics published by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public bodie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public good

<표 2-33> 국가별 통계 명칭

구분	국가	비고
국가통계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연방통계	독일, 스위스, 미국	미국은 federal statistics이외에 national statistics 용어 사용
공적통계	일본	일본은 공적통계를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중요 통계인 기간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
국가통계 공식통계	영국, 벨기에, 터키, 아일랜드	영국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인 official statistics 중에서 품질이 높은 통계를 national statistics로 지칭
통계	호주, 프랑스, 캐나다	통계생산 집중도가 높은 나라

자료: 임준규,김두만(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p.108의 표 내용을 일부 수정

- 통계법에서 국가통계의 의미로 정의한 ‘통계’는 명명법(命名法, Nomenclature)<sup>5)</sup>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명사보다는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sup>6)</sup>

5) 특별한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방식. Cambridge English Dictionary는 특정 과학 분야에 서 사물을 명명하는 체계로 정의(a system for naming things, especially in a particular area of science)

6) 임준규·김두만(2015)은 통계명명법을 ‘절차적 용어사용 명명법’과 ‘실체적 용어사용 명명법’으로 구분하고 통계작성 절차 관련 용어보다 ‘대상의 성격이나 명칭에서 느낄 수 있는 어감이나 분위기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인 ‘실체적 용어사용 명명법’을 선택함

- 통계법의 규율 대상을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와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 구분
- 공공통계는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와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국가(승인)통계를 지칭. 공공통계의 명칭이 주는 특성을 감안, 민간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주요 국가(승인)통계만을 대상으로 포괄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public data)를 제공하는 공공기관(public institute)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의
-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로 현재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즉 국가통계)'에 해당
-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는 중요한 통계라는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일본의 '기간통계'와 같이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
  - ※ 통계법 제3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으로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미의 '지정'과 지정통계의 '지정'이 함께 혼용되어 혼란 야기
- 현행 통계법은 국가승인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정의함

---

7) 통계법 제17조 1항은 지정통계의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통계 개념이 공공통계와 국가승인통계로 변경될 경우 부처가 작성하는 통계 중에서 표본규모가 작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 대표성이 부족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통계는 공공통계로 분류. 또한 현재 국가승인통계 중 품질진단 결과 신뢰도가 낮은 경우는 통계청장의 직권에 의해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통계로 재분류 제도 도입 필요. 또한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통계 중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요 통계는 통계청 국가승인 신청 대상으로 의 직권 지정하는 제도 보완 필요

〈표 2-34〉 공공통계 중 국가승인통계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통계 작성 목적	• 통계작성 목적이 정부정책 수립 지원에 부합
통계 작성 대상	• 조사 대상 모집단이 명확하고 대상 지역이 전국 규모
작성 기준시점과 작성 주기	• 작성 기준 시점과 작성 주기가 명확하며 일정함
작성 항목	• 조사 항목이 작성 목적에 부합하며 응답부담률이 적절함
자료 수집 방법	•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자료 수집 방법 사용
표본 설계	•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표본 규모(목표 오차), 표본추출방식, 표본배정/선정방식,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가 신뢰할만함
조사 체계	• 조사체계(자체, 용역, 위임·위탁 등)가 신뢰할수 있음
분류체계	• 표준분류체계를 적용함
결과 공표	• 결과 공표 방법 및 수단이 신뢰할만함
기타	• 주요 용어의 정의,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기술이 적절함

자료: 통계청(2018), 통계조정업무 매뉴얼의 통계작성승인 신청 서식과 검토 기준을 기초로 작성

- 승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칭)시범통계제도 도입
  - 현재의 승인제도는 조사 시행 전 승인을 받으므로 승인시의 조사 주기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부정기 조사 등)하여 승인 제도의 공신력 저하 가능성

- 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GPS),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의 경우 공공통계의 영역에 귀속하는 보완책이 필요
  - 승인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을 판단, 장기간 승인통계 유지 가능한 통계는 현재처럼 승인통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통계 등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는 시범통계(pilot statistics)로 승인, 작성 이후 품질 진단을 거쳐 국가(승인)통계의 지위를 부여
  - 시범통계는 궁극적으로 국가통계로 승인을 지향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공표 시 통계의 제약 조건, 해석 상 유의점,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 개선 이행계획이 첨부되어야 함
- ※ 영국 통계청은 실험통계(Experimental Statistics)를 공식통계의 일부로 공표. 실험통계란 새로운 통계가 기존의 통계 자료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통계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결과물, 새로운 통계에 대한 이론적 품질과 한계가 존재하는 통계, 품질 검증이 완료되기 전이지만, 이용자들이 즉각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통계, 다른 통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요나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통계, 개발 중인 통계로 개선이 필요한 새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 일부 업종만 해당되는 등의 커버리지가 불완전한 개발단계의 통계, 기타 공식통계 실행 규약(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의 기준에 미달한 통계를 의미

〈표 2-35〉 통계 명칭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국가통계)</li> <li>• 지정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li> <li>-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국가(승인)통계</li> </ul> </li> <li>※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public data)를 제공하는 공공기관(public institute)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의</li> <li>•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li> <li>• 국가기간통계(national key statistics), 또는 국가기반통계(national base statistics)</li> <li>※ 시범통계: 통계 승인 시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로 작성 이후 품질 진단을 거쳐 국가(승인)통계의 지위 부여</li> </ul>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통계</li> <li>• 보고통계</li> <li>• 가공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통계</li> <li>• 보고통계</li> <li>• 가공통계</li> <li>※ 시범통계: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 기존 작성 방법과 차별적인 방법론 적용 등으로 국가통계로 승인을 위해 관찰 기간이 필요한 통계</li> </ul>

### 3.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국회, 법원 등)은 통계작성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어 국가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며, 국가 기관간의 원활한 통계자료 공유에도 제약
  -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범위 확대 필요
    - ※ 통계작성기관은 행정자료(24조), 통계자료 공유(30조) 의무
  - 특히 부처의 승인통계작성체계가 부처-진흥원-협회-조사회사 등 많은 기관이 협업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그림 1-1 참조) 진흥원과 협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
    - ※ '18. 9월 현재 공공기관 338개 중 공사/공단, 연구기관은 56개(16.6%) 기관만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조합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통계작성·공표
  - ※ '18. 9월 현재 24개 협회가 32종의 통계 작성 중이며, 협회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협회와 지정되지 않은 협회가 혼재되어 있고, 조합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없음
- 현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수는 154개이며 평균 1.0개의 승인통계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통계(평균 11.1개, 8.3개)에 비해 매우 작음
  - 이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조사의 품질 제고와 공신력 확보(국가승인통계 지위 확보를 통한 응답 거부 감소 기대)를 위해 대부분 1종의 통계를 승인받기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을 하게 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임
    - ※ 영국의 경우 배지를 부여한 National Statistics는 2018년 6월 기준 861종 (한국은 1,082종, 2017년 말 기준)

〈표 2-36〉 통계작성기관과 승인통계 현황(2018년 9월)

구분	중앙 행정 기관	광역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통계작성지정기관						계
				공사 공단	연구 기관	금융 기관	협회 조합	기타 기관	합계	
작성기관	35	17	226	58	45	7	24	20	154	432
승인통계	389	141	384	31	25	23	32	37	148	1062
기관별 통계	11.1	8.3	1.7	0.5	0.6	3.3	1.3	1.9	1.0	2.5

- 국가가 관리할 공공통계 생산 기관을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으로 확대
  - 현재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의 정의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법에서도 준용 가능

〈표 2-37〉 주요 법령의 공공기관 정의

구분	정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3. 8. 6.]

○ 통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알 권리) 차원에서는 입법, 사법 기관으로의 확대가 타당하나 통계법의 규율 대상이 그동안 행정부처 위주였음을 감안하면 입법, 사법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설득 방안(단계적 접근 필요)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입법, 사법 기관의 독립성 감안)

- 현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의 생산 통계는 집계성 보고통계의 성격으로 국가승인통계에 포함할 유인과 실익이 크지 않음. 통계 작성 기준 등 이용자 관점의 기술 지원을 통해 품질 제고는 필요

※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에 법원 행정처, 국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 담당자 포함 필요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이외의 주요 국가 기관의 경우 국가 통계 생산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 통계 시스템에 포괄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업무 속성 상 산출되는 통계가 집계 형태의 보고통계 위주일 것으로 판단 되어 1차적으로는 통계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작성하는 통계 현황을 자체 관리하는 단계를 거쳐 등록 통계 중 중요한 통계는 국가승인통계화 하는 단계별 개선이 현실적임
-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사안별로 공공기관의 지정을 다르게 적용. 즉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 통계법도 이를 활용, 통계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임명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공공통계 제공 실태 평가, 중복 유사 통계 제공 실태조사 등 사안별로 입법, 사법 기관은 제외하는 방식 적용 가능

〈표 2-38〉 공공데이터법의 공공기관 지정 방식

구분	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 방지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 실태조사	<p>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통계청이 관리해야 할 기관수(통계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효율적인 관리 곤란 예상
- 통계법 제3조5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338개)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ex.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017년 12월 31일 기준 399개<sup>8)</sup>)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2017년 기준 유치원 9,029개, 초중고 11,500여개, 대학교 339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ex.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정부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ex.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의 경우 유관 부처의 승인통계를 생산하거나 기관 고유의 승인통계를 작성하는 등 통계 작성기관의 역할 수행이 충분하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3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8)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시장형 공기업, 연구소, 진흥원, 공사, 재단 등 다양하여 작성기관으로 일괄 확대 시 효율적 통계관리 곤란 예상

- 국책연구소의 경우 유관 부처의 국가승인통계 작성 대행 업무를 담당하여 통계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이 충분하나 공기업, 진흥원, 재단 등은 업무 특성 상 필요한 통계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2-39> 공공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7	2018
공기업	시장형(가스공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14	15
	준시장형(조폐공사, 마사회, 석탄공사, 도로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21	2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사학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진흥재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16	16
	위탁집행형(재정정보원, 교육학술정보원, 장학재단, 연구재단,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국제협력단,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72	77
기타 공공기관(서울대병원, 과학기술원, 국제교류재단,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악방송, 한식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207	210
계		330	338

- 통계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기관수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통계생산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있는 기관을 매년 지정, 추가하는 방식이 효과적
- 영국의 경우 공식통계 생산기관을 매년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우리도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2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 가능
  - ※ 영국의 official statistics 대상 기관은 Ministerial Department(정부부처) 25개, Other departments and public bodies(기타 부처, 공공기관) 545개, closed organisations(BBC, Ofcom 등 기타 공적 협회 등) 477개, 총1047

개. 최근 The Official Statistics Order 2018로 The British Film Institute. 등 41개 기관이 공식통계 생산 기관으로 추가 지정

- 민간 기관은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한해 통계작성기관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한국철강협회의 철강통계조사(지정통계),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지정통계) 등 주요 통계가 민간 기구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민간 기구의 경우 기관 및 통계 담당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 정부조직 개편 시 소관 업무 재조정예 따라 유관협회의 통계 관련 조직도 개편되면서 통계 생산 업무 분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음(2008년 방통위, 2013년 미래부로 정부 조직 개편시 ICT통계 작성 조직과 업무가 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분산 이관된 사례)
  - 민간이 생산하는 지정통계와 같은 주요 통계는 가급적 해당 부처로 이관(협회는 수행기관)하고 자체 생산 통계 중 주요 통계는 예외적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관리
    - ※ 한국철강협회의 철강통계조사(지정통계),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지정통계) 등 주요 통계는 해당 부처로 이관(조사는 협회가 수행)
    - ※ 장기적으로는 국가승인통계 제도와 별도로 민간 기관이 생산하는 주요 통계를 대상으로 민간 자율 기구(학회, 통계진흥원)의 민간 품질 인증제도 신설 필요

#### 4. 통계 관리 체계 개선

- 현행 통계법의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정의(통계법 제3조)

- 즉 통계법의 적용 대상인 통계의 작성 주체를 설정하고 작성 주체가 작성하는 통계를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
- 이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다양한 유형의 통계에 일괄 적용하여 규제 효율과 실효성 측면에서 곤란 발생(부처가 생산하는 모든 통계의 모니터링 곤란으로 인한 법 위반-미승인통계- 발생)
- 특히 통계작성지정기관 제도의 경우 특정 통계의 승인(대물적 처분)을 위해서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대인적 처분)이 필수적이며 지정 이후 기관의 모든 통계 생산 활동이 통계법의 규율 대상이 되어 정부 부처와 다른 업무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단체 등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가능
- 통계작성기관 정의 유지 시 승인통계 지정 기관에 대한 통계품질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할 경우 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통계는 승인통계의 대상이 되어 통계청의 관리 부담 가중 문제 해결 필요
-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통계(=국가통계) 개념을 공공통계, 국가승인통계로 구분함으로써 해소 가능
-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통계, 국가(승인)통계의 기관별 책임관리제 운영 도입
  - 통계청: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중요도가 높은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는 통계청이 중점 관리
  - 통계작성기관(정부 부처), 공공기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는 통계현황신고 제도를 통한 자율 관리
    - ※ 통계청은 통계현황신고 통계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주요 통계는 직권 승인 제도 적용, 의도적 승인 기피 문제 해소
- 통계현황신고 제도 도입
  - 부처가 생산, 발표하는 조사 통계와 가공통계, 보고 통계 등 모든 공공통계 현황을 작성, 자체 관리하고 통계청에 현황과 변경 사항을 수시 신고

- 통계현황신고 제도는 정부의 예산으로 생산되는 통계 중에서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공표하는 미승인통계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 가능
  - ※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15년)에서도 미승인 통계 발생 문제를 지적
- 현황신고 통계의 품질 관리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가 담당하며 부처 유관기관(국책연구소, 진흥원 등 공공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기획 및 조정과 품질진단 등 관리 업무 전문화
  - ※ 현재 과기부 2차관 소관 ICT통계의 기획, 평가 업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담당(전담기관 지정 관련 규정은 붙임 참조). 지정기관 적용이 가능한 부처를 신청을 통해 선정, 시범 적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 부처로 확대 적용
-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는 현재와 같이 5년 주기의 정기품질진단을 시행하고 부처가 관리하는 통계현황신고 통계 중 진단 필요성이 있는 통계는 통계청이 선별, 부정기 품질 진단 시행

〈표 2-40〉 통계현황신고 제도 사례(과기정통부)

구분	관리 통계	주요 기능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 정부승인통계 조정 관리 및 품질진단
부처	국가승인통계 이외 공공통계	• 통계현황신고 제도 운영 • 부처 관리 통계 예산 적정성 검토
전담기관 (KISDI)	국가승인통계 이외 공공통계	• 부처 통계기획, 평가 • 부처 관리 공공통계 품질진단

- 기관별 책임 관리가 도입 될 경우 부처 자체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부가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 영국은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계생산기관에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국민과 의회에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자발적 규제 방식을 적용

- 통계현황신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단위의 주기적인 통계 관리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처별 통계현황 신고의 신뢰도를 측정, 공개 필요
- 또한 부처가 관리하는 통계현황신고 통계의 품질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품질 제고를 위한 동기 부여. 이와 함께 공공통계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계청장의 직권으로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요구와 공공통계 생산 중지 권한도 필요
- 특히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작성 기관의 중복 유사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통계청장이 요구하는 법조항(제12조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은 있지만 통계작성기관의 중복 유사 통계 작성 제공 방지 조항은 없으므로 자율 관리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복유사 통계 작성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

<표 2-41> 기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위한 보완책

구분	현행	개선(안)
공공통계의 제공 운영 실태 평가	-	① 통계청장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통계의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통계 책임관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중복유사 통계 작성제공 방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존에 생산 제공하고 있는 공공통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통계를 작성·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통계의 작성·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구분	현행	개선(안)
중복유사 통계 작성제공 실태조사	-	<p>통계를 작성·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① 통계청장은 공공통계의 중복·유사 통계 작성·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가통계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공통계의 생산 중지		<p>① 통계청장은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통계의 자체품질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통계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통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공공통계 관리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공공통계의 생산을 중지할 수 있다.</p>

- 부처의 자율 규제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부실 우려가 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현재처럼 모든 통계를 통계청이 집중 관리하고 그 외 기관은 승인받은 국가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는 자율 관리하는 1단계(공공기관 자율규제)를 거쳐 향후 모든 기관이 국가 승인통계 이외의 공공통계는 자율관리 하는 2단계(자율규제 확대)를 시행하는 단계별 접근도 가능



<표 2-42>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안)

구분	통계구분	대상기관	관리체계
1단계 공공기관 자율규제	공식통계 국가통계	•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현재처럼 통계청이 모든 통계 관리 • 그 외 기관은 승인받은 국가통계는 통계청 관리, 공공통계는 자율 관리
2단계 자율규제 확대	공식통계 국가통계	•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	• 승인받은 국가통계는 통계청 관리 • 그 외 공공통계는 자율 관리

○ 작성 승인과 변경 승인 관리체계 차등화

-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작고 단순집계형태로 작성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  
되지 않는 보고통계는 조사, 가공통계와 관리 방식 간소화 적용
  - 보고통계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  
목적, 공표 주기, 공표 일정, 자료수집체계, 통계표 등을 약술한 신고  
절차로 개선
  - 품질진단의 경우에도 보고통계는 정기 품질진단에서 제외하고 자체,  
수시품질진단으로 간소화
- ※ 단 보고통계 중 지정통계(국내인구이동통계, 통화금융통계)는 현행과 동  
일하게 정기 품질진단 대상으로 관리

<표 2-43> 통계 유형별 관리체계 개선(안)

현행(조사/가공/보고)	개선	
	조사 가공	보고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항 사전 승인	• 사전 승인	• 사전 신고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4항 승인 고시	• 승인 고시	• 폐지

- 통계승인 관리 체계가 통계청의 승인통계 중심에서 관련 기관별 책임 관리체제로 개선될 경우 공공통계의 도입으로 미승인통계 발생이 해소되며,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포괄로 국가통계의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통계 중요도별 기관 책임관리제로 인한 효율적 관리가 예상
- 개선방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
  - 공공통계와 국가(승인)통계의 판단 기준과 선정 절차 마련
  - 국가통계의 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정 기준과 행정부 이외 기관의 공감대 형성
  - 부처별 자율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예산, 행정/통계자료 제공 등 유인책 필요

〈표 2-44〉 통계승인 관리에 대한 차등화 방안

구분	현행	개선(안)
통계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국가통계)</li> <li>• 지정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li> <li>-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국가(승인)통계</li> </ul> </li> <li>•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li> <li>• 국가기간통계(national key statistics), 또는 국가기반통계(national base statistics)</li> <li>※ 시범통계: 통계 승인 시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로 작성 이후 품질 진단을 거쳐 국가(승인)통계의 지위 부여</li> </ul>
통계 작성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지자체</li> <li>• 공공기관, 민간 신청 기관 지정(통계작성 지정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공공기관(통계청장이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주요 민간기관(현재처럼 신청 시 지정)</li> </ul>
통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일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국가승인통계</li> <li>•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 기관: 국가승인통계 제외한 공통계(통계현황신고) 관리</li> </ul>

<표 2-45> 개선안의 기대 효과와 후속 조치

구분	기대 효과	후속 조치
통계의 정의	• 공공통계의 도입으로 미승인통계 발생 해소	• 공공통계와 국가(승인)통계의 판단 기준과 선정 절차 마련
통계 작성기관	•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포괄로 국가통계의 관리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직권 지정 기준 • 행정부 이외 기관 공감대 필요
통계 관리	• 통계 중요도별 기관 책임제로 효율적 관리	• 부처별 자율 관리 체계 정착 방안 - 예산, 행정/통계자료 제공 등 유인책 필요

○ 공공통계와 국가(승인)통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통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선정 절차 마련이 필요

- 공공통계에서 승인통계로 전환 과정은 현재의 국가통계 승인절차 준용 가능.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공공통계로 변경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품질진단(자체품질진단과 정기품질진단) 결과 활용이 필수

- 통계 이용 관점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해당 통계 조회수, e-나라지포 시스템 제공 여부, 중장기 전망 등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목적 활용도, 국제 비교 목적의 국제기구 제출 여부, 통계의 시의성 및 중요도 등 고려 가능

- 자체통계품질진단과 정기통계품질진단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품질진단 결과, 이용도 등 해당 통계 관련 정보를 종합한 명부를 작성, 해당 부서의 1차 판단 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

※ 현재 통계법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는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관련 통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도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에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도 승인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통계청장의 직권으로 승인 취소 가능

○ 국가승인통계 중 공공통계로 재분류 시뮬레이션

- 현행 승인통계 중 통계품질 요소 등을 고려하여 공공통계로 분류될 규모를 추정함
- 통계 작성기관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정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가 중 미흡이 1회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간 평가 중 주의 또는 미흡이 1회 이상인 경우'로 설정
  - ※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주의, 미흡의 5단계로 구성
-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에 대해 '최근 3년(2015~2017년) 자체품질진단 결과 1회 이상 미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34종의 통계 중 2종의 통계가, '주의 또는 미흡이 1회 이상' 기준은 8종의 통계가 공공통계로 재분류되어 최소 6%에서 최대 24%가 공공통계로 재분류 예상
- 동일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승인통계에 대해 적용한 결과, 총 28종의 통계 중 3종이 '미흡이 1회 이상', 8종이 '주의 또는 미흡이 1회 이상'으로 나타나 최소 11%에서 최대 29%가 공공통계로 재분류 예상
- 재분류 대상 통계 중 조사통계는 보건복지부 통계 1종(2015년 진단 결과 '주의', 3년 주기 작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고통계로 재분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고통계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표 2-46> 공공통계 재분류 시뮬레이션 결과

부처	3년간 미흡 1회 이상	3년간 주의 또는 미흡 1회 이상
보건복지부(34종)	2종(5.9%)	8종(23.5%)
국토교통부(28종)	3종(10.7%)	8종(28.6%)

참고: 각 수치는 부처별 승인통계 대비 해당 기준 적용 시 공공통계 범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통계 비율을 의미함.

<표 2-47> 보건복지부 승인통계의 최근 3년간 자체품질진단 결과

보건복지부 통계명	통계 구분	e나라 지표	자체품질진단결과		
			2015	2016	2017
HIV/AIDS신고현황	보고		우수	우수	우수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보고	활용	주의	보통	양호
결핵현황	보고		우수	양호	양호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보고		미흡	우수	보통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활용	N/A	우수	우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고	활용	보통	보통	보통
국민보건계정	가공	활용	N/A	우수	우수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보고		N/A	N/A	보통
급성심장정지조사	조사		보통	양호	우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고	활용	양호	N/A	양호
노인학대현황	보고		보통	우수	보통
법정감염병발생보고	보고	활용	우수	우수	우수
보건복지관련산업일자리조사	조사		보통	보통	양호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보고		주의	보통	양호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보고		양호	양호	보통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보고		주의	양호	보통
어린이집맞이용자통계	보고		미흡	우수	보통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가공		보통	양호	우수
장애인현황	보고		주의	양호	보통
정신질환실태조사	조사	활용	N/A	N/A	보통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우수	우수	우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조사	활용	N/A	우수	우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고	활용	양호	우수	보통
한국의사회복지지출	가공	활용	양호	양호	양호
보육실태조사	조사	활용	N/A	양호	N/A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		N/A	양호	N/A
암등록통계	보고		양호	우수	N/A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보고		주의	양호	N/A
전국예방접종률조사	보고		N/A	양호	N/A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		양호	우수	N/A
환자조사	조사		보통	양호	N/A

보건복지부 통계명	통계 구분	e나라 지표	자체품질진단결과		
			2015	2016	2017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가공		양호	N/A	N/A
노후준비실태조사	조사		보통	N/A	N/A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		주의	N/A	N/A

주: N/A표시의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이거나 작성주기가 2년 이상인 통계임

<표 2-48> 국토교통부 승인통계의 최근 3년간 자체품질진단 결과

국토교통부 통계명	통계 구분	e나라 지표	자체품질진단결과		
			2015	2016	2017
공간정보산업조사	조사		양호	우수	우수
교통문화실태조사	조사		N/A	양호	우수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보고		양호	양호	양호
국토지리정보현황	보고		주의	양호	보통
대중교통현황조사	조사		우수	우수	우수
도로교량및터널현황	보고	활용	양호	양호	주의
도시재정비사업현황	보고		보통	보통	보통
미분양주택현황보고	보고		보통	N/A	주의
수자원현황	보고		N/A	양호	양호
아파트주거환경통계	보고		N/A	N/A	보통
외국인토지현황	보고		미흡	보통	주의
임대주택통계	보고		우수	N/A	양호
자동차등록현황보고	보고		양호	우수	양호
주거실태조사	조사		우수	우수	보통
주택도시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보고	활용	보통	보통	주의
지적통계	보고	활용	우수	우수	양호
철도경찰통계	보고		미흡	우수	양호
철도사고현황	보고	활용	미흡	양호	보통
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보고		양호	양호	보통
한국수문조사	보고		우수	우수	양호
항공교통관계업무통계	보고		양호	양호	주의
국가교통조사	조사		N/A	양호	N/A
도로현황	보고	활용	양호	양호	N/A
건축물통계	보고		양호	N/A	N/A
건축허가및착공통계	보고	활용	양호	N/A	N/A
도로교통량조사	조사		우수	N/A	N/A
주택건설실적통계	보고		양호	N/A	N/A
주택보급률	가공		보통	N/A	N/A

주: N/A표시의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이거나 작성주기가 2년 이상인 통계임





## 제 3 장 품질관리제도 개편방안



## 제1절 통계품질진단 개요

### 1. 통계품질관리 개편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통계품질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국가통계의 품질수준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에 국가통계 품질진단제도가 도입되었음
-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승인 및 조정, 품질지도 등으로 국가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품질진단제도는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최근에 통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 (통계 수요 증가) 빅데이터 중요성 부각,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따라 기존 승인통계는 물론 새로운 정보원천에 대한 수요 증가
  - (신속 통계 필요) IT 기술의 발달, 다양한 정보의 축적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 정보제공 필요성 제기
- 반면, 현행 통계관리체계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대상 통계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중요한 통계가 통계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함
  - 예를 들어 미지정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정보문화실태조사가 있음
- 또한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이 어려워지고 있어 통계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임
  - 관리가 필요한 통계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통계의 형태(조사, 보고, 가공)에 관련 없이 모든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통계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 행정부처 이외 중요한 국가기관의 통계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
  - 관리 대상 통계 증가에 따른 예산, 인력 제약 하의 관리 효율화 대두
  -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 활용 통계의 관리 대상에 포괄 필요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 장에서 논의된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제안됨
- (i)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 (ii) 시범통계제도 도입
  - (iii)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 (iv) 통계현황신고 제도 도입
  - (v) 통계 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 현행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과정(통계기획, 자료수집, 분석, 통계표 작성, 공표, 이용자 서비스, 활용 등)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점검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공표된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현재 MDIS 구축을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품질진단제도 개편에 포함하여 확대 개선 필요
- 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제1기 품질진단(2006년~2010년)과 제2기 품질진단(2011년~2014년)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제3기(2015년~2019년) 품질진단이 진행 중임.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제4기 품질진단이 실시될 예정임
- 따라서 제3기까지의 품질진단을 평가하고 제도운영의 한계를 파악하며, 위에서 언급한 통계승인제도 개편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4기 품질진단을 준비하는 품질관리제도 개편 필요성이 있음

## 2. 우리나라 통계품질관리 제도

### 가. 도입

- 국가통계 품질관리제도는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 수준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됨.
-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함
- 2002년~2005년은 시범기로서 시범품질관리를 실시함. 품질진단 절차 및 지표를 개발하고 통계청 내, 외부 통계에 대한 시범진단을 실시함

### 나. 제1기 품질진단 (2006년~2010년)

#### (1) 현황

- 제1기의 국가통계 품질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정기품질진단 : 국가통계 전반에 대해 5년 주기 진단 실시
  - 수시품질진단 : 품질문제가 제기된 통계를 대상으로 진단
  - 자체품질진단 : 통계작성기관이 소관통계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
  - 개선실태 점검 및 지원 : 통계청이 매년 개선실태 점검
- 이 기간의 품질진단은 통계청/외부진단팀이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팀이 도출한 과제의 개선을 권고하고,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개선을 하며 통계청은 개선실태를 점검함
-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전반에 대해 5년 주기로 진단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제도를 시행 (통계법 제9조)
- 2006년~2010년간 총 585종에 대하여 정기품질진단 실시하고 2,376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함

〈표 3-1〉 품질진단 현황(2006~201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대상통계	107	180	170	58	70	585
개선과제수	430	649	608	286	403	2,376

자료: 통계청(2010)

- 정기품질진단 외에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소관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행함으로써 통계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품질진단을 도입하고 2008년에 692종의 통계에 대하여 자체진단을 실시함
- 또한 2010년에 국가통계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가 있는 통계에 대한 수시통계품질진단 제도를 도입함

(2) 품질진단 성과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 수준 개선 및 인식을 높임
- 5년간의 국가통계 전반의 품질진단을 통해 통계선진화 기틀 마련

다. 제2기 품질진단 (2011년~2014년)

(1) 품질진단 현황

- 제2기(2011년~2014년)에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품질진단 및 개선관리
  - 정기품질진단 : 주요 통계 130여 종을 선정하여 4년간 매년 25종씩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심층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 자체품질진단 : 국가통계 전반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소관 통계를 대상으로 매년 자체적으로 진단
  - 수시품질진단 : 언론보도 등의 상시모니터링 및 상황발생시 기획모니터링으로 품질취약 통계의 발굴 및 진단
  - 개선점검, 지원 : 품질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실태를 관

리하고, 인프라 취약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개선지원 컨설팅

(2) 성과

- 국가통계 품질향상 및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품질에 대한 인식제고
- 통계품질 진단 및 관리기법 노하우 축적
- 자체품질진단 제도 정착을 통한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적 품질관리체계 정립
- 인프라 취약 통계작성기관의 품질개선에 기여

라. 제3기 품질진단 (2015년~2019년)

(1) 품질진단 현황

- 연구용역 형태로 이루어진 품질관리방법을,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심층진단을 하는 방법으로 품질진단 방법을 변경
- 통계정보보고서는 조사개요부터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자료수집, 행정자료 활용,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까지 통계작성의 각 단계별로 방법론 및 세부 품질정보를 수록함
- 제3기 품질진단 사업의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전체 주요 통계에 대한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임. 500종을 매년 약 100종씩 진단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2) 품질진단 사업 진행과정

- 품질진단 전문기관이 통계 주제에 적합한 진단 연구진을 섭외하여 진단팀을 구성함. 주제별 연구진을 섭외하기 때문에 표본분야 진단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전문기관에서 지원하여 보완함
- 진단 연구진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통계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 도출한 품질진단 개선사항을 작성기관과 간담회 형식으로 검토하고, 개선 과제 수용여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논의함.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관리함
- 진단 연구진의 개별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이후, 독립적인 외부 평가진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 이는 진단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절차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임

### (3) 제3기 품질진단의 장단점

- 장점
  - 제3기는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있음
  - 해마다 발생하는 작은 문제는 즉시 보완 가능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전문기관이 품질진단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음
  - 제3기 진단이 마무리 되면 대부분의 중요 통계에 대한 통계정보보고서가 작성되므로 기본적인 품질진단 체계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진단은 기존에 작성된 통계정보보고서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단점
  - 진단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별통계를 표준화하여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개별 통계의 특성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혹은 추가로 필요한 평가지표도 존재하지만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진단 연구진이 정성평가를 하지만 연구진의 재량권에 따라 개별통계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3기 품질진단을 통하여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후 진단은 통계정보보고서의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진단은 기존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통계작성 담당자의 통계정보보고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현실과 보고서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음



마. 통계품질진단사업 실적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계품질진단사업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그리고 통계품질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짐
- 사업실적은 아래 <표 3-2>와 같음

<표 3-2> 통계품질진단 및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종)

진단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기 진단	107	180	170	58	70	21	24	26	25	80	63	79	96
수시 진단	-	-	-	-	3	2	2	-	-	-	-	1	3
자체 진단	-	-	660	720	419	473	487	528	525	489	494	530	574
품질 컨설팅	-	-	-	-	-	-	7	6	6	6	6	3	3

자료: 통계청(2018), 국가통계 품질관리 추진실적

### 3. 통계품질진단 방법

가. 통계와 통계작성기관

- 통계품질진단의 대상은 통계법에 명시된 ‘통계’임
  - 통계법 상의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함
  - 이 중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통계에서 제외됨(통계법 제3

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는 다음을 말함 (통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 그 밖에 통계청장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여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임(통계법 제18조 제1항)
-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함(통계법 제3조 제3항)
  - 통계작성지정기관에는 금융기관, 공사, 공단, 연구기관,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됨
- 요약하면, 현행 통계법상 통계품질진단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는 주요 통계 중 국가승인통계임
- 그리고 이러한 승인통계에 대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

나. 통계품질 차원

- 현대적 의미의 통계품질은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특성’을 뜻하고, 통계품질관리는 ‘통계이용자들에게 통계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보급·관

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를 말한다(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2018)

- 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의 수준을 6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련성 :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함
  - 정확성 : '모집단 특성을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함
  - 시의성/정시성 :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임
  -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
  - 비교성 :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 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 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냄
  - 일관성 : '동일한 경제·사회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냄
  - 접근성/명확성 :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이고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함

#### 다. 작성형태별 통계

- 품질진단의 대상이 되는 통계는 조사방법과 작성과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할 수 있음(김민경 외, 2004)
- 조사통계는 '대상모집단의 단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통계'임
- 보고통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고, 신고, 등록,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통해 제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임
- 가공통계는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된 통계를 이차적으로 가공하여 작성되는 통계'임

## 라. 품질진단 종류

- 품질진단의 종류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과 자체통계품질진단이 있음
  - (정기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에 대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한 사항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함(통계법 제9조 제1항)
  -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 다만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통계법 제11조 제2항)
  -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통계법 제10조 제1항)
- 따라서 현행 통계법에 의하여 주요 통계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통계에 관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며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저하가 일어난 통계에 대해서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함. 진단‘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10개의 작성절차별로 6개 품질차원별로 품질지표를 구성하여 품질수준을 측정함
- 통계작성절차의 10단계는 다음으로 구성됨: (1) 조사개요 (2) 통계의 작성 목적 및 이용 (3) 조사설계 (4) 자료수집 (5) 행정자료활용 (6) 자료처리 (7) 통계추정 및 분석 (8)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9) 통계기반 및 개선 (10) 참고문헌
- 통계별로 품질지표와 진단항목의 수는 아래와 같음
  - 조사통계는 44개 품질지표에서 240개 진단항목이 있음

- 보고통계는 28개 품질지표에서 145개 진단항목이 있음
- 가공통계는 30개 품질지표에서 176개 진단항목이 있음
- 자체통계품질진단은 진단매뉴얼에 따라 작성기관 스스로 평가하며 자체진단 평가점수와 노력도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함.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은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용으로 제공됨

#### 4. 국가승인통계 현황

- 2018. 4. 30 기준 국가승인통계는 총 1,088종이며 승인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은 419개 기관임
  - 419개 기관 중 306개 기관이 정부기관이고 113개 기관이 지정기관임.
  - 작성기관당 평균 작성통계는 정부기관 2.9개(중앙행정기관 8.4개, 지방자치단체 2.0개), 지정기관 1.7개임
- 통계종류별로는 지정통계가 93종이고 일반통계가 995종임

〈표 3-3〉 기관구분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2018. 4. 30. 기준)

기관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419	1,088	93	995	477	476	135
○ 정부기관	306	898	76	822	371	417	110
- 중앙행정기관	46	385	59	326	188	154	43
· 통계청	1	61	38	23	37	2	22
· 이 외 기관	45	324	21	303	151	152	21
- 지방자치단체	260	513	17	496	183	263	67
·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17	139	17	122	48	37	54
· 시도교육감	17	-	-	-	-	-	-
· 기초지자체 <sup>1)</sup>	226	374	-	374	135	226	13
○ 지정기관	113	190	17	173	106	59	25
- 금융기관	8	23	10	13	10	5	8
- 공사·공단	32	56	0	56	22	32	2
- 연구기관	25	44	2	42	32	4	8
- 협회·조합	27	31	3	28	24	5	2
- 기타기관	21	36	2	34	18	13	5

자료: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현황 월중 변동내역(2018년 4월말 기준, 접속일자: 2018. 5.7)

주: 1) 5개 지방통계청에서 관리

-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가 477종(43.8%), 보고통계가 476종(43.8%), 그리고 가공통계가 135종(12.4%)임
- 승인통계 분야로는 사회분야 통계 419종(38.5%), 경제 분야가 425종(39.1%), 기타 통계가 244종(22.4%)임. 기타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시군구별 기본통계임

<표 3-4> 분야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2018. 4. 30. 기준)

분야구분	작성 통계수	구성비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계	1,088	100%	93	995	477	476	135	
사회분야	인구	50	4.6%	4	46	2	25	23
	보건·사회·복지	270	24.8%	6	264	178	66	26
	교육·문화·과학	61	5.6%	3	58	42	15	4
	환경	38	3.5%	4	34	13	22	3
경제분야	고용·임금	53	4.9%	9	44	40	9	4
	물가·가계소비	19	1.7%	9	10	15	1	3
	농림·수산	61	5.6%	9	52	40	17	4
	광공업·에너지	32	2.9%	4	28	22	8	2
	건설·주택·토지	44	4.0%	4	40	18	21	5
	교통·정보통신	46	4.2%	5	41	23	21	2
	도소매·서비스	19	1.7%	4	15	15	3	1
	경기·기업경영	91	8.4%	22	69	62	3	26
	국민계정·지역계정	22	2.0%	5	17	0	0	22
	재정·금융	21	1.9%	1	20	5	16	0
	무역·외환·국제수지	17	1.6%	4	13	1	6	10
기타	244	22.4%	0	244	1	243	0	

주: 기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별 기본통계

## 5. 주요국의 품질관리제도

- 통계품질의 관리는 모든 선진국들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로서 이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통계기관이 다른 통계작성기관 작성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하는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작성기관들이 스스로 통계품질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가. 미국

- 미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정부 소속의 128개 기관(2017 회계 연도 기준)이 국가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통계 생산을 주 임무로 하는 13개 주요 통계작성기관과 70여 개의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함
- 연방정부에서 정보품질법(DQA: Data Quality Act, IQA: Information Quality Act)을 제정하고,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발행함. 예산관리처가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관 준수 의무성이 강하나, 가이드는 데이터 품질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음<sup>9)</sup>
- 예산관리처는 통계산출물 생산에 모든 기관이 동일한 분류와 정의 그리고 적절한 방법론을 이용하도록 표준과 지침 및 통계 명령(statistical directive)을 발표하는 등 연방통계시스템의 조정을 담당하고,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라 기관이 수집하는 모든 정보를 중앙집중 방식으로 검토함으로써 표준의 집행을 담당함
- 예산관리처에서 「미국 통계방법론에 관한 연방위원회(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FCSM)」를 설치하여 연방정부의 통계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조정 및 품질 제고를 담당함<sup>10)</sup>

9)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2015

10) 정용찬 외(2016). ICT 통계조사 품질진단.

- 또한 통계 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따라야만 하는 필수사항을 통계 정책 지시(Statistical Policy Directive)로 작성
- 통계작성기관 및 부서마다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며, 자체적으로 통계작성가이드를 작성하여 개별 품질관리를 실시함.
- 기관들은 예산관리처의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의 객관성(Objectivity), 편의성(Utility), 신뢰성(Integrity)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표 3-5> 미국의 기관별 통계품질 관리체계의 예

기관	통계품질 관리체계
센서스국 (Census of Bureau)	조사 전반에 걸친 계획과 집행, 사전 위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네트워크 확립, 체크리스트 작성 등 다양한 방법 적용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노동부 정보 품질지침 및 행정관리예산국 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통계품질보고서를 작성
국립보건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	행정관리예산국, 보건사회복지부, 질병대책센터의 통계 품질지침을 준수하여 통계품질가이드라인 작성

자료: 정용찬 외(2016), ICT 통계조사 품질진단

[그림 3-1] 미국의 통계품질 관리체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나. 영국

-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 및 부서의 책임 아래 개별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통계의 제공은 통계생산 기관의 연합체인 정부통계협의회(GSS)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계작성의 미션도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형 통계제도의 특성을 가짐
- 2007년 통계법에 의해 국가통계위원회는 정부통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를 공식통계로, 이중 공식통계의 실천규범에 입각한 것을 국가통계로 정의함.
  - 국가통계청(ONS)을 포함한 중앙정부부처 및 기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입위행정기관, 기타행정기관 및 행정명령에서 허락한 비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모두 공식통계에 포함
  - 공식통계는 기존에 작성중인 통계나 신규통계에 대해 신청에 의해 승인되며, 승인요구는 150여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왕실기관이 가능하나 민간기관의 신청도 허용
  - 국가통계위원회가 작성한 공식통계 실천규범의 적용과 정밀조사 및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공식통계를 국가통계로 정의
- 영국통계위원회는 2007년 통계법의 요구에 따라 영국의 공식통계를 생산하는 모든 조직이 준수해야할 실천규범(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을 마련하여 2009년 1월에 발표함. 공식통계의 실천규범은 분산형 통계체제에서 공통된 표준을 확립하고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임.
- 8가지 원칙(principles)과 3가지 규약(protocols)으로 구성된 실천규범을 준수하는 공식통계는 국가통계로 인정
  - 원칙1) 사용자 요구 충족: 공식통계의 생산, 관리 및 보급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연구자 및 국민의 의사결정을 충족
  - 원칙2) 공정성과 객관성: 공식통계 및 통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공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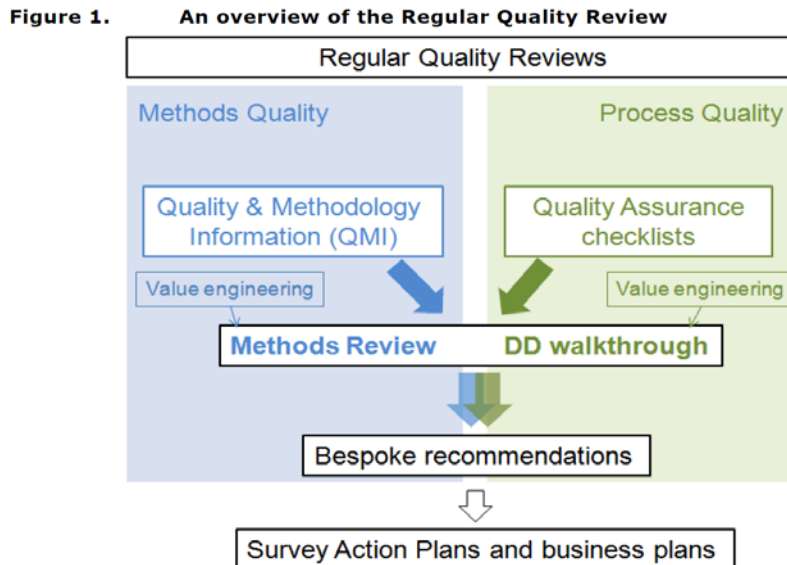
고 객관적으로 관리

- 원칙3) 무결성: 공식 통계의 생산, 관리 및 보급의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이익은 조직적,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익에 우선
  - 원칙4) 건전한 방법과 확실한 품질: 통계 방법은 과학적 원리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 사례와 일치해야하며 완전히 문서화되어야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행을 고려하여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보증
  - 원칙5) 기밀 유지: 공식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단체 포함)에 관한 개인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 원칙6) 비례적 부담: 데이터 공급업체의 비용부담은 과도하지 않아야하며 통계 사용으로 인한 이점과 비교하여 평가
  - 원칙7) 자원: 통계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자원은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에 충분해야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
  - 원칙8) 솔직함과 접근 가능성: 완전하고 솔직한 논평이 수반되는 공식통계는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 가능할 필요
  - 규약1) 사용자 참여: 효과적인 사용자 참여는 통계를 신뢰하고 대중의 최대 가치를 보장하는 근본이며, 이 세칙은 윤리규범에 대한 타 규정 관련 관행을 종합하고 협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확대
  - 규약2) 발표 실천: 통계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규칙적인 방식으로 공개도메인에 공개
  - 규약3) 통계 목적으로 행정자원의 사용: 행정자원은 적절한 안전장치의 준수를 조건으로 완전히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
- 영국의 공식 국가통계는 영국 국가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2015년 「정기품질평가(Regular Quality Review, RQR)」를 개발하여 통계품질관리를 수행함
  - 이전까지는 국가통계위원회와 Eurostat의 지침 아래 개발한 「품질, 방법,

조화 도구(Quality, Method, and Harmonisation Tool, QMHT)」를 사용해 왔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용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음 (Sanderson & Bremner, 2015)

- 새로 개발된 정기품질평가는 통계생산자와 부서 책임자, 선임 방법론 전문가, 품질센터의 대표자 간의 회의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품질보증절차를 위해 부서 책임자 검토회의라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 정기품질평가를 통해 통계적 결과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조사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반영함
- 2015년 RQR 발표 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특히 RQR은 조사영역과 비조사영역을 아우르므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림 3-2] 영국의 정기품질평가 개요



자료: Sanderson & Bremner(2015)

## 제2절 품질진단체도 평가

### 1. 정기통계품질진단

#### 가. 진단방법

- 제1기 품질진단에서는 통계청/외부진단팀이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팀이 도출한 과제의 개선을 권고하고,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개선을 하며 통계청은 개선실태를 점검함
- 제2기 품질진단에서는 주요 통계 130여 종을 선정하여 5년간 균분(매년 25종 내외)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심층진단(일부 청내 TF팀 진단)
  - 용역팀에서 통계청의 진단매뉴얼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전문가, 이용자 등을 면접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
- 제3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통계별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기관이 품질진단한 후 통계청이 최종 확정
  - 통계정보보고서 : 통계청의 품질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에 따라, 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제반 상세보고서를 수록한 보고서
  - 전체 승인통계 500여종(시군구 기본통계, 주민등록통계 등 제외)에 대하여 매년 100여종씩 5년 주기 진단

#### 나. 품질진단 점수

- 제1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의 평균은 78.9점, 제2기는 83.0점으로 나타남.
  - 두 기수에서 진단한 통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점수를 보고 제2기 제2기의 통계품질이 제1기 통계품질보다 우수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 그러나 처음으로 진단을 실시한 제1기를 통하여 많은 통계들이 자체 정비를 하고, 보완하여 제2기의 진단을 준비했으며 또한 제1기와 제2기의 진단방식이 거의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제2기 점수가 제1기 점수보다 높은 것은 통계품질진단의 효과로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3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의 평균은 90.6점으로 제1기, 제2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대상통계가 다르고, 품질진단서가 다르며, 진단자가 다르므로 제3기의 품질진단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제3기에 통계의 품질개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제3기에 통계 간의 편차가 작고, 품질진단 점수 최소값이 제1기, 제2기의 것에 비하여 큰 것으로 보아 품질이 낮은 통계는 좀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6>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구분	통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1기	494	78.9	11.6	100.0	42.0
2기	96	83.0	11.1	97.8	42.0
3기	222	90.6	8.4	100.0	60.1

#### 다. 작성방법별 품질진단 점수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는 작성방법이 다르고, 진단서도 다르므로 세 종류의 진단점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세 기수에서 진단점수 평균이 가공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순으로 나온 공통점이 있음
- 기수 비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기와 제2기는 진단방식이 유사하므로 두 기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가공통계, 보고통계, 조사통계의 제1기 점수와 제2기 점수를 비교해 보면 세 종류의 평균이 모두 상승함. 즉 제1기를 거치면서 제2기에 품질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음
- 제3기의 품질진단 점수가 제1기, 제2기보다 높게 나왔지만 진단서가 다르므로 제3기에 품질향상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제3기의 최소값이 제1기, 제2기보다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것으로 미루어 품질이 낮은 통계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7> 작성방법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작성방법		통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제1기	가공통계	52	85.9	10.6	100.0	60.0
	보고통계	188	74.2	11.6	100.0	42.0
	조사통계	254	80.9	10.5	100.0	46.0
제2기	가공통계	7	90.2	7.9	97.8	73.9
	보고통계	27	79.8	11.5	97.6	42.0
	조사통계	62	83.6	10.7	97.3	43.9
제3기	가공통계	18	97.6	2.4	100.0	92.2
	보고통계	61	86.1	9.3	99.9	64.1
	조사통계	143	91.7	7.4	100.0	60.1

라. 품질차원별 진단점수

- 관련성 :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 가공통계는 기존의 통계를 이용자의 목적에 맞추어 만들어진 통계이므로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됨
  - 보고통계의 관련성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보고통계의 속성상 이용자의 수요보다는 국가의 기초통계 위주로 만들어진 통계이므로 관련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됨
- 정확성 :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 가공통계는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므로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확성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임
- 시의성 : 제3기에 조사통계의 시의성/정시성이 낮게 나옴
- 비교성 :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 일관성 :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옴
- 접근성/명확성: 가공통계가 가장 높게 나오며,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순임

<표 3-8> 품질차원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

작성방법	통계수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1기	가공통계	52	4.1	4.3	4.0	4.5	4.2	4.3
	보고통계	188	3.6	3.7	3.8	3.2	3.8	3.8
	조사통계	254	4.1	4.1	3.9	3.5	3.7	4.1
2기	가공통계	7	4.6	4.5	4.0	4.5	4.1	4.6
	보고통계	27	3.8	4.0	3.6	4.1	3.9	3.7
	조사통계	62	4.2	4.1	4.0	4.4	4.0	4.0
3기	가공통계	18	4.9	4.8	4.8	4.9	5.0	4.6
	보고통계	61	4.4	4.0	4.5	4.4	4.1	3.8
	조사통계	143	4.6	4.5	4.3	4.4	4.4	3.8

마.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정기통계품질진단과 수시통계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는 2,181과제임
  -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2,134과제, 수시통계품질진단에서 47과제
- 이 중 79.3%인 1,730과제가 개선이 완료됨

<표 3-9> 분류별 개선과제수 및 이행률

분류	빈도수	이행과제수	이행률
1. 통계작성기획	212	186	87.7%
2. 통계설계	605	468	77.4%
3. 자료수집	225	163	72.4%
4. 자료입력 및 처리	252	213	84.5%
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66	59	89.4%
6. 문서화 및 자료제공	784	608	77.6%
7. 사후관리	17	17	100%
8. 기타	20	16	80.0%
합계	2,181	1,730	79.3%

- 개선과제 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개선과제의 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문서화 및 자료제공'임
  - 이행률이 가장 낮은 분류는 자료수집임

#### 바. 성과

- 정기통계품질진단 제1기에서는 승인통계 중에서 주요 통계를 처음으로 정밀하게 진단한 의의가 있고, 제2기에는 주요 통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한 의의가 있음. 제3기에는 진단방법을 개편하여 통계정보보고서를 기초로 한 진단을 실시함
- 매년 개선과제와 중점관리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품질진단통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있음

## 2. 자체통계품질진단

### 가. 진단방법

- 자체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소관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행함으로써 통계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실시함.
- 국가승인통계 전체(지자체 기본통계 등 일부를 제외한 500여종)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진단
- 매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소관통계의 주요 품질변수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진단

### 나. 자체통계품질진단 점수

- 자체진단은 2008년부터 실시하였으나 평가제가 도입되어 평가등급이 공개된 것은 2013년부터이므로 2013년 이후 통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는 연평균 513개임 이 중 5개년 모두 진단을 받은 통계의 수는 233종임



-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진단의 관대화 경향을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통계작성담당자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평가결과가 해당연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만일 자체진단점수의 관대화 경향이 있다면 진단의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도리어 **2014년의 점수(83.3점)**는 **2013년(83.2점)**보다 작고, **2015년 점수(83.0점)**는 **2014년 점수**보다 작게 나타남. 즉,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관대화 경향은 발견되지 않음 (<표 3-10> 참조)
- 또한 5개년 연속으로 진단을 받은 **233개** 통계의 연도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41~0.56** 사이에 있음. 즉, 전년도 평가결과가 해당년도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0> 자체통계품질진단 점수

기수	구분	통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2기	2013년	528	83.3	11.0	106.8	48.0
	2014년	525	83.2	12.0	105.0	36.0
3기	2015년	489	83.0	12.2	105.5	38.4
	2016년	494	85.6	11.5	107.5	50.9
	2017년	530	85.6	11.9	109.4	43.5

#### 다. 정기통계품질진단 점수와 자체통계품질진단 점수의 관계

- 정기진단을 받은 통계는 그해에 자체진단을 받지 않으므로 동일한 통계의 정기진단 결과와 자체진단 결과를 한해에 비교할 수는 없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연속으로 자체진단을 받은 통계의 수는 **233** 개이고 이 중 제2기 정기진단을 받은 통계는 **34개**임. 즉, **34개** 통계는 제2기 정기진단도 받고 **2013년~2017년** 자체진단을 받은 통계임
- **34개** 통계에 대하여 제2기 정기진단 점수와 5개년 자체진단 점수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0.18~0.54** 사이임

- 즉, 정기진단은 외부 연구진이 평가한 점수이고, 자체진단은 작성기관 스스로가 평가한 점수이지만 두 점수간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함

#### 라. 성과

- 승인통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품질관리를 해마다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 유지에 기여한 성과가 있음

#### 마. 한계점

- 자체품질진단에서는 개선과제 도출 미비 현상이 나타남. 이는 소관 통계의 자체진단에 형식화,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3. 수시통계품질진단

#### 가. 진단 방법

- 수시통계품질진단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 실시함
- 제1기에서는 품질문제가 제기된 통계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제2기에서는 언론보도 등의 상시모니터링 및 상황발생시 기획모니터링으로 품질취약 통계의 발굴 및 진단을 위해 실시하였음
- 실제로 수시통계품질진단이 실시된 통계의 수는 2009년에 3종, 2010년에 2종, 2012년에 2종, 2017년에 1종임

#### 나. 성과

- 상시모니터링과 기획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 수시진단을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함
  - 2010년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에서는 국토면적에 북한면적 및 미북구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수치가 혼란스러웠는데 국토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바로잡음

- 2010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혼용, 조사표 및 번역 오류 등이 제기되어 바로잡음

#### 다. 의의 및 한계점

-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연초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계획 이후에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통계를 정기통계품질진단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렇다고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진단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수시로 정밀한 진단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통계는 현행과 같이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됨
- 다만, 상시모니터링이나 기획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통계의 수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사전 모니터링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제3절 품질관리제도 개선 방안

#### 1. 승인제도 개선에 따른 품질관리제도 개편

- 현행 통계품질진단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의 범위나 혹은 국가승인통계의 개념, 범위 등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를 변경해야 함
-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i)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 (ii) 시범통계제도 도입
  - (iii)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 (iv) 통계관리체계 개선
  - (v) 통계 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는 승인제도 하에서 구축됨. 따라서 승인제도 개선안을 품질관리 관점에서 파악하여 승인제도 개선안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 통계의 구분과 명칭 변경

##### (1) 현행

-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여 공표하는 수량적 정보를 ‘통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가통계’로 지칭하고 있음
  -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한 수량적 정보 중 통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내부 활용 자료, 시험 작성 자료, 학술 연구 자료, 보고/집계 자료, 인식 조사 자료 등
  - 비수량적 정보, 미지정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

기관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 중 정부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은 정의상 통계가 아님

- 통계법상의 통계 중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는 지정통계로 하고 있음

(i)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ii)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iii)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iv)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v)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2) 승인제도 개선안

- 개선안에는 명명법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명사보다는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명칭을 제안.

- 통계법의 규율 대상을 공공통계와 국가(승인)통계로 구분

(i)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 :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와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통계를 지칭. 공공통계의 명칭이 주는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주요 통계만을 대상으로 함

(ii) 국가(승인)통계(**national statistics**) :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한 통계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로 현재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즉 국가통계)에 해당

(iii) 기간통계 :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통계작성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라는 명칭은 '기간통계'로 변경

### (3) 품질관리 개선안

- 승인제도 개선안에서 통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범위를 공공통계, 국가(승인)통계로 확대함
  - 현재 통계법의 통계, 즉 국가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명칭 변경하여 품질관리 범위에 포함
  - 국가통계 중 지정통계는 기간통계로 명칭 변경하여 품질관리 범위에 포함
  -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는 공공통계로 지정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주요 통계만을 공공통계로 지정하여 품질관리 범위에 포함

### (4) 쟁점

- 품질관리 대상 통계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 증가
- 통계의 종류가 기간통계, 국가(승인)통계, 공공통계로 나뉘는 데 따라 균등한 품질관리보다는 차등화한 품질관리 필요

### (5) 해결방안

-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승인통계와 공공통계의 품질관리를 이원화 함
  - (i) 기간통계를 포함하여 국가(승인)통계는 현행과 같이 통계청이 중점 관리하는 품질진단 실시
  - (ii) 기간통계,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는 기관별 책임관리제도, 통계현황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 통계작성기관(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통계현황을 통계청에 신고하고 자율적으로 진단(자체진단) 실시
    - 통계청은 통계현황신고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

## 나. 시범통계제도 도입

### (1) 현행

-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여 공표하는 수량적 정보를 ‘통계’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함
  - ‘조사통계’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함.
    - \* 표본추출방법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로 구분
    - \*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배포, 집합조사, 인터넷 조사, 관측조사, 기타로 구분
  - ‘보고통계’는 다른 행정업무를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함. 수반되는 행정업무로는 행정집계와 행정조사로 구분
    - \* 행정집계 :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가공통계’는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함.
-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는 위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에 일치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는 기존의 통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승인을 위해 명시해야 하는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분류에 포함되지 않음.
  - (빅데이터) 정보의 자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는 시대

및 산업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음. 예를 들면 빅데이터는 협의적으로는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광의적으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정의됨(이성건 외, 2017)

- (공공데이터) 정보의 자원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함.

- 이러한 통계를 공공통계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보완책 필요

## (2) 승인통계 개선안

- 승인과정에서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승인통계의 지위를 부여할 때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통계 등 추후 관찰기간이 필요한 통계는 시범통계(pilot statistics)로 승인하고 작성 이후 품질진단을 거쳐 국가(승인)통계의 지위를 부여
- 시범통계는 궁극적으로 국가통계로 승인을 지향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통계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공표 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상의 유의점,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 개선 이행계획이 첨부되어야 함

## (3) 품질관리 개선안

- 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시범통계의 범주에 넣어 품질관리
-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통계는 데이터품질 개념이나



통계생산방식이 기존의 방법론과 다르므로 통계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시하게 하고, 공표 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상의 유의점,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개선 이행계획을 첨부하게 함.

-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 (4) 생점

-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시범통계의 범주에 포함하여 품질관리 대상으로 하면 기존의 품질관리 방법론으로는 품질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음
  - 빅데이터 통계 등은 통계작성절차가 기존의 통계와 일치하지 않음 (김영원 외, 2016)
  - 빅데이터 통계 등은 품질관리 지표가 기존의 품질지표와 일치하지 않음 (이성건 등, 2017)

#### (5) 해결방안

- 빅데이터 통계생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음의 결과가 도출됨 (김영원 외 2016; 이성건 외 2017)
-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과정은 입력단계, 처리단계, 결과단계로 구분함
  - 입력단계: 각 기관 또는 민간에서 자료를 불러오는 단계
  - 처리단계 :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 및 처리하여 실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처리단계. 데이터 정제, 매칭, 연결 등 처리
  - 출력단계 : 정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혹은 결과표를 생산하거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단계
- 빅데이터 품질검증 체계에 요구되는 3가지 기본원리 : 사용목적 적합성, 일반성과 유연성, 비용대비 효율성

- 사용목적 적합성 : 기존의 통계 검증 체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검증체계의 사용목적 적합성과 더불어 실제 빅데이터 및 이를 활용해 생산된 데이터의 품질평가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 일반성과 유연성 : 빅데이터는 형식과 분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통계 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일반성을 갖춘 검증체계가 필요함
  - 비용대비 효율성 : 빅데이터 및 이를 활용한 통계의 품질 검증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절차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결과의 사용 목적과 요구되는 통계적 정도와 균형을 맞춘 검증체계가 필요
- 3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실제 빅데이터 혹은 이를 통해 생산된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품질 차원은 다음과 같음
- 기관 및 사업체 환경
  - 개인정보 관련 보안
  - 복잡성 : 자료구조의 복잡성, 자료형식의 복잡성, 자료출처의 복잡성, 계층구조의 복잡성 등
  - 완전성 :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의 완전성
  - 유연성 : 입력단계로부터 결과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및 유용성이 대한 사전검증 필요
  - 시간적인 요소
  - 정확성, 대표성, 일관성, 타당성, 접근성 및 명확성, 관련성 등
- 빅데이터는 생산기관, 생산목적, 생산대상, 생산과정 등이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대신 빅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은 해당 데이터에 적절한 품질진단 도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성건 외, 2017)

- 소셜경기지수 통계, 삶의 질 측정 통계 사례 제시
- 시범통계의 범주에 속하는 통계는 이를 범주화하여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 SNS를 활용한 통계
  - 모바일 이동통신 위치정보를 활용한 통계 등
- 시범통계가 제출한 통계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 어떤 차이점, 공표 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상의 유의점, 품질개선 이행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관찰 필요
  - 유형별로 통계작성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 필요
  - 유형별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품질지표 개발 필요
  - 필요시 수시품질진단 실시

#### 다.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 (1) 현행

- 현행 통계작성기관으로 정부기관으로 통계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지정기관으로 금융기관, 공사, 공단, 연구기관, 협회, 조합 등이 있음
-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국회, 법원 등)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협회, 조합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 공표하는 사례가 있음

##### (2) 승인통계 개선안

- 국가가 관리할 공공통계 생산기관을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으로 확대
- 민간기관은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한해 통계작성기관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통계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기관수를 감안하여 주요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의 통계생산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실효성 있는 기관을 매년 지정, 추가

### (3) 품질관리 개선안

- 현행 통계작성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이외에 입법,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요 민간기관을 품질관리 대상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
- 품질관리 대상은 국가승인통계(기간통계 포함), 공공통계, 시범통계이므로 통계작성기관을 구분하여 관리
  - (i)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
  - (ii) 기관 스스로의 진단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공공통계 생산 통계작성기관
  - (iii) 그리고 시범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

### (4) 쟁점

- 통계작성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면 관리해야 할 통계작성기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

### (5) 해결방안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통계생산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관을 매년 지정, 추가하여 관리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 위주로 관리하고 공공통계 및 시범통계는 통계 위주로 관리
  - 기간통계를 포함한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이 중점 관리
  - 공공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통계현황신고 통계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 시범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도 통계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 라. 통계관리체계 개선

### (1) 현행

- 현행 통계법은 통계법의 적용 대상인 통계의 작성 주체를 설정하고 작성 주체가 작성하는 통계를 규율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임
- 이러한 제도는 승인통계 지정기관에 대해 통계품질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할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는 승인통계의 대상이 되어 통계청의 관리 부담이 발생

### (2) 승인통계 개선안

- 통계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 책임관리제도와 통계현황신고제도를 도입
- 기관별 책임관리제도 도입:
  - (i) 국가승인통계 :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중요도가 높은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이 중점 관리
  - (ii) 공공통계 :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공공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자율 관리하되 통계현황신고 제도를 통하여 통계청에 보고. 통계청은 통계 현황신고 통계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통계 관리
- 통계현황신고 제도 도입 : 부처가 생산, 발표하는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 등 모든 공공통계 현황을 작성, 자체 관리하고 통계청에 현황과 변경사항을 수시 신고

### (3) 품질관리 개선안

- 통계청이 중점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는 현재와 같이 5년 주기의 정기품질진단 시행

-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는 1/5로 균분하여 매년 1/5씩 정기품질진단
-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가 아닌 통계는 매년 자체진단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수시품질진단 실시
- 지원이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컨설팅 지원
- 부처가 관리하는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품질진단 시행
  - 자율적 진단(부처 자체진단) 통계의 품질관리의 1차적 책임은 해당부처가 담당
  - 부처 유관기관(국책연구소, 진흥원 등)을 지정하여 품질진단 업무 전문화
  - 자율적 진단에 필요한 품질진단 가이드라인 등은 통계청이 제공
  - 통계의 품질수준을 자율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품질제고 동기부여
- 통계현황신고 통계 중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는 통계청이 선별하여 수시품질진단 실시

#### (4) 쟁점

- 현재의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일원화된 품질진단이 국가승인통계의 정기품질진단과 통계현황신고 통계의 자율적 진단으로 이원화되어 관리의 복잡도가 더 높아짐

#### (5) 해결방안

-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관 중심으로 품질진단을 관리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통계 중심으로 품질진단을 관리
-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통계 중심으로 자율적 품질진단 관리
  -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개별 통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

- 통계품질진단 가이드라인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

## 마. 통계 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 (1) 현행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리고 통계청장은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통계법 18조)
-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통계의 통계작성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 ‘보고’, ‘가공’으로 분류되어 있음.
- 통계작성방식(조사, 보고, 가공)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통계는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 품질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승인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통계품질관리 등에서 비효율을 발생
  - 보고통계의 작성은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승인, 정기품질진단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 수행으로 승인 및 품질진단에 비효율 초래

### (2) 승인제도 개선안

- 통계작성 승인과 변경 승인 관리방식 차등화
  -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작고 단순집계형태로 작성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보고통계는 작성승인과 관리 방식 차등화 적용
  - 보고통계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 목적, 공표 주기, 공표 일정, 자료수집체계, 통계표 등을 약술한 절차로 개

선

(3) 품질관리 개선안

-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진단은 통계의 목적, 통계의 종류, 관리 목적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관리
- 조사통계, 가공통계는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많으므로 기존의 품질진단(정기품질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 실시
- 보고통계는 법정서식에 의한 단순집계 형태가 대부분이고 유사, 중복의 우려가 낮으므로 정기품질진단을 면제하고 자체, 수시품질진단으로 간소화하여 관리. 단,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정기품질진단 대상으로 관리

(4) 쟁점

- 현행 국가승인통계 중 보고통계는 기존의 품질진단(정기품질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에서 자체진단으로 품질진단이 간소화됨. 단 기간통계인 보고통계는 기존의 품질진단(정기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 유지

(5) 해결방안

- 국가승인통계의 보고통계를 기간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하여 일반 보고통계의 승인 절차 및 품질진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품질관리 효율화



## 2. 품질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관리 방안

### 가. 국가승인통계 관리 방안

- 2018년 4월 현재 국가통계는 419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한 1,088개 통계임(<표 3-3> 참조)
  - 제1기에는 585종의 승인통계를 정기품질진단
  - 제2기에는 96종의 승인통계를 정기품질진단
  - 제3기에는 318종의 승인통계를 정기품질진단(진행중)
- 현행 국가통계의 명칭 변경
  - 현행 국가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명칭 변경
  - 현행 지정통계는 기간통계로 명칭 변경
-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관리의 이원화
  - 통계작성기관이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는 통계작성기관 중심의 관리
  - 통계작성기관이 지정기관(공공기관 등)인 경우는 통계 중심의 관리
- 통계종류별 정기품질진단 방법
  - 조사통계, 가공통계는 기존의 품질진단(정기품질진단, 자체품질진단, 수시품질진단) 실시
  -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지정통계)는 기존의 품질진단(정기품질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 실시
  - 보고통계 중 기간통계가 아닌 통계는 자체품질진단으로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513종의 지자체 통계는 지방통계청 주관의 품질진단

### 나. 공공통계 관리 방안

- 국가기관(입법, 사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통계와 주요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중 공공성이 강한 통계 중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를 공공통계로 명명하고 관리

- 공공통계는 개별 통계 중심으로 관리
- 기관별 책임관리제도와 통계현황신고 제도를 통하여 공공통계 관리
  - 통계현황신고 통계는 부처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통계청에 신고
- 공공통계에 대한 부처 주관의 자체진단과 수시진단
  - 공공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은 통계청이 제공
  - 부처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진단 업무를 전문화
  -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품질진단 실시
  - 품질진단 결과는 공개하고 통계청에 신고
  - 공공통계 중 심층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선별하여 수시품질진단 실시

#### 다. 시범통계 관리 방안

- 웹크롤링 데이터나 위치정보, 신용카드 정보, 빅데이터 등 기존의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한 통계는 시범통계로 명명하고 통계관리 대상에 포함
- 시범통계 범주에 속하는 통계는 데이터 품질이나 통계생산 방식이 기존의 것과 다르므로 시범통계가 제출한 통계생산에 사용한 데이터와 생산 방법론, 통계 산출물이 기존의 통계와의 차이점, 공표시 통계의 제약조건, 해석상의 유의점, 품질개선 이행계획 등을 일정기간 동안 관찰
-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경우 생산과정을 입력단계, 처리단계, 결과단계로 구분하여 관찰
- 빅데이터 품질검증 체계에 요구되는 3가지 기본원리로서 사용목적 적합성, 일반성과 유연성, 비용대비 효율성을 검토
- 3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실

제 빅데이터 혹은 이를 통해 생산된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다음의 품질 차원을 고려

- 기관 및 사업체 환경, 개인정보 관련 보안, 복잡성, 완전성, 유연성, 시간적인 요소, 정확성, 대표성, 일관성, 타당성, 접근성 및 명확성, 관련성 등
- 시범통계는 생산기관, 생산목적, 생산대상, 생산과정 등이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대신 시범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은 시범통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 SNS를 활용한 통계
  - 모바일 이동통신 위치정보를 활용한 통계 등
  - 유형별로 통계작성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 필요
  - 유형별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품질지표 개발 필요
  - 필요시 수시품질진단 실시

#### 라.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진단

- 마이크로데이터는 무응답 처리, 데이터 에디팅 등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 오류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자료를 말하며, 통계집계표 작성 및 통계 분석에 기본이 되는 자료임.
- 결과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을 품질진단 절차에 포함
  - 통계작성절차 중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단계에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을 포함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다음 사항을 진단함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레이아웃(포맷) 설명
  - 마이크로데이터 항목(변수) 설명

- 마이크로데이터 항목별 수준 설명(범주형 변수인 경우)
- 마이크로데이터 가중치 제공 여부
- 마이크로데이터 무응답 처리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메타데이터 제공

## 제 4 장 통계기반정책평가



## 제1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의의

###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기초

#### 가. 근거 규정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현재 통계법 제12조의2, 통계법 시행령 제17조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3호 등에 근거함

#### 나. 제도의 연혁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2007년 6월 19일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된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에서 시작. 통계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2007년 10월 23일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31호) 제정. 정책의 집행 및 평가와 관련된 통계 발굴이나 개발/개선 등이 미흡해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어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통해 정책품질의 향상을 도모함(시행령 20331호 개정이유)
- 2012년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구속력을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가통계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통계법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룸

<표 4-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기초

<p>통계법</p> <p>[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3호, 2017. 8. 9, 일부개정]</p> <p>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통계법 시행령</p> <p>[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7호, 2018. 2. 20, 일부개정]</p> <p>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법제업무 운영규정</p> <p>[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p> <p>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p>
<p>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p> <p>[시행 2017. 5. 15] [총리령 제1395호, 2017. 5. 15, 일부개정]</p> <p>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 10. 4., 2017. 5. 15.&gt;</p> <p>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p> <p>[전문개정 2010. 10. 14.]</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검색일: 2018년 5월 30일)



**<표 4-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연혁**

<p>&lt;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2007.6.19.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li> <li>-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시 정책입안-점검-평가의 단계별 통계 설계 의무화</li> <li>·(대상)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도)을 도입하는 경우</li> <li>·(방법) 부처는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사전 수립, 통계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사항을 법령안에 첨부하여 차관(국무)회의 보고(11)</li> </ul>
<p>통계법 시행령</p> <p>[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전부개정]</p> <p>제33조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위하여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정책통계기반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 조직,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행형 등 정책통계기반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통계법 시행령</p> <p>[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전부개정]</p> <p>◇개정이유</p> <p>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li> <li>(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li> <li>(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li> </ol>
<p>통계법</p> <p>[시행 2013. 3. 19] [법률 제11553호, 2012. 12. 18, 일부개정]</p> <p>◇ 주요내용</p> <p>마. 통계기반정책평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p> <p>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통계기반을 확충함.</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검색일: 2018년 5월 30일)

##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내용

### 가. 의의

- 통계기반정책평가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계청장에게 요청(법)
- 조건 1: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는 제외(의원입법의 경우 하위법령 단계에서 평가하거나 하위법령 위임이 없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sup>12)</sup>)
- 조건 2: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과 제도 도입/변경 <--> 법령 제개정을 통하지 않은 경우 제외<sup>13)</sup>
- 조건 3: 정책집행과 평가 관련 통계 <--> 정책수립 관련 통계 제외
- 조건 4: 법상 예외 요건: 국가안보, 행정절차나 행정조직, 민/상/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 관련 사항
- 조건 5: 지침 상 예외 요건: 국호·국기·연호, 상훈,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사무 또는 업무분장, 수당, 감사, 통계, 문서 및 관인, 신분증, 복제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sup>14)</sup>

---

11) 통계청(2018a: 3)(통계청. (2018a). 2018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12) 통계청(2018a: 10)

13)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에서 2014년 지침에서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포함(통계청, 2014: 10)(통계청(2014). 2014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14) 통계청(2018a: 10)

## 나. 평가 종류

-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예비평가와 실질평가로 구분
- 예비평가는 실질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로서 해당 정책에 통계기반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평가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실질평가 대상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
- 실질평가는 해당 정책에 통계지표가 구비되어 있는지, 개발/개선계획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평가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

〈표 4-3〉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종류: 예비평가와 실질평가

	예비평가	실질평가
정의	법령상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 정책 포함되어 있는지 실질평가 필요성 평가	법령상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집행/평가 통계지표 구비 여부 및 개발/개선계획 타당성 평가
평가기준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 -법령상 모든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	-필요 통계지표의 구비 및 적합성 여부 <sup>15)</sup> -통계개발/개선계획 타당성 여부 <sup>16)</sup>
평가결과 유형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하위 법령 입안 시 평가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 대상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개발/개선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자료: 통계청(2018a: 11, 20, 23) 발췌 및 수정

15)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 모두 제시 여부, 제시된 지표만으로 정책 집행/평가가 충분한지, 제시된 지표 모두 구비 여부, 필요 통계지표 부적절시 대체 가능한 지표 존재 여부, 제시된 지표의 기존 통계조사 혹은 행정보고 통한 작성 가능 여부, 필요 지표가 행정보고로 작성되는 경우 작성 체계의 안정성 및 신뢰성 여부(통계청, 2018: 23)

16) 통계개발/개선계획으로 모든 필요 지표 작성 가능 여부, 계획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기존 통계와의 중복성, 타 기관이 계획해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 여부

#### 다. 평가 과정

-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예비평가, 실질평가, 평가결과 이행점검의 크게 3 단계 과정으로 구분되며, 예비평가에서 실질평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실질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3단계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예비평가와 실질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요청으로 시작되며 이에 대해 통계청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 중앙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 경우 통계청은 재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 이행점검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은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와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를 제출하고 통계청은 이를 검토

[그림 4-1]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



<표 4-4>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별 내용

구분		내용
1. 예비평가	1_1. 예비평가 요청	-통계책임관 경유해 문서로 요청 -필요시 생략하고 실질평가 요청 가능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안 및 설명자료, 정책 참고자료, 관련 통계 등
	1_2.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요청서 접수 익일부터 10일 -통계지표 활용권고는 입법예고 만료 시까지
	1_3. 이의제기 및 재평가	-이의제기: 평가결과 접수일부터 7일 -재평가: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7일 -미합의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정, 요청기관장의 의견 제출
2. 실질평가	2_1. 실질평가 요청	-관계기관 협의 통해 평가 요청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15일 -통계책임관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실질평가 요청서, 통계개발/개선 계획
	2_2.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평가 미완료시 법제처 심사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 -평가요청 지연 또는 입법예고기간 짧은 경우 요청서 접수일부터 15일 -특별한 사정(전문가 자문, 자료 보완, 통계청장 판단, 평가요청 누락/지연, 평가 요청기관과의 결과 합의 지연)의 경우 사유 종료일부터 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할 경우 사후평가 -평가 요청기관의 평가유예 요청시 평가유예
	2_3. 이의제기 및 재평가	-이의제기: 평가결과 접수일부터 7일 -재평가: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20일 -미합의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정, 요청기관장의 의견 제출
3. 평가결과 이행점검	3_1.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제출	-매년 2월 -계획, 실적 -개발/개선 완료 통계 결과물과 활용사례 통보 -개발/개선 관련 법령 및 계획 변경시 변경 내용 통보
	3_2. 통계지표 활용 현황 통보서 제출	-매년 10월 -전년 10월~9월 간 권고된 통계지표 및 전년도 이행상황 점검시 '입법진행' 건의 통계지표 -활용(성과지표 연계사용, 정책집행, 실태파악), 활용예정, 미활용 사유

자료: 통계청(2018a: 12-14, 24) 발췌 및 수정

## 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

### (1) 국무회의 법령안 상정 및 법제처 법령안 심사 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관련 법령안을 상정하는 경우 통계청장의 의견을 함께 제출해야 함(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요청시 예비/실질평가 결과 통보서 반드시 제출(지침)

### (2) 평가 결과 정책 반영 노력 의무 부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시행령)

### (3) 평가 결과 이행 상황 점검

-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시와 평가결과 반영여부 파악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함(법)

### (4) 전문가 활용과 필요 경비 지급

- 합리적, 객관적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 경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 (5) 요청기관은 국가승인통계 및 e-나라지표 선정 요청 가능

- 통계 개발/변경 내용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승인 요청(통계법 제18조)
- 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나라지표 선정 요청(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6) 요청기관은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활용 가능<sup>17)</sup>

- 평가 요청기관의 요청자료, 통계청의 평가결과 자료
- 법령연계, 정책연계, 통계지표연계, 개발/개선 등의 현황
- 평가 요청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ID 부여받아 읽기/조회 가능

---

17) 통계청(2018a: 16)

## 제2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증거기반정책 검토

### 1. 증거기반정책의 이론적 논의

#### 가. 증거기반정책의 의의

- 증거기반정책이란 “정책개발과 집행의 핵심에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정책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Davies, 1999<sup>18</sup>); 이삼열 외, 2009: 282 재인용)<sup>19</sup>)
- 증거기반정책은 고도의 정책성과, 정부영역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의 부활, 정책을 위해 확증된 평가방론의 개발 및 적용, 정책 신뢰성 높이는 제도적 장치 보급, 시민의 긍정적 의견형성 수단, 예산절감 및 정책창안의 기회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의 책임성 고양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윤광석, 2016: 48)<sup>20</sup>)

#### 나. 증거기반정책에서 증거의 유형과 질

##### (1) 증거의 유형

- Davies(2004)는 정책증거와 연구증거의 유형 제시
  - 정책증거에는 체계적 검토, 단일 연구, 파일럿 연구 및 사례 연구, 전문가 증거, 인터넷 증거 등을, 연구증거에는 영향 증거, 집행 증거, 기술적 분석 증거, 국민의 태도와 이해, 통계적 모델링, 경제 증거(비용편익 증거), 윤리 증거 등을 제시

---

18) Davies, 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presented at the 4<sup>th</sup>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 C.

19) 이삼열·정의룡·이은하(2009). 시범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4). 279-305.

20) 윤광석(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6-04. 한국행정연구원.



- Nutley et al. (2013: 10)은 연구설계에 따른 증거의 위계를 제시
  - RCT(Randomized control trial)에 기초한 연구증거가 그렇지 않은 관찰 연구나 사례연구에 비해 우수

<표 4-5> 증거의 유형

정책증거의 유형	연구증거의 유형
-systemic reviews -single studies -pilot studies and case studies -expert's evidence -internet evidence	-impact evidence -implementation evidence -descriptive analytical evidence -public attitudes and understanding -statistical modelling -economic evidence -ethical evidence

자료: Davies(2004)<sup>21)</sup>(윤영근, 2013: 127-128<sup>22)</sup>; 김대중, 2014: 877<sup>23)</sup> 재인용)

<표 4-6> 연구설계에 기초한 증거의 위계

Bagshaw and Bellomo(2008: 2)	Petticrew and Roberts(2003: 527)
Level I: 잘 수행되고 RCT(Randomized Control Trial)가 적절히 적용된 연구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Level II: 잘 수행되었지만 RCT가 낮은 수준에서 적용된 연구	RCTs with definitive results RCTs with non-definitive results
Level III: 임의화되지 않은 관찰 연구	cohort studies
Level IV: 임의화되지 않았으나 시간적으로 통제된 연구	case control studies cross-sectional surveys
Level V: 통제가 없는 사례 연구	case reports

자료: Nutley et al. (2013: 10)<sup>24)</sup> 발췌

21) Davies, 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presented at the 4<sup>th</sup>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 C.

22) 윤영근. (2013). 정책증거(policy evidence)의 시차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정책사례의 적용. 행정논총, 51(4). 103-126.

23) 김대중. (2014). 정책증거의 활용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도로 네트워크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875-896.

24) Nutley, S. M., Powell, A. E., & Davies, H. T. O. (2013). What counts as good evidence

(2) 증거의 질

- 국가의 다양한 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정책별로 활용되는 증거는 상당한 정도의 질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 증거의 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고 있음
  - Nutley et al. (2013)은 엄밀성과 포괄성을 논의하였으며, 미국 관리에 산처는 특히 평가증거를 중심으로 엄밀성, 적절성, 신뢰성/독립성, 투명성, 윤리성 등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함

<표 4-7> 증거의 질

구분	내용	
Nutley et al. (2013) <sup>25)</sup>	엄밀성 (rigorousness)	제안된 정책이 의도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대한 증거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는지
	포괄성 (comprehensiveness)	정책결정이 올바른지에 대한 답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US OMB(2016: 71-74) <sup>26)</sup>	엄밀성(rigor)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질은 기초연구의 설계와 실행에 의존. 모든 유형의 평가는 가장 엄밀한 방법론과 가장 적절한 평가 유형 활용해야
	적실성 (relevance)	현실적용성. 증거가 예산, 관리, 정책결정에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가
	신뢰성 및 독립성 (credibility and independence)	평가부서와 그들의 작업이 정치나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투명성 (transparency)	평가행위가 투명한지, 평가 작업과 결과가 공개되는지
	윤리성(ethics)	평가가 윤리적으로 수행되는지, 참여자의 위엄과 권리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25) 최영준 외(2016: 248-249 재인용)(최영준·전미선·윤선예(2016).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 멘탈모델, 증거, 불확실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서설적 이해. 한국행정학보, 50(2). 243-270.)

다. 증거기반정책의 유형

- 증거기반정책은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의견기반정책은 정책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한 이념이나 가치에 기초한 의견이나 이익에 따라 결정
  - 정책기반증거는 증거가 정책에 활용되기 전에 결정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
  - 증거기반정책은 엄밀성과 포괄성을 가진 다양한 증거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 증거영향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증거 활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호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

<표 4-8> 증거기반정책의 유형

구분	내용
의견/이익기반정책	가장 지배적인 멘탈구조에서 생산된 의견이나 이익에 따라 결정
정책기반증거	결정하는 행위자의 의도에 맞게 이미 증거가 제시되고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증거의 내용들이 주장되는 것
증거기반정책	엄밀성과 포괄성을 가진 증거들이 상호 경쟁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정책결정이 이루어짐
증거영향정책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따라 증거의 질적 수준이 제한되는 상황의 의사결정. 증거가 채우지 못하는 공간에 다른 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구조화되고 창조적으로 구성된 판단이 이를 채움

자료: 최영준 외(2016: 251-253) 발췌 및 수정

26) US OMB. (2016). Building the capacity to produce and use evidence.

라. 증거기반정책의 성공요인

- 증거기반정책이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음
  - 정책에 활용되는 증거가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 객관성이 높고 증거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다양한 자료원에 의한 다양한 증거 제시 필요
  - 관련 정책행위자 간 협력,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간 협력,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정책 참여자 사이에 협력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
  - 정책 기조가 과도하게 가치나 이념에 지배되지 말아야 하고, 정책입안시 증거제출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하고, 정책담당자가 증거 자체를 신뢰하여 활용하려고 해야 함
  - 정책담당자의 증거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증거기반체계역량이 확보되어야 함

<표 4-9> 증거기반정책의 성공요인

구분		내용
증거의 질	증거의 확증성	증거의 신뢰성, 일반화가능성, 의존성, 객관성, 증거능력 충분성
	증거의 다양성	증거의 부정적 영향력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 출처나 자료원 필요
정책 참여자의 협력적 상호작용		관련 정책행위자 간 협력,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간 협력,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증거기반정책 지원인력 강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협력, 부처 간 협력
가치나 정치이념		정치적 실용주의 노선과 반 이념정서
법제도 기반		법령 등의 정책입안시 의무화된 증거제출의 규정
정책담당자의 증거신뢰		증거가 당면한 정책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증거활용의 인센티브 설계		증거활용에 따른 보상의 제공 여부
증거기반역량		정책의 전과정에서 적절하고 정확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 여부

자료: 윤광석(2016: 37-41)<sup>27)</sup>, 오철호(2015: 64, 70)<sup>28)</sup> 발췌, 재구성, 일부 수정

27) 윤광석(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6-04. 한국행정

마. 증거기반정책의 제약요인

- 증거기반정책에 대하여는 정책의 실시와 집행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약 요인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음
- 우선 정치적 책임성 문제로서 실제 증거의 활용시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 이해관계자 참여가 제약되면서 정책의 실행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집행과정에는 증거기반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 등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동기 유인이 결여됨
- 정책과정의 시계가 연구과정의 시계보다 짧고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면 체계적 검토가 어렵고, 질적 증거가 중요함에도 체계적으로 배제되며, RCT 활용이 어려운 분야가 많음
- 변화가 빠른 정책의 경우 증거기반정책이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체계적 리뷰를 위한 평가연구가 부족

<표 4-10> 증거기반정책의 제약요인

구분	내용
정치적 책임성 문제	이해관계자 참여 제약, 규범적 문제 도외시, 민주사회에서 증거의 정치적 이용의 정당성, 정책 이데올로기 간과
집행과정의 문제	기본 자원(재원, 투자, 고용, 교육훈련, 동기유인 결여 등) 부족, 현실적 실행 제약(최신 연구 및 분석자료 접근과 평가 불가)
시간 제약성	정책과정은 연구과정보다 더 빨리 순환, 체계적 검토 어려움
현장 적용 가능성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의 부족, 비용 제약
증거의 질 문제	질적 증거의 낮은 중요도 문제, RCT 활용이 어려운 분야
증거기반정책이 비효과적인 경우	동맹지지 유도, 언론보도 대처, 위험관리 등의 이유로 다른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논쟁이 격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분야
평가연구의 양과 질	체계적 리뷰를 위한 평가연구 부족. 평가연구를 위해 내부자료 필요하지만 담당자들의 업무량 증가나 책임 회피 성향으로 자료 확보 어려움
연구자와 정책결정자의 방법론적 지식과 비전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부족한 방법론적 지식, 상위 정책결정자들의 증거기반정책에 대한 비전 필요

자료: 윤광석(2016: 45-46), 박승민(2009: 10)<sup>29)</sup>, 박철현(2014: 139)<sup>30)</sup> 발췌 및 정리, 수정

연구원.

28) 오철호. (2015).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연구경향과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24(1). 53-75.

## 2. 주요국의 증거기반정책 사례

### 가. 미국

#### (1) 증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 (가) Evidence Agenda

- 2013년 7월 OMB(Office of Management an Budget), DPC(Domestic Policy Council),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EA(Council of Economic Advisers) 공동으로 “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 발표

<표 4-11> “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 실행전략

구분	내용
데이터 활용하여 기관 성과 증진	정부 기관이나 연구자가 정책(프로그램) 결과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연방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행정정보 활용 권장 및 데이터 개방 추진
효율적 평가와 신속하고 반복적인 실험	행정정보 활용을 통해 정책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질과 적실성을 제고, 무작위실험이나 준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 효과 측정 권장
성과 위주의 보조금 설계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효과적 보조금 제도 설계 위해 증거 활용
증거 활용 역량 강화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가 지식 공유를 통해 기관의 증거 활용 역량 제고 증거의 질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

자료: 오세영 외(2017: 21)<sup>31)</sup> 발췌 및 수정

29) 박승민(2009).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을 향하여: 흡연 임신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성·지속성·비용효과성 분석. 극동사회복지저널, 5. 7-31.

30) 박철현(2014).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발전과 국내 적용방향. 형사정책연구, 25(2). 123-157.

31) 오세영·윤건·오균. (2017).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나)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 2014년에 제정되어 2016년 5월 수정한 법으로서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며, 통계기관, 연방평가국, 연방 증거구축사무국 활용하도록 규정

### (2)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는 연방정부 정책 결정, 데이터 기관의 데이터 목록과 기반, DB 보안 및 통계 프로토콜 관련 포괄적 연구 수행
- 정책분야별 데이터를 산출하는 FSS(Federal Statistical System)와 협력하며, 이중 13개 기관이 정보의 수집과 편집, 처리와 분석, 보급 담당
- 연방평가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정책결정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함

### (3) 증거기반정책의 실제: 증거 포트폴리오

-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는 증거를 기초 증거(foundational evidence)와 정책 증거(policy-specific evidence)로 구분
- 증거 포트폴리오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행정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로 구분되고, 행정데이터는 일반행정 데이터와 프로그램별 데이터로 서베이데이터는 일반목적 서베이와 연구별 서베이로 구분
  - 일반행정 데이터는 국세청 납세 데이터와 같이 인구에 대한 포괄적 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행정데이터, 프로그램별 데이터는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 서비스 참여자, 서비스 성과지표 등에 대한 정보 포함
  - 일반목적 서베이는 연방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 광범위한 인구 특성에 대한 정보 생성, 대규모 횡단면/종단면/패널데이터 포함별 서베이는 특정 연구나 평가 관련하여 수집하는 데이터, 규모나 범위, 일관성 변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오세영 외, 2017: 25)

<표 4-12> 미국의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구분		내용
증거기반 정책결정 위원회	기능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과 프로그램 평가 관련 행정정보와 서베이 데이터 확인하여 클리어링하우스에 등록 -데이터 간 연계성 판단 및 연결 상 법적/행정적 장애 요인 파악 -데이터 접근 및 연계 용이하도록 인프라 구축 -클리어링하우스의 자체자금 지원법 모색 -데이터 이용 적격자(연구자, 공무원, 기관) 판단 -데이터 이용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기밀 유지 방법 모색 -기관 간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 -연구결과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자문
	거버넌스 구조	-전문가(경제/통계, 프로그램 평가, 정보보안/DB관리 등) 15인으로 구성 -대통령과 의회의 임명 -위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통계기관 ( F S S : Federal Statistical System)	기능	정책분야별 데이터 산출
	거버넌스 구조	-130여개 주요 통계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13개 기관이 핵심으로 정보의 수집과 편집, 처리와 분석, 보급을 주요 임무로 함 -상무부 경제분석국/인구조사국, 법무부 법무통계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교통부 교통통계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교육부 국립교육통계센터, 농무부 국립농업통계국, 보건복지부 국립보건통계센터, 에너지부 에너지정보청, 국립과학재단 국립과학기술통계센터, 사회보장국 연구평가통계사무국, 재무부 소득통계국
연방평가 국	기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정책결정, 예산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
	거버넌스 구조	미국국제개발기구 정책기획학습국, 노동부 수석평가국, 교육부 국립교육 평가지역지원센터, 연방총무청 평가과학국, 보건복지부 기획연구평가국/아동가족청, 사회보장국 연구실습고용지원국, 국가지역사회봉사단 연구평가국

자료: 오세영 외(2017: 21-24) 발췌 및 수정



〈표 4-13〉 미국 증거기반정책에서의 증거포트폴리오

구분	증거요소	예시
기초증거	종합지표	실업률
	인구설명, 추세/상관관계	-경제, 건강, 실업 간 상관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장기적으로 교육과 장애에 따라 실업률 격차 발생 경기침체가 저학력이나 장애인근로자에게 큰 타격
	특정 처치 예상효과	정리해고나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자 연구에서 해고 근로자의 직무 기술이 업계에서 중요 요소임을 제시
정책증거	성과측정기준	노동투자법 상 연방직업훈련프로그램의 고용-수입에 대한 공통성과측정지표 사용. 참여자 관리 데이터를 분기별 임금 데이터와 대조하여 지표 생성
	이행 평가	혁신기회법은 지방정부의 정책결과와 성과를 위한 다중 데이터 구현 및 분석에 초점
	특정 처치 예상효과(준실험)	참여자 데이터와 임금 기록 분석 결과 다른 직업센터 참석자의 표본보다 더 높은 수입과 고용기회 얻는 것으로 확인
	특정 처치 예상효과(실험, 무작위 대조실험)	참여자 데이터와 임금 기록 사용하여 실업보험 청구인에게 재취업 서비스 제공시 재취업 속도 증가와 실업보험 수혜감소 확인 노동부는 행정데이터로 비용효과의 장기 추적 관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평가
	비용분석, 비용편익분석, 규제영향 분석	노동부는 견습생이 받는 수입과 순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10개 주의 프로그램 효과 및 비용편익분석 실시

자료: 오세영 외(2017: 25-26) 발췌 및 수정

## 나. 영국

### (1) 증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 (가) 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

- 1999년 블레어 정부의 정부개혁안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국민과 기업의 삶을 개선하고자 함
- 목표: 전략적 정책결정,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공급, 공공서비스 고품질/효율화

- 정부가 단기적 압력에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 증거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
- 다양하고 까다로워지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혁신적인 필요, 정책결정이 지속적 학습과 개선의 과정이어야 함
- 정책결정에서 증거와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정책목표 추구

(2)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 WWN은 증거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권고 등
- ADRN은 정부 데이터 활용 연구 수행을 위한 단일 액세스 제공

<표 4-14> 영국 증거기반정책 관련 조직

구분		내용
WWN(What Works Network)	기능	-기존 증거를 통해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의 효과성 검토 -각 분야에서 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기존에 합의된 정책 및 관행의 성과 평가 -증거와 분석 결과를 공유 -정책결정자, 위원회, 실무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권고
	거버넌스구조	7개 독립기관(국립보건임상연구원, 서트트러스트/교육기금재단, 경찰대학 범죄예방센터, 조기개입재단, 지역경제성장센터, 고령화센터, 웰빙센터), 2개 준회원(웨일즈공공정책연구소, 스코틀랜드센터)
ADRN(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기능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단일 액세스 지점 제공 -연구자 자격과 능력 확인,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거버넌스구조	행정데이터서비스원(데이터 질 관리), 행정데이터연구센터(사우스햄프턴/퀸스(벨파스트)/에디버러/스완지대학), 국가통계기관(행정데이터연구센터와 협력),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행정데이터 제공), 경제사회연구회(기금 제공), 영국통계청(ADRN위원회 주도)

자료: 오세영 외(2017: 28-30) 발췌 및 수정

(3) 증거기반정책의 실제: 증거 검토, 역량 강화, 시범 사업

- 지역경제성장센터는 증거 검토, 역량 강화, 시범 사업 등을 실시
- 증거 검토는 기존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개하는 것
- 역량 강화는 정책입안자나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증거를 제공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 시범사업은 프로그램의 비용편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표 4-15> 지역경제성장센터의 증거기반정책

구분	내용
증거검토	경제개발정책 관련 기존 증거자료 검토 지역경제 성장 요인(고용훈련, 비즈니스 자문, 문화행사, 금융프로그램) 조사하여 데이터 구축하고 공개
역량 강화	정책입안자 및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분석 및 증거 제공, 워크숍 실시
시범사업	지역파트너,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의 B/C에 대한 증거 제시 위해 시범사업 설계 및 실시, 자문

자료: 오세영 외(2017: 30-31) 정리

###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의 함의

- 통계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증거의 하나
  -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 수치 필요
    - ※ 예시: 정책문제가 발생한 정책대상자의 수에 대한 정보, 정책대상자의 객관적 상태에 대한 정보, 정책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정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행 기관의 역량(인력, 예산, 기술)에 대한 정보, 정책대안의 탐색을 위한 외국 자료에 대한 정보,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통제집단의 사전 및 사후 정보, 정책이 비효과적이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과적 정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정보 등

- 증거의 위계에서 통계의 위치
  - 통계는 수량적 정보로서 다양한 위계 가능
    - ※ 단일 연구나 사례 연구에서의 수량적 정보의 경우 낮은 수준의 증거이지만 RCT에 기초한 엄밀한 실험연구에서의 수량적 정보라면 높은 수준의 증거
- 증거로서의 통계의 질 문제
  -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엄밀성 측면에서 통계의 질이 담보되지만 이외의 개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미승인통계의 경우 통계의 질 담보 문제가 있음
  - 다만 통계청의 경우 통계전문성은 높지만 정책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라고 하더라도 포괄성이나 적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보완 필요
  - 또한 양적 증거로서의 통계는 정책적실성 측면에서 인터뷰나 참여관찰 등의 방법에 의한 질적 증거로 일정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제약요인
  - 통계작성 비용의 문제: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적절한 정도의 질이 확보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통계해석의 문제: 어느 정도 수준의 통계치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 관점에서의 적절한 해석이 필요함
  -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실성 높은 통계지표의 확보 문제: 정책목표의 수치화는 구체적인 목표의 상정으로 실행력이 높지만, 해당 수치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해당 수치에만 집중하면서 정책과정에서 수치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주요 요소를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책 담당자의 통계역량 부족 문제: 정책 담당자의 경우 정책과정의

시계가 짧아 이용 가능한 수치에 매달리거나, 다른 유형의 증거, 혹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철학에 의존하면서 통계역량 확보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음

- 피드백 정보로서 통계 수치의 한계성: 정책평가의 진정한 목표는 성과관리를 통한 단기적 성과 제고가 아니라 피드백(정책학습)을 통한 정책의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장기적 성과 제고에 있다고 할 때 피드백 정보로서의 통계 수치는 정책학습을 위한 정보로서는 한계
- 통계청과 정책부처 간 협업 문제: 통계청은 통계전문성이 높고 정책담당 부처는 정책전문성이 높으므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이한 전문성으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
- 정책부처 내 통계담당자와 정책담당자 간 협업 문제: 정책부처 내부에서도 통계담당자와 정책담당자 간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연구자와 통계청 간 협업 문제: 통계의 엄밀성에 대한 통계청의 전문성이 높은 반면 정책에 대한 이해, 연구 차원의 전문성은 외부 연구자가 높다고 할 때 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목적과 연구자의 목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간 협업 문제: 정책담당자는 정책문제의 해결 자체에 초점이 있고, 연구자는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엄밀성에 초점이 있어 관점의 차이가 있고 정책과정의 시계가 연구과정의 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상호 기대 수준의 상이함에서 오는 갈등의 소지가 있음
- 법령제개정의 짧은 시계 문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서와 같이 법령제개정시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권고하는 경우 통계심사 최초 요청 시점에서 결과완료 요청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지표를 권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해관계자 참여의 문제: 정책 관련 통계지표가 통계청과 정책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정책의 실제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 적실한 통계지표가 생성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적절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
- 통계청 내부 협업 구조: 통계청의 국가승인제도, 품질관리, 통계대행, 행정자료 활용 등, 다양한 관련 통계 관련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계 간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지표의 경우 관리뿐만 아니라 직접 생성이 이루어질 필요
- 질 높은 수준의 통계 자료 생성 필요: 무작위실험에 기반한 정책평가 자료와 같이 높은 수준의 통계 자료가 구축될 필요
- 상충하는 통계의 문제: 상이한 분석방법, 상이한 연구설계 등으로 일관된 통계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계 생산과 활용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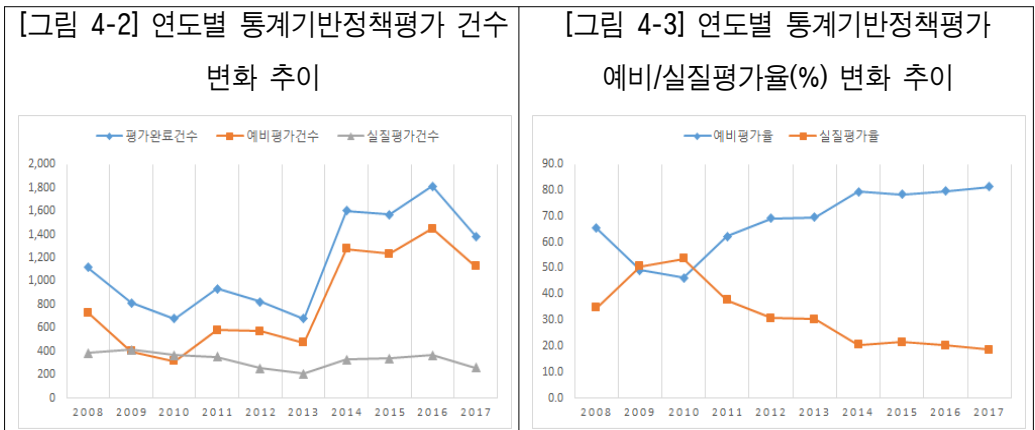
### 제3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양적 성과 분석

##### 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건수

##### (1) 연도별 변화 추이

- 평가완료건수와 예비평가건수의 경우 2013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시행규칙 포함으로 대폭 증가하지만 다시 하락 추세
- 실질평가건수의 경우에도 2013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16년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음
- 실질평가율(=실질평가건수/평가완료건수\*100)을 보면 2010년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4년 실질평가건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평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기초로 작성

<표 4-16> 연도별 통계기반정책평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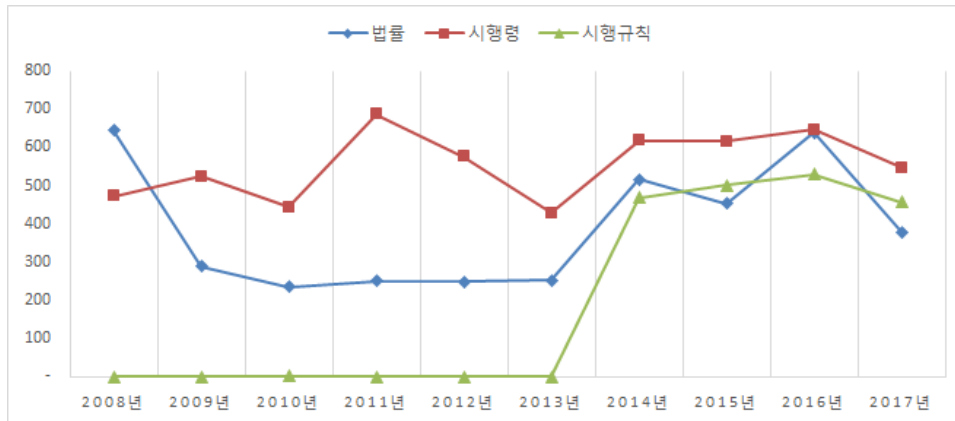
연도	평가완료건수 (a=b+c)	예비평가		실질평가				통계지표 활용 권고건수
		건수(b)	예비평가율(% (b/a)	실질평가전체		통계개발/개선		
				건수 (c=d+e)	실질평가율(% (c/a)	건수(d)	통계개발/개선율(% (d/c)	
2008	1,116	729	65.3	387	34.7	67	17.3	320
2009	813	400	49.2	413	50.8	44	10.7	369
2010	679	314	46.2	365	53.8	30	8.2	335
2011	937	583	62.2	354	37.8	43	12.1	311
2012	825	571	69.2	254	30.8	36	14.2	218
2013	681	474	69.6	207	30.4	30	14.5	177
2014	1,603	1,275	79.5	328	20.5	25	7.6	303
2015	1,570	1,232	78.5	338	21.5	39	11.5	299
2016	1,814	1,447	79.8	367	20.2	56	15.3	311
2017	1,383	1,126	81.4	257	18.6	42	16.3	215
계/평균	11,421	8,151	71.4	3,270	28.6	412	12.6	2,858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일부 수정

(2) 법령 유형별 변화 추이

- 평가완료건수를 법령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행 최초 시점인 2008년을 제외하고 법률보다는 시행령의 경우가 높게 나타남

[그림 4-4] 법령 유형별 평가완료건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기초로 작성



<표 4-17> 법령 유형별 평가 건수 변화 추이

연도	예비평가			실질평가								
				실질평가전체			통계개발/개선			통계지표 활용권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08	489	240	0	155	232	0	19	48	0	136	184	0
2009	165	235	0	124	289	0	14	29	0	110	260	0
2010	131	182	1	104	261	0	5	25	0	99	236	0
2011	151	432	0	99	255	0	5	38	0	94	217	0
2012	161	410	0	88	166	0	8	28	0	80	138	0
2013	154	320	0	98	109	0	12	18	0	86	91	0
2014	343	499	433	174	119	35	8	12	5	166	107	30
2015	288	494	450	166	121	51	15	15	9	151	106	42
2016	423	544	480	215	103	49	24	23	9	191	80	40
2017	231	473	422	148	74	35	22	11	9	126	63	26
합계	2,536	3,829	1,786	1,371	1,729	170	132	247	32	1,239	1,482	138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일부 수정

- 시행규칙의 경우 최초 시행시점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예비평가 건수 대비 실질평가 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실제 평가의 실효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평가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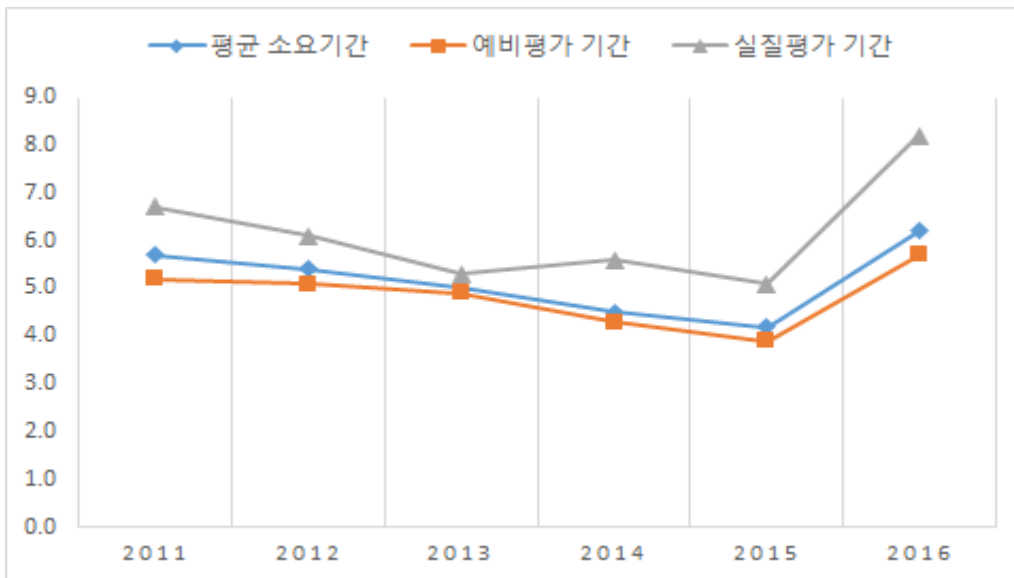
- 연도별 평가 소요기간을 보면 지난 **6년** 간의 평균을 보면 **5.2일**에 불과함. 실질평가 기간의 경우도 **2016년도**에 크게 상승하였지만 **8.2일**에 불과함

<표 4-18> 연도별 평가 소요기간

연도	평균 소요기간		예비평가 기간		실질평가 기간	
	기간(일)	증감율(%)	기간(일)	증감율(%)	기간(일)	증감율(%)
2011	5.7	-	5.2	-	6.7	-
2012	5.4	-5.3	5.1	-1.9	6.1	-9.0
2013	5.0	-7.4	4.9	-3.9	5.3	-13.1
2014	4.5	-10.0	4.3	-12.2	5.6	5.7
2015	4.2	-6.7	3.9	-9.3	5.1	-8.9
2016	6.2	47.6	5.7	46.2	8.2	60.8
평균	5.2	-	4.9	-	6.4	-

자료: 통계청(2017: 17) 발췌 및 수정

[그림 4-5] 평가 소요기간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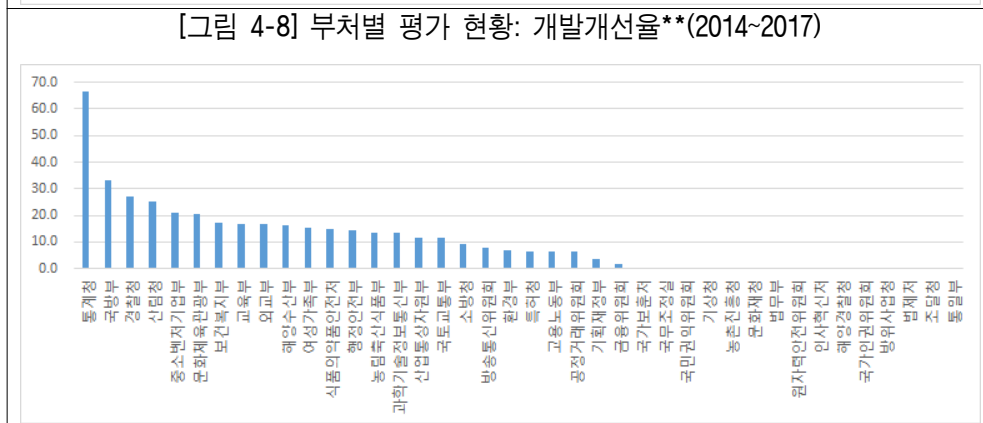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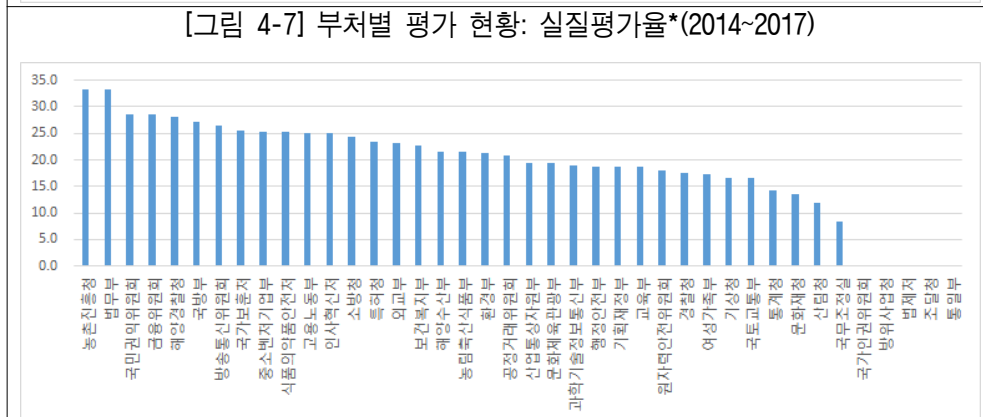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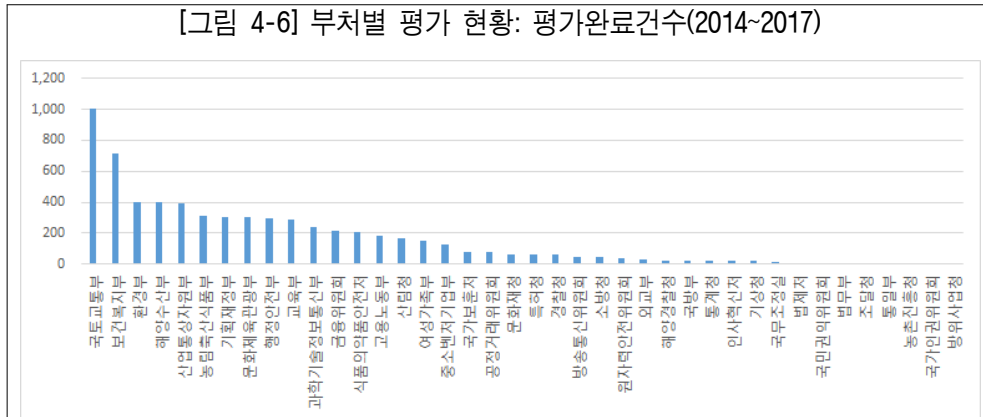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17) 자료 기초로 작성

#### 다. 부처별 평가 현황

- 평가완료건수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14년~2017년) 국토교통부가 1,000건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남.
- 실질평가율 기준으로는 농촌진흥청과 법무부가 35% 정도로 가장 높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방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발개선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67% 정도로 가장 높고, 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실질평가율=(실질평가건수/평가완료건수)\*100  
 \*\*개발개선율=(개발개선건수/실질평가건수)\*100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기초로 작성

〈표 4-19〉 연도별 부처별 평가 추이

	2014~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 연도수	실 평가 률(%)	개발 개선 률(%)	평가 연도수	실 평가 률(%)	개발 개선 률(%)	평가 연료	실 평가 률(%)	개발 개선 률(%)	평가 연료	실 평가 률(%)	개발 개선 률(%)	평가 연료	실 평가 률(%)	개발 개선 률(%)
전체	6,370	20.3	12.6	1,603	20.5	7.6	1,570	21.5	11.5	1,814	20.2	15.3	1,383	18.6	16.3
경찰청	63	17.5	27.3	14	21.4	0.0	19	10.5	100.0	22	22.7	20.0	8	12.5	0.0
고용노동부	184	25.0	6.5	55	21.8	0.0	46	30.4	0.0	44	27.3	0.0	39	20.5	37.5
공정거래위원회	77	20.8	6.3	20	15.0	33.3	13	15.4	0.0	31	25.8	0.0	13	23.1	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	19.0	13.3	59	15.3	11.1	84	20.2	11.8	68	13.2	22.2	26	38.5	10.0
교육부	284	18.7	17.0	58	20.7	8.3	62	22.6	21.4	102	14.7	26.7	62	19.4	8.3
국가보훈처	78	25.6	0.0	15	0.0	0.0	7	0.0	0.0	27	40.7	0.0	29	31.0	0.0
국가인권위원회	1	0.0	0.0	0	0.0	0.0	1	0.0	0.0	0	0.0	0.0	0	0.0	0.0
국무조정실	12	8.3	0.0	1	0.0	0.0	0	0.0	0.0	7	14.3	0.0	4	0.0	0.0
국민권익위원회	7	28.6	0.0	1	100.0	0.0	2	0.0	0.0	3	33.3	0.0	1	0.0	0.0
국방부	22	27.3	33.3	4	25.0	100.0	9	11.1	0.0	5	40.0	50.0	4	50.0	0.0
국토교통부	1,006	16.6	11.4	235	14.0	6.1	251	19.1	12.5	284	17.3	8.2	236	15.7	18.9
금융위원회	214	28.5	1.6	56	37.5	4.8	46	30.4	0.0	80	26.3	0.0	32	15.6	0.0
기상청	18	16.7	0.0	4	25.0	0.0	4	25.0	0.0	4	0.0	0.0	6	16.7	0.0
기획재정부	305	18.7	3.5	79	19.0	0.0	74	13.5	0.0	76	23.7	5.6	76	18.4	7.1
농림축산식품부	308	21.4	13.6	72	26.4	10.5	100	25.0	16.0	61	23.0	7.1	75	10.7	25.0
농촌진흥청	3	33.3	0.0	1	0.0	0.0	2	50.0	0.0	0	0.0	0.0	0	0.0	0.0
문화재청	66	13.6	0.0	15	13.3	0.0	14	14.3	0.0	16	6.3	0.0	21	19.0	0.0
문화체육관광부	305	19.3	20.3	100	17.0	17.6	79	22.8	11.1	78	19.2	33.3	48	18.8	22.2
방송통신위원회	49	26.5	7.7	16	25.0	0.0	7	57.1	0.0	20	20.0	25.0	6	16.7	0.0
방위사업청	1	0.0	0.0	0	0.0	0.0	0	0.0	0.0	1	0.0	0.0	0	0.0	0.0
법무부	6	33.3	0.0	4	25.0	0.0	0	0.0	0.0	0	0.0	0.0	2	50.0	0.0
법제처	9	0.0	0.0	0	0.0	0.0	0	0.0	0.0	3	0.0	0.0	6	0.0	0.0
보건복지부	717	22.6	17.3	175	21.7	10.5	174	24.7	7.0	210	22.9	27.1	158	20.9	24.2
산림청	169	11.8	25.0	39	7.7	0.0	39	20.5	12.5	35	2.9	0.0	56	14.3	50.0
산업통상자원부	391	19.4	11.8	130	22.3	3.4	97	16.5	6.3	100	23.0	30.4	64	12.5	0.0
소방청	45	24.4	9.1	7	14.3	0.0	8	25.0	50.0	20	20.0	0.0	10	40.0	0.0
식품의약품안전처	210	25.2	15.1	45	31.1	0.0	58	29.3	29.4	68	17.6	16.7	39	25.6	10.0
여성가족부	150	17.3	15.4	56	23.2	15.4	36	25.0	22.2	35	11.4	0.0	23	0.0	0.0
외교부	26	23.1	16.7	7	14.3	0.0	3	0.0	0.0	6	33.3	50.0	10	30.0	0.0
원자력안전위원회	39	17.9	0.0	11	18.2	0.0	10	20.0	0.0	18	16.7	0.0	0	0.0	0.0
인사혁신처	20	25.0	0.0	2	0.0	0.0	5	60.0	0.0	9	0.0	0.0	4	50.0	0.0
조달청	4	0.0	0.0	2	0.0	0.0	0	0.0	0.0	2	0.0	0.0	0	0.0	0.0
중소벤처기업부	130	25.4	21.2	28	35.7	10.0	36	16.7	33.3	39	23.1	22.2	27	29.6	25.0
통계청	21	14.3	66.7	2	0.0	0.0	9	22.2	100.0	3	0.0	0.0	7	14.3	0.0
통일부	4	0.0	0.0	1	0.0	0.0	1	0.0	0.0	2	0.0	0.0	0	0.0	0.0
특허청	64	23.4	6.7	14	7.1	0.0	18	11.1	0.0	17	47.1	12.5	15	26.7	0.0
해양경찰청	25	28.0	0.0	4	25.0	0.0	9	33.3	0.0	11	27.3	0.0	1	0.0	0.0
해양수산부	399	21.6	16.3	105	24.8	11.5	94	16.0	6.7	93	22.6	19.0	107	22.4	25.0
행정안전부	299	18.7	14.3	67	17.9	8.3	74	23.0	5.9	98	18.4	33.3	60	15.0	0.0
환경부	402	21.4	7.0	99	23.2	4.3	79	25.3	5.0	116	21.6	0.0	108	16.7	22.2

자료: 통계청(2014: 12, 2015: 12, 2016: 13, 2017: 13, 2018: 11) 발췌 및 추가

라. 이행점검 결과

- 현재 통계청은 지난 10년 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통해 권고된 개발·개선 지표 중 45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행점검 결과 이 중 81.7% 정도의 지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으로 2008~2014년 지표까지는 90% 이상 지표가 완료되었으며, 2015년 지표의 경우 80% 정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연도별 이행점검 결과

평가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관리지표수	84	60	44	45	37	30	24	37	53	45	459	
완료지표수	83	60	44	44	35	30	22	29	24	4	375	
완료율	98.8	100.0	100.0	97.8	94.6	100.0	91.7	78.4	45.3	8.9	81.7	
완료 연도	2009	7	-	-	-	-	-	-	-	-	7	
	2010	18	8	-	-	-	-	-	-	-	26	
	2011	42	23	12	-	-	-	-	-	-	77	
	2012	3	15	15	7	-	-	-	-	-	40	
	2013	7	4	9	14	3	-	-	-	-	37	
	2014	3	4	6	12	14	3	-	-	-	42	
	2015	2	3	1	7	9	12	5	-	-	39	
	2016	-	2	-	2	3	5	6	8	-	-	25
	2017	1	1	-	1	3	9	7	13	10	-	45
2018	-	-	1	1	3	1	4	9	14	4	37	
진행지표수	1	-	-	1	2	-	2	8	29	41	84	
진행율	1.2	-	-	2.2	5.4	-	8.3	21.6	54.7	91.1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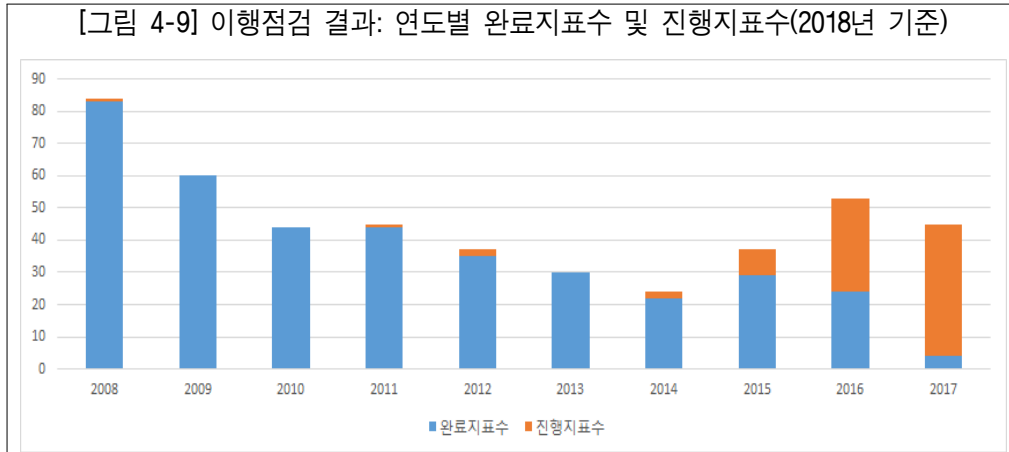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19) 발취 및 수정

- 지표 권고 이후 완료시까지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전체에서 약 60%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연차별 완료지표 건수 및 비율

완료연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비율
	완료 지표 수	비율 (%)	완료지표 수	비율 (%)	완료지표 수	비율 (%)	완료지표 수	비율 (%)	완료지표 수	비율 (%)	완료지표 수	비율 (%)	
1차년도	7	8.4	8	13.3	12	27.3	7	15.9	3	8.6	3	10.0	13.9
2차년도	18	21.7	23	38.3	15	34.1	14	31.8	14	40.0	12	40.0	34.3
3차년도	42	50.6	15	25.0	9	20.5	12	27.3	9	25.7	5	16.7	27.6
4차년도	3	3.6	4	6.7	6	13.6	7	15.9	3	8.6	9	30.0	13.1
5차년도	7	8.4	4	6.7	1	2.3	2	4.5	3	8.6	1	3.3	5.6
6차년도	3	3.6	3	5.0	0	0.0	1	2.3	3	8.6	0	0.0	3.2
7차년도	2	2.4	2	3.3	0	0.0	1	2.3	0	0.0	0	0.0	1.3
8차년도	0	0.0	1	1.7	1	2.3	0	0.0	0	0.0	0	0.0	0.7
9차년도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0.2
10차년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계	83	100.0	60	100.0	44	100.0	44	100.0	35	100.0	3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18: 19) 자료 기초로 작성



자료: 통계청(2018: 19) 자료 기초로 작성

##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 분석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나타남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5인(교수 3인, 연구기관 1인, 부처공무원 1인)의 인터뷰 내용, 2018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관련 세션 발표(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담당 공무원 1인, 교수 2인)와 토론(교수 1인, 부처 공무원 1인, 연구기관 1인, 통계청 공무원 4인, 부처 공무원 1인, 박사 1인) 내용(통계청, 2018b),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16년 관련 보고서(윤광석, 2016) 인터뷰 자료(통계청 포함 중앙행정기관 고위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박사 포함 전문가 13인)를 프로그램논리모형(input-process-output-outcome)에 따라 분석
- 우선 결과(outcome) 측면은 목표달성도, 부처 만족도, 부처 통계기반성 강화, 수단의 상대적 효과성, 부처 통계역량 제고, 부처 업무량, 지속가능성, 통계산출 용이성 등의 8개 지표를 살펴봄. 부처 만족도 수준은 낮고, 부처 업무량 가중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품질 제고와 같은 목표달성도, 부처의 통계역량제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출(output) 측면은 활용성, 충실성, 효율성, 적합성 등 4개 지표를 살펴봄. 지표의 정책 적합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부처 입장에서 제도의 활용성, 의견의 충실성, 평가의 효율성 등은 낮게 나타남
- 과정(process) 측면은 전문성, 협업역량, 거버넌스, 피드백,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대상의 적절성 등 6개 지표를 살펴봄. 정책전문성, 협업역량, 거버넌스 등은 낮게, 나머지 지표는 보통으로 나타남
- 투입(input) 측면은 자원, 권한, 시간 등 3개 지표를 살펴봄. 자원, 권한, 시간 모두 충분성이 낮게 나타남

<표 4-2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비판적 검토 결과

구분	지표	평가	근거	
결과 (outcome)	지속가능성	환경 변화(부처 통계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제도인가?	보통	통계청(2018b: 4), 인터뷰
		10년의 제도 운영을 통해 부처의 통계역량이 강화되어 이제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된 것은 아닌가?		
	목표달성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보통	윤광석(2016: 130, 131)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해 실제 정책의 품질이 제고되었는가?		
		부처의 정책 품질 제고에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얼마나 기여하는가?		
	부처만족도	부처 정책담당자들이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결과에 만족하는가?	낮음	통계청(2018b: 4) <sup>32)</sup>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이 생산한 아웃풋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부처통계기반성강화	부처 정책담당자들이 통계기반정책평가가 부처의 통계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보통	윤광석(2016: 130, 131)
수단상대적효과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 품질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인가?	보통	윤광석(2016: 130, 131)	
	다른 정책품질 제고 수단보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라는 수단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인가?			
부처통계역량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인해 부처의 통계역량(인력, 예산, 전문성)이 강화되었는가?	낮음	통계청(2018b: 4)	

구분	지표	평가	근거	
제고	통계심사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얼마나 학습하는가?	높음	인터뷰	
	부처의 정책담당자들이 통계기반정책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낮음	통계청(2018b: 6)	
	부처 업무량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인해 부처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가중되었는가?	높음	윤광석(2016: 130), 통계청(2018b: 3), 인터뷰
	통계 산출 용이	권고된 지표의 통계 산출이 용이한가? 통계 산출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용이한가?	낮음	통계청(2018b: 4), 인터뷰
산출 (output)	활용성	부처에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가?	낮음	윤광석(2016: 131), 통계청(2018b: 4)
	충실성	부처 통계개발개선험획에 대한 의견이 충실한가?	낮음	평가의견 부실함
	효율성	부처가 스스로 통계지표를 개발하는 것보다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한 개발이 보다 효율적인가?	낮음	통계청(2018b: 4)
	적합성	권고된 통계지표가 정책집행과 평가에 얼마나 적절한가?	높음	인터뷰
과정 (process)	전문성	평가조직이 심사를 위한 충분한 통계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높음	인터뷰
		평가조직이 심사를 위한 충분한 정책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인터뷰
	협업역량	평가조직이 부처 정책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는가?	낮음	평가평균기간
		평가조직이 부처 통계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는가?	낮음	부처통계담당자인터뷰
		평가조직이 정책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는가?	낮음	통계청(2018b: 3), 인터뷰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이 정책대상자 그룹과 충분히 협의하는가?	낮음	평가평균기간
	거버넌스	청단위 조직으로서의 통계청이 부처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가?	낮음	윤광석(2016: 134-135)
		행정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보통	인터뷰
	피드백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통	사례집, 이행점검실효성 보통



구분	지표	평가	근거
평가 지표의 적절성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기준 <sup>33)</sup> 이 적절한가?	보통	지표-정책 연계, 지표 개발 - 예산 연계 충분성 검토 미흡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재의 평가대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절한가? 평가대상의 확대(의원입법, 기본계획, 사업(프로그램), 훈령, 예규 등)가 필요한가?	보통	윤광석(2016: 134)
투입 (input)	평가조직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인터뷰(인력감소, 순환보직)
	평가조직이 충분한 권한(인센티브, 페널티)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권한 규정 미흡
	평가조직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낮음	통계청(2018b: 3)

<표 4-23> 통계기반정책평가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 예시

통계청 평가제도의 경우 중요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실제 부처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미있게 활용되거나 중요한 프로세스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윤광석, 2016: 131)
사업부서에서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를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필요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함.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통계가 작성됐을 때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이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통계청, 2018b: 6)
통계청에서 통계지표 개발·개선을 권고해도 부처는 예산 확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통계청, 2018b: 4)

32) 통계청. (2018b).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33) [통계지표 평가 관련]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제시된 필요통계지표가 기존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필요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통계 개발·개선계획 평가 관련] 통계개발 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통계개발 개선계획(통계지표명,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 통계작성 목적, 법적근거, 통계작성 대상, 통계작성사항, 통계작성주기, 통계작성체계, 추진일정 등)은 적절한가? 개발 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개발 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통계개발 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통계청, 2018a: 23 발췌)

<p>각 부처의 통계 역할이 많이 축소됨. 복지부의 경우 통계담당관실에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작성하며, 실무자도 통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도움을 받고, 작성자의 의도에 맞게 통계를 작성하기도 함(통계청, 2018b: 4)</p>
<p>현재도 규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의무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윤광석, 2016: 134)</p>
<p>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는 외부에서 보면 멋있는 제도이나, 통계청 실무자나, 부처입장에서 보면 활용가치가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통계기반 평가제도는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는 통계만 평가함. 법률 만드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부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로 여겨짐(통계청, 2018b: 4)</p>
<p>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통계청의 위상이나, 정책과정 상의 시간적 촉박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작동할지는 의문(윤광석, 2016: 134-135)</p>
<p>법령의 제·개정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물론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변경하겠으나 실제로 공무원들은 훈령이나 예규의 변경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윤광석, 2016: 134)</p>
<p>부처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전문가의 조언과 개입이 필요하고, 초창기에는 많은 시도가 있었음,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해결함(통계청, 2018b: 3)<sup>34)</sup></p>
<p>업무량 증가와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정해진 수준의 평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러 있음(통계청, 2018b: 3)</p>

---

34) 통계청(2018b).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 제4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개선 방안

- 5가지 개선 방향 제시: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 부처의 만족도 제고,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기반(input) 강화, 통계거버넌스의 질 강화, 사후적인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 가.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

-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부처통계담당자-부처정책담당자-연구기관(연구원, 대학) 간 협력 강화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부처 통계개발계획 강화, 평가시 정책전문가 참여 의무화, 통계 엄밀성에 초점 등의 실행 대안 제시
  - 첫째, 부처 통계개발계획 강화(부처 내 협력 강화): 부처 내부 통계담당부서와 정책담당부서 간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부처 통계개발계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이를 통해 부처 통계역량이 높아질 것이지만 부처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통계-예산 연계를 통해 부처 반발을 극복할 필요
  - 둘째, 평가시 정책전문가 참여 의무화(평가조직-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실질 평가 과정에 정책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통계지표의 질을 강화하고 부처의 수용성을 증진시킴. 다만 입법예고 전 혹은 15일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법령평가와 정책평가를 이원화하여 정책전문가 참여 의무화는 정책평가에 한정
  - 셋째, 통계활용 권고 및 통계지표 생산의 통계적 엄밀성에 초점: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은 기존 통계지표의 활용과 통계지표 생산의 통계적 엄밀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통계지표 개발의 경우 연구기관에 위임. 이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통계전문성과 연구기관의 정책전

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임. 이를 통해 통계지표의 질이 개선되면 부처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 경우 연구기관과의 협업 문제, 시간적 제약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나.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기반 강화

-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기반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대, 권한 확대, 대상 확대 등, 세 가지 실행 대안을 제안함
  - 첫째, 인력 및 예산 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력의 한계에 의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하여 실질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정책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부처나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 충원 필요
  - 둘째, 권한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임. 인센티브나 페널티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이 경우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부처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셋째, 대상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가 대상을 현재 법령에서 의원입법, 기본계획, 훈령 및 예규, 사업(프로그램)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임. 이 경우 부처 업무 가중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비 평가를 강화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다. 부처의 만족도 제고

- 부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서비스적 마인드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간 연계, 통계-예산 간 연계 등 실행 대안 제시
  - 첫째, 관련 제도 간 연계: 통계승인-통계품질관리-통계대행 등, 부처 입장에서 윈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 이를 통해 부처의 제도 수용성이 증진될 것임. 다만 부서 간 칸막이가 연계

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통계-예산 간 연계: 개발/개선권고 통계지표의 경우 해당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경우 부처의 수용성이 증진될 것이지만 기재부와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함. 기재부 협의시 통계 분야의 전문성과 이에 따른 통계예산권 필요성 강조 필요

#### 라. 통계거버넌스의 질 강화

- 통계지표의 정책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통계거버넌스에서 정책연구기관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 경우 분산형과 집중형이 가능함
  - 첫째, 분산형: 부처별로 협력하는 주요 연구기관들과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이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연구기관들의 정책 및 통계전문성을 적극 활용. 이 경우 다양한 연구기관들과의 협력과 조정 에 따른 거래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집중형: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부처와 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담당. 이 경우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마. 사후적인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 현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기본 골격은 사전적 법령 심사임. 즉 법령 제개정 이전에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에 필요한 통계지표에 대한 권고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현재의 법령 심사는 입법 예고 기간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지표의 적실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전 법령 중심의 심사 체제에 사후 정책 중심

의 심사를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권고된 정책지표의 활용성 강화: 실질적인 통계기반정책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후(법령 제개정 이후) 실제 권고된 통계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이 과정에서 기권고된 통계지표, 정부업무평가제도 상 정량지표에 대한 검토, 통계개발원의 국가주요지표 등, 관련된 정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 점검을 통해 기권고된 통계지표가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지 검토 가능. 이는 현재의 이행상황 점검의 개편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이행상황 점검은 지표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서 실제 해당 지표가 정책평가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미흡함. 따라서 현재의 이행상황 점검을 통계지표 활용성 점검으로 방향 전환 필요
- 둘째,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 가능성: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가적 차원의 정부성과관리의 핵심 틀임.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각 성과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되는데, 정량지표의 경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와 연계 가능성 높음.

<표 4-24>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미시적 운영 개선 방안

개선 방향	개선 대안	실행 대안	효과	고려사항	극복방안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정책전문성 강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부처통계담당자-부처정책담당자-연구기관(연구원, 대학) 간 협력 강화 및 기능 조정	[1안]부처 통계 개발 계획 강화	부처 통계역량 강화	부처 업무 가중	예산연계
		[2안]평가시 정책 전문가 참여 의무화	지표의 질 강화, 부처 수용성 증진	시간적 제약	법령 평가와 정책평가 이원화
		[3안]통계활용 권고 및 통계 데이터 생산의 엄밀성 평가에 초점	부처 수용성 증진	연구기관과의 협업 문제, 시간적 제약	통계 지표의 질 강조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 기반 강화	인력, 권한, 대상 확대	[1안]인력·예산 확대	통계 지표의 질 강화	통계청 조직 인력계획	행안부, 기재부 협의
		[2안]권한 확대	이행력 제고	부처 반발	부처 지원 강화
		[3안]대상 확대	포괄성 증진	부처 업무 가중, 효율성 문제	대상 한정(예비평가 강화)
부처의 만족도 제고	서비스적 마인드 도입	[1안] 관련 제도 간 연계	부처 수용성 증진	부서 간 칸막이	부서 간 협력과 소통 강화
		[2안] 통계-예산 간 연계	부처 수용성 증진	기재부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통계 예산권 필요성 강조
통계거버넌스의 질 강화	정책연구기관 활용 강화	[1안]분산형(주요 연구기관과 연계)	연구기관의 정책 및 통계 전문성 활용	조정비용, 부처 수용성	통계 지표의 질 강조
		[2안]집중형(담당 연구기관 지정)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문제 극복	부처 수용성	통계 지표의 질 강조
사후적인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강건한 정책지표 관리 강화	[1안]권고된 정책지표의 활용성 강화	정책지표 활용성 증진	조정비용, 부처 수용성	통계 지표의 질 강조
		[2안]정부업무평가 제도와의 연계	적실성 있는 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	국무조정실과의 협력	성과 지표의 강건성 강조

## 2.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가.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 방안

#### ○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의견 반영 강화

- 부처 해당 분야 정책담당자 참여
- 부처 해당 분야 정책전문가 추천(3인)
  - ※ 부처가 통계청에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시 추천 정책전문가 명단 포함
-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서면의견서 제출(5일 이내) 및 종합
-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참여 1회 워크숍(5일 이내)
-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최종의견서 제출(2일 이내)
- 정책담당자 및 정책전문가 최종의견서 검토 및 반영

#### ※ 서면의견의 주요 내용

- 해당 지표가 정책의 집행과 결과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  
(체크리스트 가능)
- 해당 지표 이외에 정책의 집행과 결과를 확인하기에 보다 적절한 지표가 있는가?(주관식)

#### ○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인력 충원

-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대폭 충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전문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부처별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전문가들의 파견이나 인사교류와 같은 다양한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방안

- 첫째, 주요 연구기관을 정책분야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통계심사과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예비심사(대상 평가), 분야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의 1차 평가 결과 검토, 분야별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은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차 평가 결과 도출, 해당 연구기관은 정책전문가로 참여 및 정책전문가 섭외 지원

-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 연구기관을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통계심사과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예비심사(대상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의 1차 평가 결과 검토,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은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차 평가 결과 도출, 해당 연구기관은 정책전문가로 참여 및 정책전문가 섭외 지원

○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시 고려사항

-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 필요함
-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정책전문가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정책전문가 풀이 형성될 것임. 이 경우 정책전문가 리스트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확충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정책전문가의 서면의견에 대한 검토, 정책전문가의 세부 전공과의 매칭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또한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전문기관의 1차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계기반정책평가 최종보고서 평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을 정책분야별로 선정하는 경우 몇 개 정도의 전문기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문기관이 늘어날수록 관리가 어렵고, 너무 적은 전문기관으로는 넓은 정책분야를 고려할 때 정책전문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6~7개 정도의 전문기관 지정이 바람직할 것임

-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과 전문기관과의 기능 설정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관점의 사후적 통계기반정책평가가 강화되는 경우 사전 법령심사와 사후 정책평가를 이원화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은 현재의 사전법령심사 중심으로 수행하고, 전문기관은 사후 정책평가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나. 부처 만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

-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와 통계승인제도 및 통계품질관리제도 간 연계
  -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이용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처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부처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통해 통계개발/개선 권고를 받는 경우 실제 통계개발 과정에서 통계승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통계승인 담당자(혹은 조직)의 입장에서는 통계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생산계획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므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함
  - 심사를 받는 부처 입장에서 이 과정이 중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개발/개선 권고와 동시에 구체적인 개발/개선 계획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처와의 지표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개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법령심사로 인한 시간적 한계로 인해 어려울 것임
  -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계승인 담당자가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야 하지만, 현재의 두 제도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분리 운영되는 현 체제 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개선 권고와 구체적인 승인 심사를 분리하는 대신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임. 즉 하나의 부서에서 통계기반정책평가 기능, 국가승인통계 기능,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임. 이는 조직구조를 고객의 관점에서 프로세스형 조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임

- 다만 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위 차원의 조직이 통계 유형별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산업 분야, 금융 분야, 고용 분야, 사회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통계기반정책평가와 다른 제도 간 연계시 고려사항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와 다른 제도 간 연계와 이를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는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조직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현재의 제도 운용에 비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지표 하나 하나에 초점을 맞추지만 통계승인제도나 품질관리제도는 여러 지표를 포함하는 전체 통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 간 통합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계승인제도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실제 조직의 재구조화와 같은 조직혁신의 경우에는 조직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혁신의 주체와 혁신의 대상 간 의사소통의 부재나 오해 등으로 인해 추진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거나 어렵사리 추진되더라도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대안이 최종적으로 조직 및

조직구성원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시켜야 함. 상호 토론 과정을 통해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가 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분야별 재조직화는 분야 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연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상위 조직에서는 분야 간 연계성이 높은 지표나 통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현재 국가승인통계를 각 분야별 과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일부 분배가 어려운 통계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리고 분야 간 분리 운영으로 인해 하나의 제도가 분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표준화와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 다.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 방안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 첫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해 제시한 정량적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음.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활용
-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다부처 연계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 자체적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현실에서 정량적 성과지표를 파악하기 어려움. 각 부처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성과지표만을 검토할 것이므로 객관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통계청,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시 근거 규정의 마련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할 강화하는 경우 통계법상 통계기반정책 평가제도 규정이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핵심이 될 것임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하는 경우 구체적 실행방안(예시: 중소기업정책)
  - 통계기반정책평가지 참여자와 역할
    - 통계청에서는 통계심사과, 통계조정과, 통계개발원, 중앙정부에서는 정책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노동부), 정책총괄부처(국무조정실), 지방정부에서는 광역(시도) 공무원, 기초(시군구) 공무원, 전문가로서 통계전문가, 정책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 통계청은 평가 및 심사, 부처는 정책 지표 제안,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 등은 자문의견 제시

<표 4-25>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참여자와 참여자의 역할

참여자 구분		역할과 기능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총괄
	통계조정과	국가승인통계 관련 지원
	통계개발원	지표 연구 지원
중앙정부	정책담당부처	정책 지표 초안 작성
	정책총괄부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 지원
지방정부	시도 공무원	정책집행 및 결과 지표 의견 제시
	시군구 공무원	정책집행 및 결과 지표 의견 제시
전문가	통계전문가	통계의 질 전문가 의견 제시
	정책전문가	정책집행 및 결과 지표 전문가 의견 제시
일반국민	일반국민	정책결과 지표 의견 제시

-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주제의 선정 기준
  - 정책적 우선순위: 문제인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속하는가?
  - 결과의 양적 측정 가능성: 정책의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 정책 다부처 관련성: 정책이 다부처가 관련되어 결과 측정이 어려운

가?

·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 중장기적(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정책인가?

- 통계기반정책평가 시행시기

· 단중기(1~5년): 1년에 1~2회 시범 시행

· 장기: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 통계기반정책평가 절차

1. 예비심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 정책 선정

2.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정량지표 검토. 예를 들어 <표 4-26>에서 “법인창업기업수” 지표의 통계적 강건성 검토. 보다 적절한 통계지표, 통계출처 등 제안

<표 4-26> (구)중소기업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예시(2015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 고
				정량 화	성격	
<b>I.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b>						
1. 쉽고 편리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① 법인 창업기업수 (개)	법원행정처에서 매달 발표하는 신설법인동향 근거	77,129	정량	산출	
2. 중소지식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한다	① 지식서비스 지원사업 만족도(점)	( $\sum$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지원업체 정책고객 만족도)/( $\sum$ 지원사업 수)	82.3	정성	결과	
3. 벤처기업 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한다	① 벤처펀드 조성 규모(억원)	펀드투자 통계	20,000	정량	산출	
4.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 성장을 촉진한다	①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율(%)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3.3	정량	산출	

자료: 중소기업청(2015: 262)<sup>35)</sup> 발췌

-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고려사항
  - 정책의 성과에 대한 합의: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구분
  - 성과 측정 지표 및 지표 관련 데이터 생산계획 합의
  - 결과 지표의 경우 정책의 시행이 결과에 이르는 시간 고려 필요

###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단계별 실행 전략

- 이러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은 단계별로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우선 1단계에서는 정책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고 정책분야별 조직 재구조화를 실현해야 함. 이는 현재의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바로 실현이 가능함. 다만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나머지 대안에 대하여는 이 단계에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채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계획,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계획이 이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함.
- 2단계에서는 시범 사업이 이루어짐.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과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통계기반정책평가 관련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됨
- 3단계에서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이 이루어짐

---

35) 중소기업청(2015).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표 4-27>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단계별 실행 전략

단계	내용
1단계(1~2년)	정책전문가 활용 확대,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책분야별 조직 재구조화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계획 수립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계획 수립
2단계(3~5년)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시범 실시
	통계기반정책평가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연계 강화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시범 사업 실시
3단계(6~10년)	정책분야별 전문가 임용 확대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기관 지정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계 확대

#### 4. 소결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증거기반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
  - 통계청의 미션은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며, 비전은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해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임<sup>36)</sup>
  - 이는 통계가 정책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작동할 때 가능한데, 정책의 실질적 기반으로서의 통계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실제 판단할 수 있는, 즉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증거기반정책 논의에서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정책과 관련된 실험이나 회귀불연속설계, 집단분석, 패널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책효과에 대한 증거를 만들고 그 증거에 따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정책에 도움이 되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하는 것임

36)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2018년 10월 6일 검색)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이러한 증거기반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할 필요
  - 현재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사전 심사, 법령 심사의 한계로 인해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심사, 직접적인 정책 심사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이 매우 중요함
  -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채용하며, 특히 정책전문성과 통계전문성을 모두 갖춘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강화 방안의 연장선임
- 그러나 통계기반정책평가조직의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전문성을 각 부처가 만족할 정도로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통계거버넌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통계청의 역할은 통계의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질 것임. 특히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의 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부부처가 없다는 점에서 통계청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국가데이터관리에 있어 통계청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우 현재 기관의 위상도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통계승인제도와 품질관리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임
  - 현재의 승인제도나 품질관리제도는 통계생산 방식이 초점이 되고, 통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음

- 증거기반정책 관점에서 통계 중심에서 지표 중심으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임. 통계생산 방식뿐만 해당 지표의 강건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 통계기반정책평가에서는 승인통계의 지표를 활용하여 권고하고, 해당 지표가 없는 경우 개발을 권고하며, 새로 개발된 지표는 국가승인으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품질관리제도에 의해 지표가 관리되도록 하는 것임

제 5 장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



## 제1절 정책과정과 선순환 체계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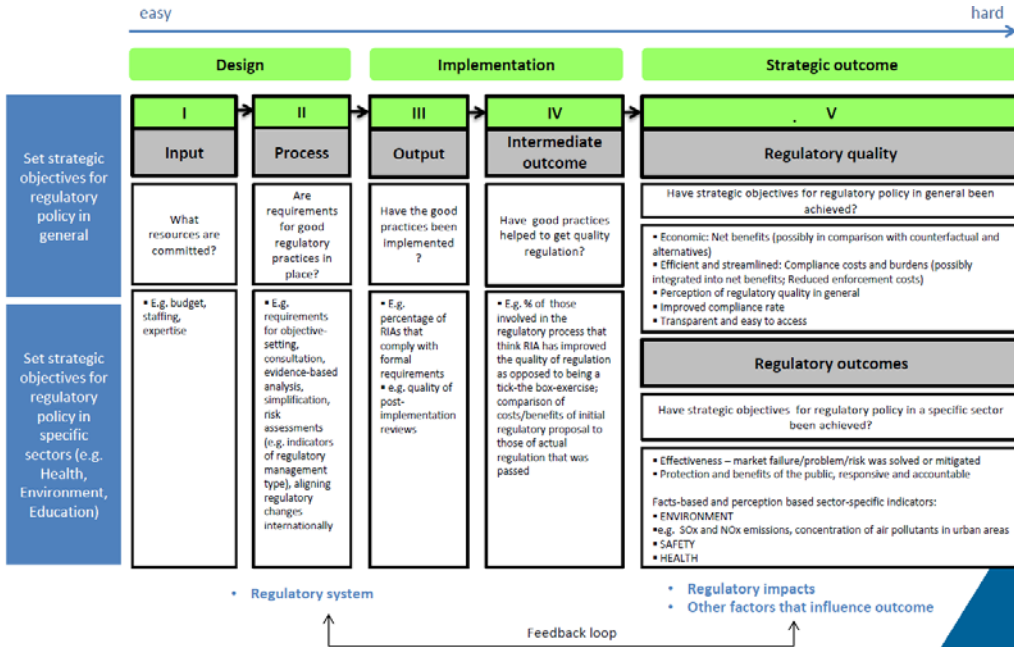
- 정책과정은 정책적 이슈를 파악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를 결정, 목표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계획단계,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실행단계, 이를 평가하는 정책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책과정의 선순환 구조라 함은, 정책평가 후 생산된 결과 등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전달되어 피드백(feedback)이루어지고, 관련 정책의 계획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환류과정이라 할 수 있음
- OECD는 규제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정책 계획-실행-성과의 세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로 정책을 평가함<sup>37)</sup>
  - 계획단계의 평가에서는, 규제 정책을 위해 예산 등의 자원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또는 증거기반 분석 및 위험성 추정 등 정책의 실행에 대한 준거점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실행단계에서는, 규제정책의 산출물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실행
  - 성과단계에서는, 규제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규제에 따른 영향력 및 결과 측정 및 규제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실시함
  - 성과 단계에서, 정책 결과와 기타 성과 요인들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

37)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는 규제나 간섭 등과 관련된 정책. 규제정책은 일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특정 활동은 규제나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내용은 규제 받는 행위의 종류, 피(被)규제자의 특성, 시행절차 상의 제약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규정정책은 성격에 따라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과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으로 구분한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새정보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인용). 통계법도 정확한 통계 생산을 통해 통계이용자(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1] OECD 규제정책 평가의 선순환 구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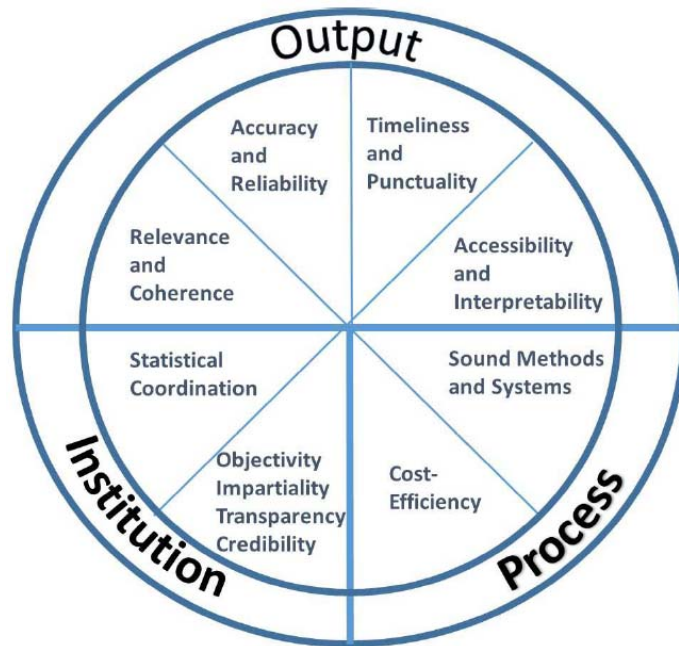


자료: Christiane Arndt(2014). OECD Framework for Regulatory Policy Evaluation. 6th Expert Meeting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OECD p.6.

- 통계관리체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생산하는 통계 품질의 제고이며, 이는 통계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을 지향함
- 최근 UN이 발표한 통계품질보장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통계 품질은 크게 기관, 과정, 산출물로 구분
- 관련성, 정확성, 적시성 등 산출물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와 통계조정이 가능한 기관간 협력, 적절한 방법론과 시스템을 통한 비용효율 관점의 과정도 중요 요소임을 강조
- 국가통계의 선순환도 해당 제도(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련 조직 개선과 전담인력의 확충, 국가

통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관련 기관간 협업 제도화로 통계관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그림 5-2] UN의 통계 품질의 구성과 차원



자료: UN(2018). UN Statistics Quality Assurance Framework.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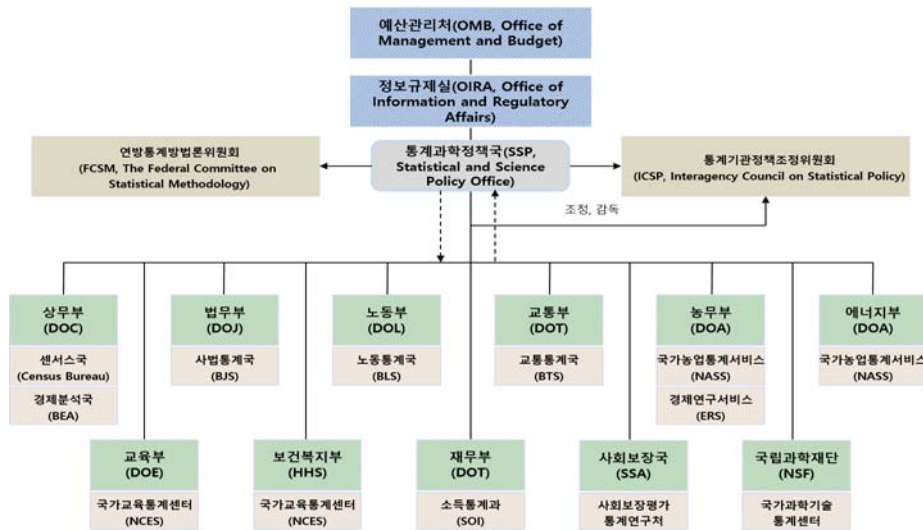
## 제2절 주요국의 선순환 구조 사례

### 1. 미국

#### 가. 통계 제도

- 상무부 센서스국과 경제분석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농무부 국립농업통계서비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통계센터, 법무부 통계국, 교육부 국가교육통계센터 등 13개 연방 통계 전담 기관이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제도 운영
- 상무부 센서스국이 인구통계를 비롯한 무역 등 주요 경제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6개의 지방사무소를 설치, 지역통계센터 역할 수행
-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통계수석(Chief Statistician of the United States)이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통계의 중복, 통계기준 일치 등 총괄조정기능 수행

[그림 5-3] 미국의 통계 관리 체계



자료 : 정용찬 외(2017).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부처가 해당 분야의 통계 생산을 전담하는 미국은 각 부처 통계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
  - 상무부의 경우 자문위원회 이외에 센서스 통계연구 및 방법론 센터를 통해 조사에 필요한 방법론 관련 전문가와 협업 진행

〈표 5-1〉 미국 주요 통계 분야별 협업체계

부처	담당 조직	전담 통계 및 지원기관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li> <li>• 센서스국 (Census Burea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분석국 자문위원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dvisory Committee)</li> <li>• 센서스 통계 연구 및 방법론 센터 (Center for Statistical Research and Methodology)</li> <li>• Federal Economic Statistics Advisory Committee</li> </ul>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교육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li> </ul>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deral Economic Statistics Advisory Committee</li> <li>• Bureau of Labor Statistics Technical Advisory Committee</li> </ul>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보건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li> </ul>

주: Federal Economic Statistics Advisory Committee는 BEA, Census, Department of Labor의 통계관련 이슈 및 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자료: 각 담당조직 및 통계기관 사이트 참고 (사이트 방문일자 2018.10.15.)

- 통계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미국은 인구총조사(Census)에 관한 별도법이 유일하며, 관리예산처(OMB)의 통계 조정권한을 명시한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통계 조사 과정상의 정보보호를 다룬 정보보호와 통계효율법(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해당 기관이 배포하는 정보의 객관성, 효용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정보품질법 (Information Quality Act, 일명 데이터품질법) 등이 있음

<표 5-2> 미국 통계 관련 법령

법령 및 시행령	주요 내용
Title 13 Census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총조사국의 조직과 인력, 통계 수집 및 공표, 인구총조사 방법, 위반 및 벌칙, 총조사를 위한 정보 교환 등 인구총조사 법규 수록</li> </ul>
Paperwork Reduction Act,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 정보수집 방지 및 문서 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자료의 공동 사용을 유도함</li> <li>통계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산관리처의 책무를 명시. 관리예산처는 이 법의 의거 통계 예산을 검토하고,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통계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li> </ul>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된 응답자의 정보, 조사 모형 설계 및 표본의 설정 시 요구되는 정보 등을 보호하여 응답자의 신원파악이 불가능하도록 비밀보장을 강화</li> </ul>
Information Quality Act,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관리처 및 유관기관은 통계 품질, 객관성 및 활용도 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정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할 할 의무가 있음</li> </ul>
Memorandum-15-15, Improving Statistical Activities through Interagency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개의 주요 연방통계 작성기관 및 모든 통계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제시</li> </ul>
Memorandum-14-06, Guidance for Providing and Using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적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시</li> </ul>

자료: 통계청(2016), 이재형 외(2017), Wikipedia.org

## 나. 통계 조정

- 분산된 연방통계시스템의 통계정책, 기준, 예산 및 운영의 총괄·조정을 위한 책임과 법적 권한은 대통령 행정실내 관리예산처(OMB)에 있음
  -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의 통계 수석은 정부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 업무 담당
  - 문서감축법(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과 예산회계절차법(The 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 of 1950)에 근거하여 관리예산처는 통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예산 심의 및 분류, 발간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통계기관의 평가, 통계 정보 공유 활성화, 국제 통계활동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
  - 통계수석 외에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소속으로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를 2015년에 신설, 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기울임
  - OMB 내 통계수석과 통계 및 과학정책과는 각 통계작성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를 검토·평가하여 연방통계예산 전체 우선순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배정하여 통계의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계조정을 하고 있음
- 연방통계정책협의회(The Federal 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
  - OMB의 연방통계시스템 조정 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통계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되어 OMB와 더불어 통계생산 과정을 감독·관리하고 통계 생산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
  - 민간부문 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를 촉구하고, 민간자료 이용에 따른 통계산출물의 품질 개선 및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며, 연방통계기관에서는 이 같은 활동내용을 연례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표함

## 다. 통계 개혁

- 연방통계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연방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표본 조사는 비용의 상승, 응답률의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
  - 미국의 가계조사 응답률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인 유인, 조사의 반복적 시도 등이 시행되지만 성공률은 높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 자료 활용을 강조한 연방통계 혁신 보고서를 2017년 채택
    - ※ 우리나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응답 거부율도 2007년 17%에서 2014년 22.5%로 증가
- 연방통계 혁신보고서(*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2017
  - 미국 연방통계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sup>38)</sup> 연방통계 혁신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수의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기록 (*administrative records*)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행정기록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므로 통계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진단 등이 필요하며 기관 간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수적. 이와 함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이 매우 중요
    - ※ 덴마크 통계청은 연구와 통계 목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보안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영국도 행정자료연구네트워크

---

38) Norwood(1995)는 연방통계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예외 없이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 또는 분산시스템의 조정기능 강화를 권고했지만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등 분산형 통계생산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임(정용찬, 2018. 원 출처는 *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2017).

(ADRN,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를 통해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 사회 연구에 필요한 비식별 자료를 보안서버를 통해 제공

- 행정 자료 이외에도 민간의 빅데이터 자료 활용이 필요. 민간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비식별화 등 프라이버시 문제뿐 아니라 비용 지불, 민관파트너십 등 기업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책이 필요

#### 라.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 미국은 정부통계를 연방통계(**federal statistics**), 또는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승인(지정)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음
  - **OMB**가 예산을 통해 국가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조정·통제를 시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통계승인제도가 작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 **OMB**는 통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조사계획서를 검토하며 각 부처의 통계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평가함
- 미국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증거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에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The 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를 설치
  -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 고품질의 증거생산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회와 대통령은 2016년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립함
  - 신설된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는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행정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생성능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정용찬, 2018)

- 위원회는 통계 목적으로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획득, 결합 업무를 담당할 국립데이터서비스청(NSDS, National Secure Data Service) 신설을 제안
  - 데이터 저장소가 아닌 자료의 연계 작업을 담당할 국립데이터서비스청의 설립으로 증거구축을 위한 자료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적화되지 않은 미국 현행법과 관행으로 파생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의 증거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부처에 평가 및 정책연구를 조정하고 부처 내 다른 증거구축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는 최고평가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자리를 신설할 것을 권고
  - 관리예산처(OMB)의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증거구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예산처의 통합 또는 재편도 필요함을 제시
  - 수집된 정보의 승인 및 증거구축을 위한 서비스조달을 비롯해 증거구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증거구축 활동에 부합하도록 조정
- 미국은 성과 관점에서 통계 품질진단 체계 재정립을 시도
  - 미국 통계정책협의회(ICSP, 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는 연방 통계기관의 통계사업 품질평가 기준을 사업 성과(Program Performance) 관점에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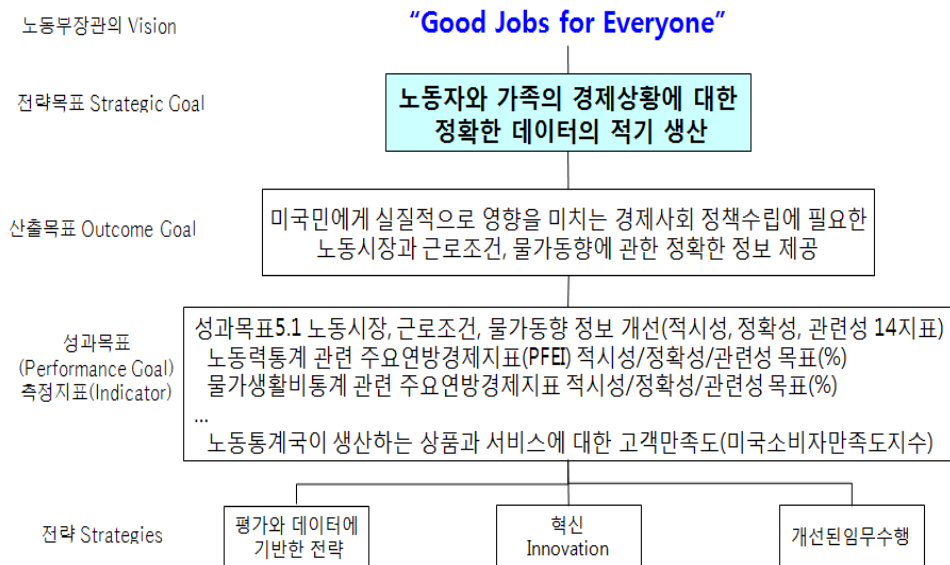
<표 5-3> 미 연방 통계기관의 통계사업 품질평가 기준

구분	내용
품질 기준 (Product Quality)	- 관련성(Relevance) - 정확성(Accuracy) - 적시성(Timeliness)
사업 성과 (Program Performance)	- 비용(Cost) : 생산비용, ROI, dollar value of efficiency - 전파(Dissemination) : 다운로드횟수, 인용횟수, 사용자기술지원, 장애자 접근성 - 임무달성(Mission Achievement) : 통계사업에 대한 효과/만족도

자료: 정용찬 외(2015), ICT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65. 원 출처는 "Strengthening Federal Statistics" from the FY 2008 Budget-Analytical Perspective Section 4(Feb. 2007),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http://www.whitehouse.gov>

- 미국 노동통계국의 경우 장관의 비전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Performance Goal)와 산출목표(Outcome Goal)를 수립, 통계 작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성과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 운영

[그림 5-4] 미국 노동통계국 성과목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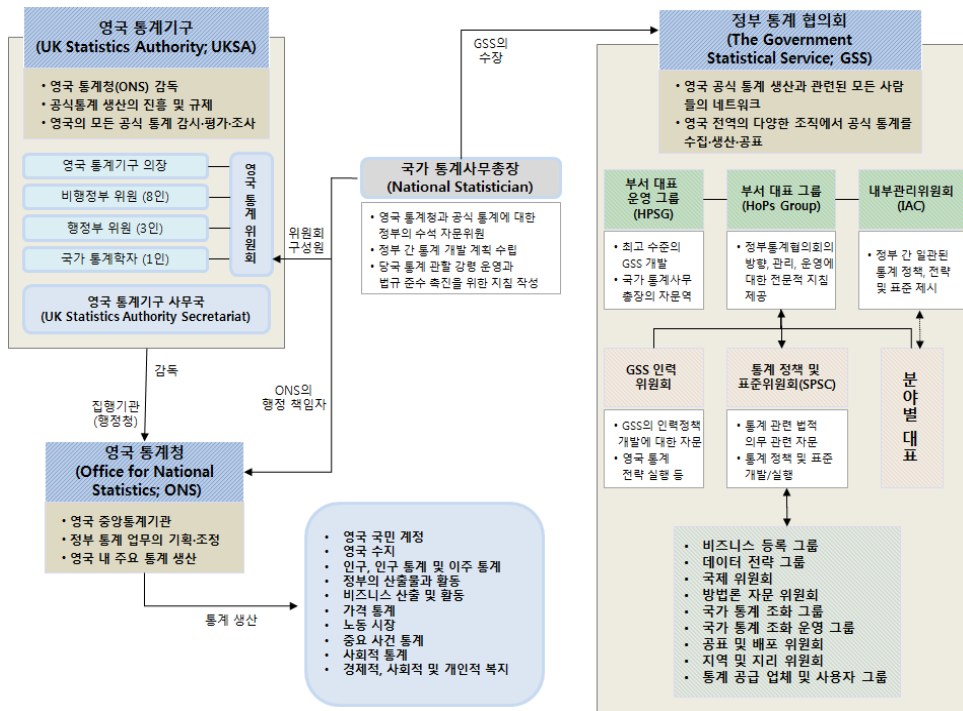
자료 : 정용찬 외(2015), ICT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65. 원 출처는 "FY2012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p.7. 노동부의 전략목표 수는 5개이며 세부 성과목표는 14개로 구성. 전략목표5(strategic Goal 5)가 노동통계국에 해당함.

## 2. 영국

### 가. 통계 제도

- 영국 통계 시스템은 통계위원회(UKSA, UK Statistics Authority)가 국가 통계 관리를 총괄하며, 중앙통계기관이자 집행기관인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공식 통계 작성을 담당
- 정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은 정부통계서비스(GSS,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라는 개념으로 요약되며, 이를 통해 부처가 생산한 공식통계를 제공

[그림 5-5] 영국의 통계 거버넌스 구성



자료 : 정용찬 외(2017).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 미래지향적 통계 조직 구조 설계 위해 비부처형 독립 통계위원회 (Independent Statistics Board) 제안
  - 독립 통계위원회의 목적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공식통계 (Official Statistics)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공식 통계의 포괄 범위를 확장하고 품질을 보장
  - 통계 데이터의 비밀보호 원칙과 부처와 위원회 간의 통계적 목적의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
- 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 2008
  -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2007에 의거 의회를 지원하는 비부처형 독립 기구로 설립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모든 공식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공식 통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관리 감독
- 공식통계 실행 규약(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 2009
  - 정부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통계 작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2007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으며 8대 원칙으로 구성
  - 특히 제6원칙은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생산으로 인한 부담이 통계 이용으로 파생되는 효용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하는 비용 관점의 균형 감각(Proportionate Burden)을 제시
  - 실행전략으로 1. 생산 비용 추정액 매년 보고하고 비용 절감 방법 개발, 2.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협조에 의한 통계 조사 추구, 3. 행정 자료의 통계적 목적을 염두에 둔 적극적 행정 체계 설계, 4. 잠재적인 효용보다 새로운 데이터 취득에 따른 비용 분석, 5. 새로운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현존하는 데이터와 추정기법을 평가할 것을 명시

※ 8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제1원칙: 사용자 요구에 부응, 제2원칙 (Impartiality & Objectivity):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 제3원칙(Integrity): 생산, 관리, 전파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초, 제4원칙: 적절한 방법론과 품질 보증, 제5원칙: 개인(기업) 정보 보호, 통계 목적으로 활용, 제7원칙: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 관리, 제8원칙: 정직성과 접근성

○ 통계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 2018)

- 영국 통계청은 통계의 신뢰(Trustworthiness), 품질(Quality), 가치(Value)를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통계 실천규약을 개정
- 공식 통계 작성자에게 공식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 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세부 관행을 제공하여 정부가 발간한 통계가 신뢰성을 입증하고 대중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고품질의 통계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도록 보장
- 실천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국가통계의 지정 및 취소의 근거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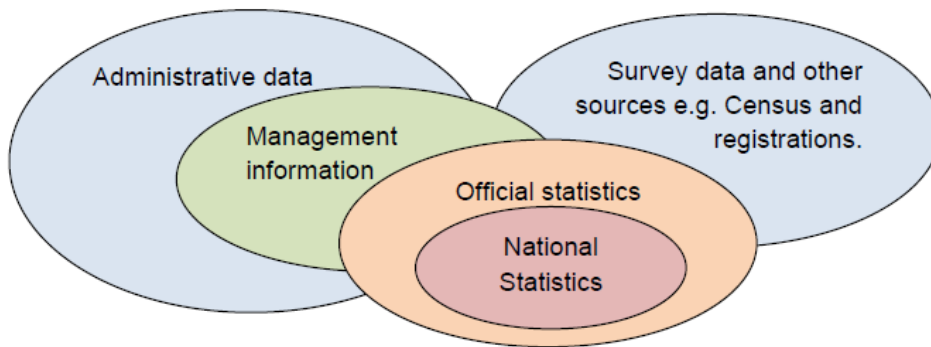
[그림 5-6] 통계실천규약의 기본 개념



## 나. 통계 조정

- 정부통계서비스(GSS)는 50개 기관의 통계책임관으로 구성된 정책관리 위원회(의장: 통계청장)와 4개 분과위원회(정보시스템, 자료배포, 경제 통계, 사회통계)가 설치되어있어 이를 통해 조정활동을 수행
- 통계청(ONS)은 영국의 통계기관을 대표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 정부통 계기구(GSS) 업무의 기획·조정을 담당함
  - 통계청(ONS)에서 제정하고 있는 국가통계실천규약(National Statistics Code of Practice) 및 국가 통계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National Statistics)를 통해 통계 조정활동을 수행함
  - 통계생산과는 별도의 기관이 국가통계의 종합조정 및 관리를 담당하 고 있음
  -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와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sup>39)</sup>를 구분하 고 있으며, 공식통계 중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을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 공식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

[그림 5-7] 영국의 수량적 정보(Numerical Information) 구분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8),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Manage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Statistics.

39) 1) 국가통계, 2) 국가통계가 아닌 GSS에 의해 생산된 통계, 3) GSS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않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통계, 4) 이차적 법규에 포함된 비정부기구에 의해 생산된 통계

## 다. 통계 개혁

- 영국은 2014년 발표한 국가통계전략 2015-2020(Strategy for UK statistics 2015 to 2020)에서 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와 GSS, 통계청(ONS)이 영국 통계 조직의 근간임을 밝히고 증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은 사회와 거버넌스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
  - 보고서의 부제인 ‘더 좋은 통계, 더 좋은 정책(Better Statistics, Better Decisions)’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 강화(Helpful), 전문성(Professional), 혁신(Innovation), 효율성(Efficient), 역량 강화(Capable)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
  -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2021 온라인 센서스 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데이터 자동수집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통계혁신을 도모할 것을 선언
- 영국 정부는 2005년 ‘기술 기반 정부혁신(Transformational Government: Enabled by Technology)’, 2010년 ‘ICT 정부 전략(Government ICT Strategy)’, 2012년 ‘디지털 정부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 발표를 통해 ICT변화에 부합하는 정부 혁신 전략을 지향하였으며 2017년 이와 맥을 같이하는 정부혁신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을 발표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의 효율적 혁신 천명과 함께 투명성 확보와 정부와 민간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활용 강화를 강조
  - 데이터 활용 전략으로 API를 활용한 정부 데이터의 대내외 공개,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조직 간의 장벽 제거,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 내 최고데이터책임관(Chief Data Officer) 임명,

범정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Data Advisory Board)의 설치, 의사결정 시 데이터 활용 위한 정부의 데이터 사이언스/분석 능력 강화를 제시

○ 디지털 경제법 (The Digital Economy Act 2017)

- 2015년 영국은 통계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공식통계 작성 담당자의 정보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법을 제정
- 연구 목적과 통계 작성을 위한 국세 정보 등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와 통계위원회의 포괄적 정보접근권을 법제화(정용찬, 2018). 이 법 제정 이전에는 교육 정보의 공유를 위한 법 개정애 24개월, 부가가치세 정보 공유에 필요한 법 개정애 20개월 등 필요 통계가 발생할 때마다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을 개별적으로 개정(UK Statistics Authority, 2016)
- 개정 디지털 경제법은 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은 제외)이나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위원회의 정보 공개 요구 권한을 명시(제80조)

<표 5-4> 영국 부처 소유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개정 소요 기간

데이터	담당 기관	소요 기간 (개월)
School Census, National Student Database	Department for Education	24
Student Demographic Information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22
Pupil Level School Census for Wales	Welsh Government	18
VAT Information	HM Revenue and Customs	20
Customer Information System Data	HM Revenue and Custom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3

자료: UK Statistics Authority(2016). Delivering better statistics for better decisions, Why we need new legislation for better access to data.

라.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 영국 통계법은 국가통계를 포함한 공식통계와 정부 정책 및 통계품질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
  -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통계 작성의 목적을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공공 정책의 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정부 정책이 통계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
  - 법 제8조에서는 공식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과정을 통해 품질에 대해 해당 통계책임관에게 고지할 수 있음을 명시
  - 또한 제13조 통계실천규약 준수 의무와 제14조 재평가 규정에 의거 국가통계가 통계실천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 승인을 취소해야함을 규정

<표 5-5> 영국 통계법의 국가통계와 통계품질간의 연계 조항

법조문과 주요 내용
<p>제7조. 목적(Objective)</p> <p>(1) 위원회는 제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직무를 행사할 때 공익에 도움이 되는 공식 통계의 작성과 발표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2) (1)항에서 언급한 공익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li><li>(b) 공공 정책의 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li></ul> <p>(4) 본 절에서 공식 통계의 품질은 다음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 공정성, 정확성 및 관련성</li><li>(b) 다른 공식 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li></ul>
<p>제8조. 공식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of Official Statistics)</p> <p>(1) 위원회는 공식 통계의 작성 및 발표를 감독한다.</p> <p>(2) 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우려를 해당 통계책임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 공식 통계의 품질</li></ul>
<p>제12조. 평가(Assessment)</p> <p>(1)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통계위원회는 공식 통계가 제10조의 통계실천규약을 준수되</p>

---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 (2) (1) 항에 의거하여 통계위원회가 통계실천규약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통계를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해야 한다.
- (3) (1)항에 따른 요청은 철회할 수 없다.
- (4) (1)항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식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5) 위원회는 (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 (6) 위원회는 (1)항에 따른 직무를 행사할 때 모든 개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조언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3조. 통계실천규약 준수 의무(Duty to Continue to Comply with Code)

- (1) 제12조에 따라 국가 통계로 지정된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통계실천규약이 지속적으로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통계와 관련하여 (1)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제14조에 따라 통계의 지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14조. 재평가(Re-assessment)

- (1)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이미 국가 통계로 지정된 통계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통계실천규약이 지속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국가 통계로 이미 지정된 통계와 관련하여 규약을 계속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통계는 국가 통계로 지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3) (1)항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식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위원회는 (1)항에 따른 직무를 행사할 때 모든 개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조언을 고려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 (6) 통계의 국가통계로의 지정은 (1)항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다.

---

제15조. 평가 프로그램(Programme of assessment)

- (1) 위원회는 제12조 (1)과 제14조 (1)에 따른 통계의 평가 및 재평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

- 
- 통계위원회 산하 통계규정국(Office for Statistics Regulation)은 정부에 의해 생산된 통계의 신뢰도, 품질,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

- 국가통계로 지정을 위한 평가(Assessment) 이외에 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인 적합성 점검(Compliance Checks), 통계의 공공 가치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검토(Systemic Reviews), 통계의 보급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모니터링하는 사례검토(Casework)로 구성<sup>40)</sup>

<표 5-6> 정부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 위한 다양한 절차

구분	내용
평가 (Assessment)	통계실천규약(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 준수에 대한 공식통계의 평가. 통계가 통계실천규약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국가 통계로 지정. 이는 그 통계가 신뢰도(Trustworthiness), 품질(Quality) 및 가치(Value) 관점에서 최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
적합성 점검 (Compliance Checks)	평가보다는 간소한 절차를 거치는데, 해당 통계가 신뢰도, 품질 및 가치 측면에서 최고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토 수행
시스템적 검토 (Systemic Reviews)	통계의 공공 가치를 개선하거나 특정 통계 문제를 검토할 목적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
사례검토 (Casework)	통계의 보급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 통계규정국(Office for Statistics Regulation)은 통계실천규약(Code of Practice for Statistics)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통계를 평가하여 통계 생산자에게 제공
  - 공식 통계가 특정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통계 상태를 취소하고 개선된 후 재심사하여 재등록
  - 2018년에는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서에서 제작 한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스 통계 등 3종의 통계의 국가통계 지정이 최소 되었으며, 2014년 최소된 NHS Digital에서 작성한 정신 건강법 통계, 연간 수치 등 2종의 통계가 재지정됨

40)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osr/what-we-do/> (검색일: 2018.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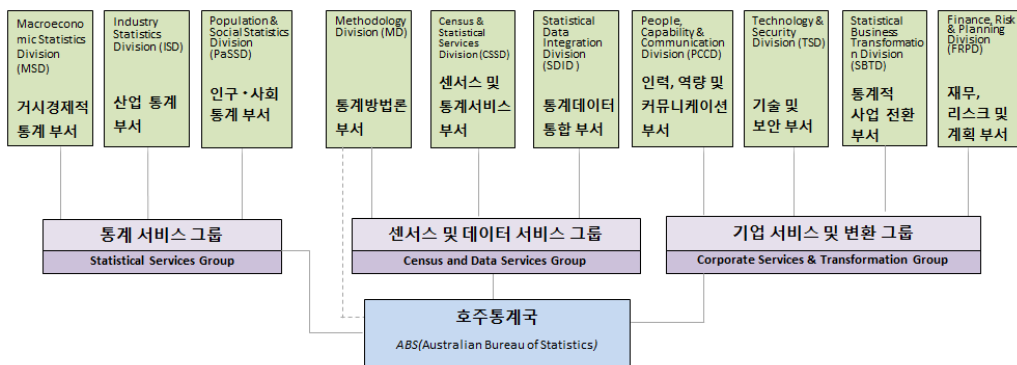
- 영국 통계청은 평가 보고서(Assessment Report) 등 국가통계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들과 피드백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공개

### 3. 호주

#### 가. 통계 제도

- 호주는 통계제도 분류상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계생산 및 기타 통계 관련 서비스는 중앙통계청인 호주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수행함
- 호주의 통계조직은 중앙통계국과 지방통계국으로 구분되고 각 지방 통계국에는 6개주(Province)와 2개 지역(Territory)의 8개국으로 각 주의 지명에 따라 명명됨

[그림 5-8] 호주 통계청 조직도



자료: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abs.gov.au/websitedbs/d3310114.nsf/home/ABS+Organisation+Chart!OpenDocument>)

- 호주의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집중형 통계제도이긴 하지만 지역통계작성시스템이 독립적이며 주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임으로서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체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

○ 통계 업무 변환 프로그램 (SBTP, Statistics Business Transformation Program)

- 호주 통계청은 2014-15년을 시작으로 통계 업무 변환 프로그램 (SBTP, Statistics Business Transformation Program)에 2억 5,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통계 인프라를 현대화 하고 통계 자료의 적시성, 관련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를 진행 중

<표 5-7> SBTP의 주요 내용

- 환경 -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현재 및 미래의 외부 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
- 전략 - 우리의 전략은 엄격한 통계, 강력한 파트너십 및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
- 거버넌스 - 기업의 대응적 의사 결정, 우선 순위 결정 및 관리를 지원
- 인력 -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동기가 부여되어있는 인재 확보
- 문화 - 높은 성과, 연계성, 참여도, 혁신성, 책임성에 중점
- 인프라 -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응력이 뛰어난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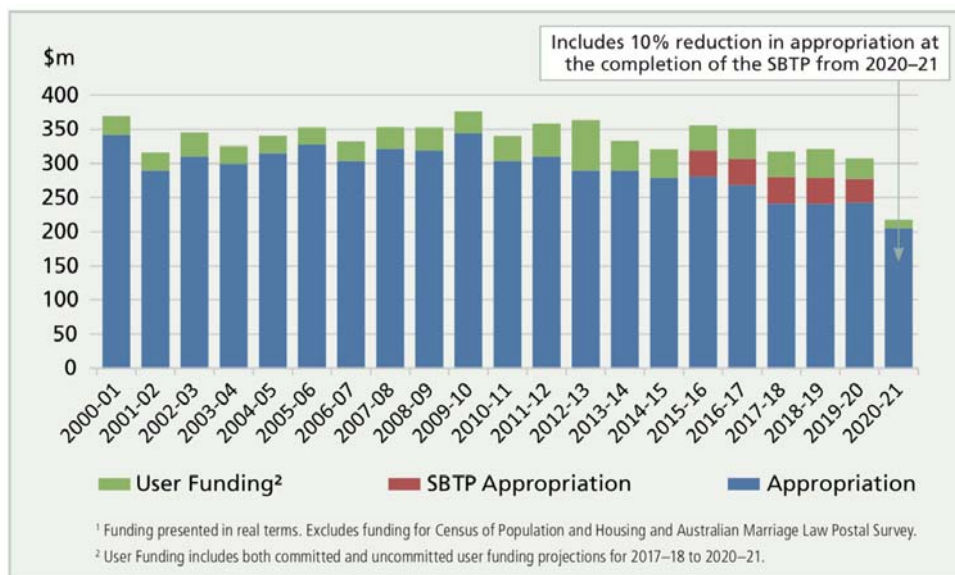
○ 호주 통계청 운영 예산 (2017-18)

- 지난 20년간 평균 연간 예산은 약 2.9억 달러였으며 그 중 3,600만 달러는 이용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이고 이는 SBTP를 통한 예산 지원, 인구총조사, 호주 혼인법 우편조사 (Australian Marriage Law Postal Survey, 예산규모 1220만 달러)를 제외한 규모임
- 호주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SBTP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계 생산 과정과 전달을 효율화하고, 노후화 되는 통계 생산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2020년부터 호주 통계청 예산은 10% 삭감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17%정도의 인력 감축을 앞두고 있음
- DIPA (Data Integration Partnership for Australia) 이니셔티브를 통해 복잡한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게 기존 공공 부문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사용하기 위해 조정된 범 부처적의 접근 방식을 도입
- 호주 정부는 1) SBTP가 진행되는 5년간 2억 5700만 달러, 2) DIPA 이니셔티브 예산의 일부인 3,770만달러를 호주 통계청에 투자

[그림 5-9] ABS Funding, 2000-01 to 2020-21

Chart 1: ABS Funding, 2000-01 to 2020-21<sup>1</sup>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Forward Work Program, 2017-18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006.0-2017-18-Main%20Features-Resource%20Context~2>)

- 호주통계청의 예산은 55%를 경제, 환경 통계 생산, 25%를 인구, 사회 통계 생산 (가구소비조사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소득 및 주거조사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종합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 20%를 통계 방법론등과 같은 통계 인프라 구축에 할당

## 나. 통계승인제도

- 호주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되는 사업체관련조사는 통계 승인실(SCH, Statistical Clearing House)의 승인이 필요함
- 승인절차는 통계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설계와 조사과정의 적합성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이 목적
  - ※ SCH는 호주통계청(ABS) 방법론과(Methodology Division) 내(Section, 직원 3명)에 해당되는 조직임
- 승인 관련절차
  - 50개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연방부처(ABS포함)는 조사 실시 20일(근무일수 기준)전까지 조사계획 등 관련 서류를 SCH에 제출
    - ※ 인구, 가구,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검토대상이 아님
  - SCH는 조사기획, 조사 필요성, 다른 자료의 활용가능성, 표본설계, 조사표(안), 조사방법, 응답부담의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
  - 승인을 받으면 조사표에 승인번호를 인쇄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사는 중지됨
  - 조사기관은 조사 후 응답률, 자료의 질 등 제반사항을 SCH에 제출
    - ※ 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3년마다 승인여부를 재검토
- 조사연락관 제도
  -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통계와 관련하여 SCH와의 접촉을 위해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연락관(Survey Liaison Officer, 1~2명씩)을 임명
  - 조사연락관은 총 40명 정도로, SCH가 연 3~4회 소집하여 통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조를 요청

## 다.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 호주통계청은 호주통계청법(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ct

1975)을 근거로 호주통계자문회의(ASAC, Australian Statistics Advisory Council)를 설립

- ASAC의 미션은 국가의 우선 순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연관성이 있는 시기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통계 자산의 효과적인 개발에 기여함
  - ASAC는 호주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생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호주통계청에 전달
  - 또한, ASAC는 호주 통계청이 통계관리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 승인통계와 통계예산의 연계
- 호주의 승인통계와 예산 연계(FWP, Forward Work Program)는 승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큼
  - FWP는 통계생산 및 관리에 관한 분야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통계청의 관련 자원을 할당하고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
  - 16-17년 학계, 산업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호주통계자문회의 (Australian Statistics Advisory Council), 경제통계자문단(The Economic Statistics Advisory Group), 인구사회통계자문단(The Population and Social Statistics Advisory Group), 그 외 관련된 연방 및 지방정부 관계부처가 모여서 우선순위를 논의
  - FWP는 Tier 1 경제, 인구, 가구소득 및 소비, 통계 인프라 구축에 해당되는 통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Tier 3에 해당하는 통계들은 작성을 중단하거나 사용자 자금 조달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권고

-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통계를 강화하고, 경제, 환경 분야의 새로운 통계 생산하는 것에 역점 (새로운 재정통계의 생산, 수출입 동향 자료 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자연환경에 대한 통계 및 행정자료의 강화, 암초지도와 같은 새로운 환경관련 계정생산)

<표 5-8> 호주 통계청 FOWARD WORK PROGRAM의 구성

1단계(Tier 1)	국가 통계 조직의 기초 작업으로 간주되는 통계 : 국민계정, 산업지표, 재정, 고용, 노동, 인구, 소비지표 관련
2단계(Tier 2)	상당한 정부지출이나 공공 정책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중요한 통계분야 : 국민계정, 산업지표, 환경, 고용, 노동, 사회, 보건, 이민, 지역 관련
3단계(Tier 3)	현재 1, 2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다른 중요한 통계 작업 : 교통, 관광, 범죄, 문화, 교육, 보건, 지역, 사회 관련, 통계적 방법론
근본 역량	양질의 국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제도적 통계 및 기타 기능. 이러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우선 순위가 매겨짐 : 통계적 방법론, 자료 통합, 변환, 통계 인프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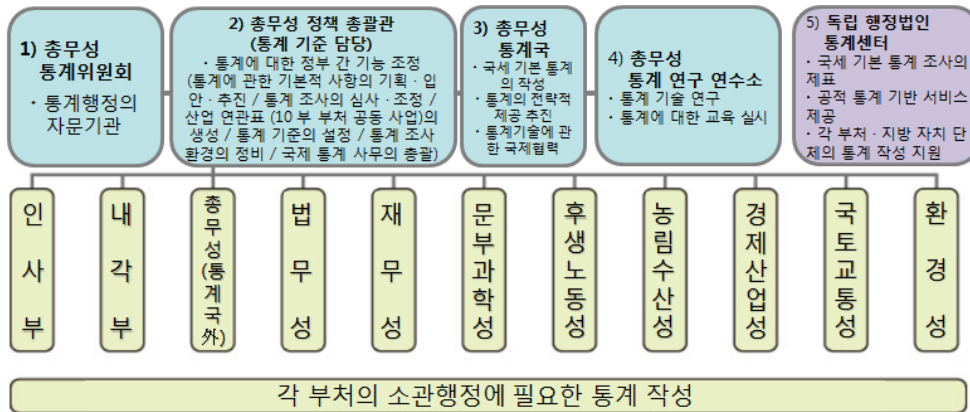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7), Forward Work Program

## 4. 일본

### 가. 통계 제도

- 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업성 등 부처별로 소관 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 조직을 운영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
- 중앙통계기관은 총무성 통계국으로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인구조사 등 중요 통계조사 실시
  - 통계국 업무는 ① 기본적인 국가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의 기획과 실시, ② 통계정보의 전략적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 ③ 센서스 조사, 주요 경제통계, 인구추계와 같은 가공통계 등의 통계조사를 기획·입안·실시, ④ 국가의 정보기반이 되는 통계정보를 제공, ⑤ ICT 발전에 따른 통계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종합 통계보고서 편찬 등이 있음
- 일본 통계제도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통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로, 중앙부처는 각자의 통계작성을 기획관리하며, 지자체는 대부분의 조사 통계에서 조사기능을 담당함
  - 국민계정을 담당하는 내각부, 공업통계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종합 통계조정 및 사업체통계를 담당하는 통계국이 있음
- 일본의 통계제도는 「통계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07년 전면 개정을 통해 크게 재정비 되었고, 2011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일본 내각은 '공적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실시함
  -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계의 상호 정합성 확보 및 개선, ②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의 확보 및 개선, ③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④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작성 추진, ⑤ 통계 데이터의 개방화와 통계 작성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음
  -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공적통계로 부르며 공적통계 중 중요한 통계를 '기간통계'로 지칭

[그림 5-10] 일본의 통계 관리 체계



자료 :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go.jp/info/guide/pamphlet/index.html#p0102>) 번역.

### 나. 통계 조정

- 중앙통계기관인 총무성 통계국이 통계에 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조정 수단으로 ‘통계승인 제도’, ‘감사제도’, ‘예산선심제’ 등을 채택함
  - 일본의 경우, 예산배정을 통해 통계조정을 행하는 방법과 통계조정 업무를 통계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기능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는 방법을 모두 적용함
- 총무성은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지정통계조사 실시의 사항에 대하여 사무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 선심제를 통한 통계조정기능을 행사하고 있음
  - 총무성 통계국은 통계법과 총무성 조직령에 기초하여 정부부처의 통계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갖고 있어 각 부처의 통계예산에 대해 예비 검토하는 일종의 사전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음
  - 예산요구단계에서 통계국은 타 府·省·廳의 익년도 통계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재무성에 기존 통계로의 대체가능성, 적정 표본 수,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



## 다. 통계 개혁

- 일본은 증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making**)의 정착과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통계개혁을 위한 통계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고 2017년 ‘통계개혁추진회의최종종합(統計改革推進會議最終取りまとめ)’을 발표
  - 통계정책 개혁 실행 과제로 증거기반정책입안 추진 체계의 구축, GDP 통계를 축으로 한 경제통계 개선, 이용자 관점의 통계시스템 재구축 및 활용 촉진, 보고자 부담 경감 및 통계 업무·행정 체제의 재검토·업무의 효율화와 기반강화 등을 제시
  - 민간이 활용하는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한 통계 업무효율화와 함께 통계의 유용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초통계 전반의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를 제시
  - 특히 통계 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해 인재확보와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 추진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통계기구의 업무 조정을 통한 체제 정비, 통계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강조(정용찬, 2018)

## 라.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 일본 통계법은 통계 승인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계품질관리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조항은 없음
  - 다만 일반통계조사가 승인 시의 요건(통계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통계조사와의 중복이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기타 해당 요건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일반통계조사 중단 요구 가능
- 공적통계의 품질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평성 22년, 2010)은 공적통계

- 의 품질 평가와 통계조사 실시과정의 질 평가로 구분하여 지침을 제공
- 각 성청은 소관 공적통계의 품질에 대한 자기평가를 계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결과를 공적통계의 재검토와 개선에 활용
  - 또한 평가결과를 통계법 제9조(기간통계조사의 승인) 및 제19조(일반 통계조사의 승인)에 기초한 승인심사에 활용하여 승인심사에 관계하는 각 성청의 부담 경감을 도모
  - 각 성청은 소관 통계조사의 실시과정(조사 기획, 실사, 심사, 집계, 결과 공표 등)의 품질에 대해 자기평가를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과정 평가 결과를 통계조사의 재검토와 개선에 활용해야 함

<표 5-9> 일본 공적통계의 품질평가 사항

구분	내용
주요 요소	니즈 적합성, 정확성, 적시성, 해석가능성·명확성,
보충적 요소	신뢰성, 정합성·비교가능성, 접근 가능성, 효율성

<표 5-10> 일본 통계조사 실시과정의 질평가 사항

구분	내용
조사업무 수행의 적정성, 확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조직과 책임, 조사의 비밀유지·보관, 기록에 관한 일반사항, 업무능력과 교육훈련, 업무의 위임·위탁
조사의 기획관리	업무의 위임·위탁의 제시·설명, 조사표 변경, 표본설계 및 표본 추출, 조사의 진행관리, 조사관련 정보의 취급, 조사관련 정보의 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데이터 수집	조사표수집업무의 실시상황 파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조사 정보 등의 수집,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명, 조사대상자에 대한 배려, 통계이용자에 대한 행정기록정보 등의 활용 상황 명시, 지도원·조사원의 모집·임명, 지도원·훈련원의 교육훈련, 지도원증·조사원증의 발행·교부, 지도원·조사원에 대한 업무설명, 지도원·조사원에 대한 개별지시, 조사표의 수집 상황 기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상 관련 유의사항, 지도원·조사원의 활동상황의 확인, 조사표의 수집결과에 관한 기록
데이터 관리와 처리	조사표 및 조사표 데이터의 정정, 조사표 데이터의 정확성 등의 확보

## 5. 시사점

- 통계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기관의 독립성, 예산권, 통계 조정의 실효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의 통계 수석(Chief Statistician) 제도는 정부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에 대한 예산 조정권을 통해 통계 승인 이후 분산된 통계 생산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
- 영국의 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도 공식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하여 분산형 통계생산 제도가 갖는 조정 문제를 보완
- 일본은 행정 제도를 총괄하는 총무성에 통계국이 소속되어 있으며 총

무성의 정책총괄관(통계기준담당)이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여 부처간 통계 조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

※ 총무성은 행정 관리, 지방자치,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관장. 1984년 행정 관리청을 폐지하고 총무청을 설치한 이후 2001년 중앙성청 개편을 통해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을 통합하여 총무성을 설치. 산하 기관에 통계연구연수소 등이 있음(정용찬, 2018)

<표 5-11> 국가별 통계 생산 체계와 특징

국가	통계 생산 체계	특징
영국	○ 통계청과 주요 정부 기관이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 의원내각제 하에서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통계위원회가 통계청 감독, 통계조정 기능 담당 ○ 주요 국가 통계를 통계청과 부처가 생산
미국	○ 재무부(센서스국), 노동부(노동통계국) 등 주요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통계 수석이 통계조정 기능 담당 ○ 부처의 통계 담당 기관이 주요 국가 통계 생산
일본	○ 총무성 통계국과 부처가 주요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 행정 관리를 총괄하는 총무성이 통계 조정 기능 담당 ○ 국가통계위원은 총리가 임명
한국	○ 기재부 외청인 통계청과 주요 부처가 주요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 기재부의 외청인 통계청이 통계 조정 업무 담당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기능을 국가통계위원회가 담당(위원장 기재부장관)

자료: 정용찬(2018). p.31.

- 영국, 미국, 일본 모두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통계기관이 총괄하여 집중형 제도의 장점을 일부 도입
- 중앙통계기관은 범정부적 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통계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도모
- 특히 분산형 체제에서는 영국의 GSS(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미국의 ICSP(Interagency Council of Statistical Policy)와 같은 정부통계 작성 기관 간의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

〈표 5-12〉 분산형 통계 제도 국가의 통계조정

국가	조정주체	주관기관	주요기능
미국	예산관리처 (OMB)	대통령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예산총괄기능</li> <li>국가통계 발전에 관한 계획 및 비전</li> </ul>
	증거기반정책위원회 등	의회 및 대통령실	통계개혁의 방향설정 및 중요 어젠더 제시
영국	영국 통계청 (ONS)	영국통계 기구 (UKSA)	중요 통계 작성 및 정부 통계 업무의 기획 조정
	정부 통계 협의회 (GSS)		정부통계의 작성 및 보급, 공식 통계의 제공
일본	정책총괄관 (통계담당)	총무성	통계기준 설정, 통계업무 조정 등 통계 총괄 및 조정업무
	통계개혁추진회의	총리실	국가통계의 개혁방향 제시, 통계발전을 위한 어젠다 제시 등

자료: 이재형 외(2017),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로드맵 연구, p.302의 표를 수정.

-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승인제도와 품질진단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통계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님
  - 영국은 국가통계 지정과정에서 평가(Assessment)와 재평가를 통해 국가통계가 통계실천규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통계 승인을 취소. 또한 품질 평가 보고서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통계 부처와 조사 부처간의 의견교환 공문까지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통한 품질제고를 도모
  - 일본도 일반통계조사가 승인 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의해결을 위한 필요 조치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통계조사 중단을 요구. 품질진단의 경우 ‘공적통계의 품질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기평가 결과를 공적통계의 재검토와 개선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간통계조사와 일반통계조사의 승인심사에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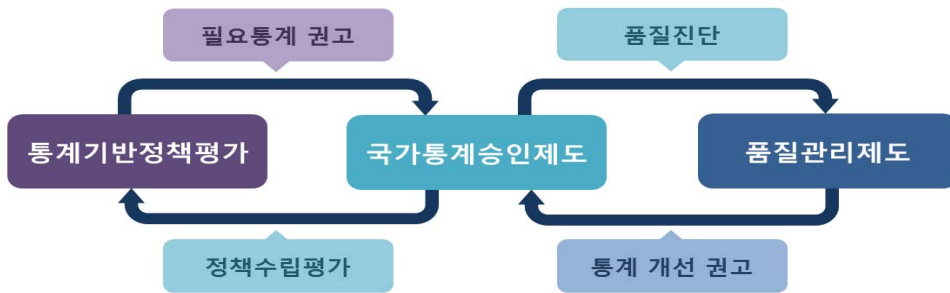
- 연방 통계기관의 통계사업 품질평가 기준을 비용(Cost), 전파(Dissemination), 임무달성(Mission Achievement)이라는 사업 성과(Program Performance)의 관점에서 재설계한 미국의 사례는 승인과 품질진단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 또한 성과관점의 통계 품질진단 체계 재정립은 프로세스 점검이라는 통계 품질진단의 패러다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가능
- 한국이 적용하고 있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나 통계가 정책 지원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요국 모두 통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통계기반정책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
-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을 2016년에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한 미국은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생성 능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획득, 결합 업무를 담당할 국립데이터서비스청(National Secure Data Service) 신설을 제안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부처 간 증거구축활동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관리예산처(OMB)의 조직 개편을 권고하고 부처 내 평가 업무 조정과 협업을 담당할 최고평가책임자 지정하거나 자리를 신설할 것을 권고한 점은 조직과 인력의 개선 필요성을 의미

### 제3절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 1. 관련 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는 정책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
- 통계기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통계의 개발이 중요하므로 업무 프로세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통계품질관리제도 또한 국가통계승인제도와 연계하여 승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설계가 필요함

[그림 5-11]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 현행 통계법에서는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 개선을 요구하도록 규정(제12조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통계 승인시에는 작성 계획서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승인 단계에서는 품질이 확보된 통계의 생산 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영국의 사례와 같이 통계위원회가 부처가 작성하는 공공통계 중에서 통계실천규약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통계를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로 지정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통계기반평가제도의 경우에도 이를 위한 필요통계의 생산 등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통계승인제도와 원활한 연계가 필요

<표 5-13>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현행 프로세스

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정기통계품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평가 요청</li> <li>-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를 통계청에 제출</li> <li>- 제출서류: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li> <li>- 각 부처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제출</li> <li>-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실질평가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 승인 신청</li> <li>• 통계작성 승인 접수</li> <li>- 신청서류 심사</li> <li>- 통계청 내 관련 부서, 통계조정소위원회 또는 통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li> <li>- 신청서류 흠결사항 보완</li> <li>• 요건 검토</li> <li>• 보완 요구 이행</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통계승인 절차 이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li> <li>- 예비평가요청서 접수된 다음 날부터 10일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 활용권고"인 경우 입법예고 만료 시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 여부 결정, 승인 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제기 및 재평가</li> <li>- 이의제기기간: 평가결과 접수일부터 7일</li> <li>- 재평가기간: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7일</li> <li>- 평가요청(관계)기관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 승인 통지 및 고시</li> <li>• 변경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평가 요청</li> </ul>		



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정기통계품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기간: 예비평가 결과 통보서(실질평가 대상) 접수일 부터 15일</li> <li>- 제출서류: 실질평가 요청서, 통계개발·개선계획 등</li> <li>•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li> <li>- 처리기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통계품질진단 절차 이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된 통계정보보고서는 품질 지표들의 설명여부를 표기토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통계작성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li> <li>• (수탁기관) 1차 진단/보완 요청</li> <li>-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단(이용자 대상의 FGI 실시)</li> <li>- 자료수집 체계 점검</li> <li>- 표본설계 점검</li> <li>• (작성기관) 통계정보 보고서 보완</li> <li>• (수탁기관) 2차진단</li> <li>- 보완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품질지표별 진단</li> <li>- 「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10개의 작성절차별로 품질지표를 구성하여 통계의 품질수준을 측정함</li> <li>• (작성기관/수탁기관/통계청) 작성기관 간담회</li> <li>• (수탁기관/통계청) 통계별 진단 결과 보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과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 요구</li> <li>-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li> <li>-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최종보고회</li> <li>-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공</li> <li>- 진단결과 보고서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제기 및 재평가</li> <li>- 이의 제기기간: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li> <li>-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20일</li> <li>- 소관(관계)기관과 협의가 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 권고</li> <li>- 새로운 통계 작성 필요시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결과 보고 및 환류</li> </ul>

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정기통계품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과제 이행 점검</li> <li>- 개선과제(중점관리과제, 기관관리과제) 중 통계청은 중점관리과제의 이행여부만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작성 권고</li> <li>- 평가 결과 "통계개선.개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통보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매년 2월)</li> <li>- 평가 결과 "통계지표 활용권고" 사항에 대한 활용현황 통보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매년 10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출 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자료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행위 시정요구 및 징계처분 요구</li> <li>- 통계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불응</li> <li>- 미승인, 작성 중지, 승인 사항 변경</li> <li>- 벌칙, 과태료의 부과</li> </ul>	

○ 국가통계승인제도와 품질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선 승인, 후 품질진단 제도를 계획 승인과 통계 승인의 2단계로 구분 필요

- 신규통계 승인 요청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현재처럼 계획서를 근거로 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조사 결과 통계가 산출되면 품질진단을 통해 해당 통계의 승인 여부를 결정
- 영국 사례와 같이 국가통계 목록에 품질 평가결과도 함께 게시하여 국가승인통계와 품질진단 결과가 실제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영국은 국가통계로 지정한 모든 통계를 종합한 국가통계목록(List of National Statistics)을 공개하는데 목록에는 통계 주제, 생산자 이름, 제목, 통계가 관련된 지역(국가), 게시 빈도 및 평가 보고서 번호가 포함

- 품질 평가 보고서는 물론 부처 간 주고받은 평가 관련 공문까지 공개하는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통계 품질과 관련된 투명한 책임 행

정 구현을 통한 품질 제고 시스템 작동을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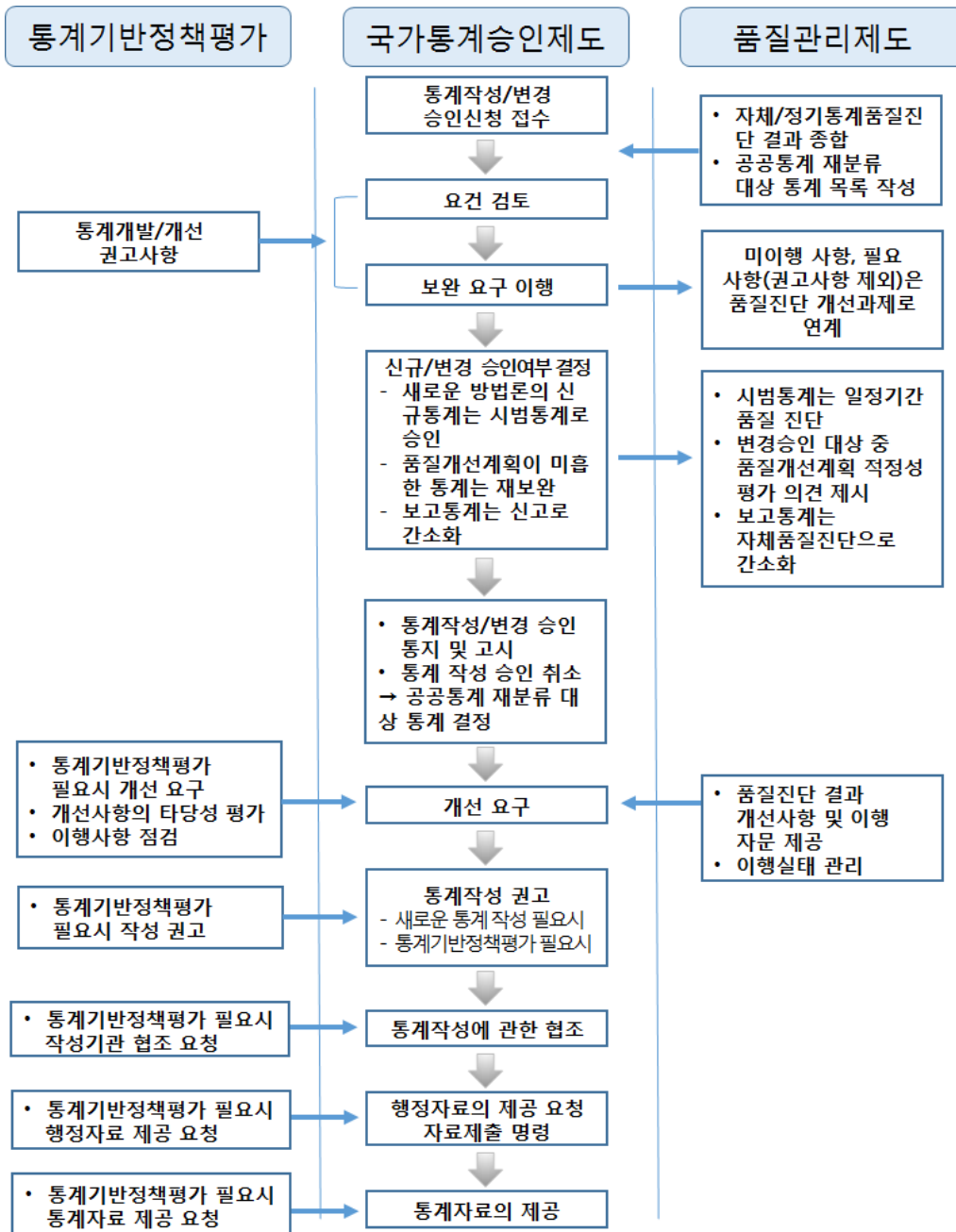
※ 통계청 홈페이지나 국가통계포털에도 개별 국가통계와 품질 진단 보고서를 연계 게시할 필요가 있음

- 통계기반정책과 국가통계승인제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통계기반정책 평가 필요시 통계 작성, 개선 권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필요통계 개발 개선 수요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없을 경우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에 반영하거나, 국가통계 수요조사와 연계 필요
  - 또한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행정자료 제공, 자료제출 명령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규 보완 필요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도입 시 이의 집행과 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구비하는 취지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와 연계가 가능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해 제시한 정량적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다부처 연계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 역할 수행이 가능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와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할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통계청,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통계법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규정 개정, 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

<표 5-14>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안)

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 및 변경 승인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 및 변경 승인 접수</li> <li>- 변경 신청 시 전년도 자체품질진단 결과 중 미비한 사항(또는 정기품질진단 결과 중 개선 사항) 개선 계획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자체품질진단 결과,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 종합하여 공공통계로 재분류 대상 통계 목록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개발/개선 권고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건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완 요구 이행</li> <li>- 전년도 자체품질진단 결과 중 미비한 사항(또는 정기품질진단 결과 중 개선 요구 사항) 개선 계획 적정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이행 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제외되었지만 필요 사항은 품질진단 개선과제로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및 변경 승인 여부 결정</li> <li>- 신규 승인 대상 중 빅데이터, 새로운 방법론 적용 통계는 시범통계로 승인(품질 개선 이행계획 첨부) 후 품질진단을 거쳐 승인</li> <li>- 변경 승인 대상 중 품질 개선 계획 미흡한 통계는 재보완 요구</li> <li>- 보고통계는 신고로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통계는 자체품질진단으로 간소화</li> <li>변경 승인 대상 중 품질 개선 계획 적정성 평가 의견 제시</li> <li>시범통계는 품질 개선 이행 계획 기간 중 품질 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 및 변경 승인 통보 및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 승인 취소</li> <li>- 공공통계로 재분류 대상 통계 결정</li> <li>- 공공통계로 재분류 통계 목록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개선 요구</li> <li>개선사항의 타당성 평가</li> <li>이행사항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 요구</li> <li>-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li> <li>-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등</li> <li>- 이행결과 제출 요구 및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 및 이행 자문 제공</li> <li>이행실태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작성 권고, 또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 권고</li> <li>- 새로운 통계 작성 필요시</li> <li>-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작성기관에 협조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에 관한 협조</li> <li>- 승인통계 작성 필요시</li> <li>-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행정자료 제공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료의 제공 요청</li> <li>- 승인통계 작성 필요시</li> <li>-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 통계자료 제공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자료의 제공 요청</li> <li>- 승인통계 작성 필요시</li> <li>- 통계기반정책평가 필요시</li> </ul>	

[그림 5-12]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안)



<표 5-15> 선순환제도 개선 기대효과

개선방안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업무 통합 조직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개발·개선 권고사항 및 승인신청이 연계되어 승인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li> <li>심사 권고 사항 이외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며 사후 품질진단 개선과제 연계프로세스 구축이 수월해짐</li> <li>통계수요조사 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단계로 환류되는 과정이 간소화되며 통계개발의 적합성 및 활용도 제고가 가능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작성승인과 변경승인의 차등화 및 품질진단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통계작성방식에 따라 효율적인 품질관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인통계와 시범통계로 이원화하여 승인 및 품질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통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통계의 활용도 제고</li> </ul>

-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계기반정책, 국가통계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간의 효과적인 연계뿐 아니라 통계 예산 편성 절차의 개선도 필요
  - 통계 승인과 품질관리, 통계기반 정책 등 통계 행정 업무의 선순환은 필요 예산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특히 2010년부터 적용 중인 중앙부처 통계예산의 통계청 사전 검토는 예산 조정이 아닌 검토 의견에 불과하여 중복사업 조정, 품질 우수 통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효율적 통계사업 관리에 한계
- 전자정부사업과 정부R&D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 조정 단계에서 각각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전체 국가통계사업 예산 조정 역할을 통계청이 담당하도록 개선 필요
  - 산하기관에 배정된 통계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통계 예산을 총괄하여 통계청이 세부 사업 예산을 검토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이를 통해 중복 통계 생산 방지, 관련 통계간 연계 강화, 품질 우수 통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국가통계예산의 효율적 배분 가능

<표 5-16> 국가통계 예산 편성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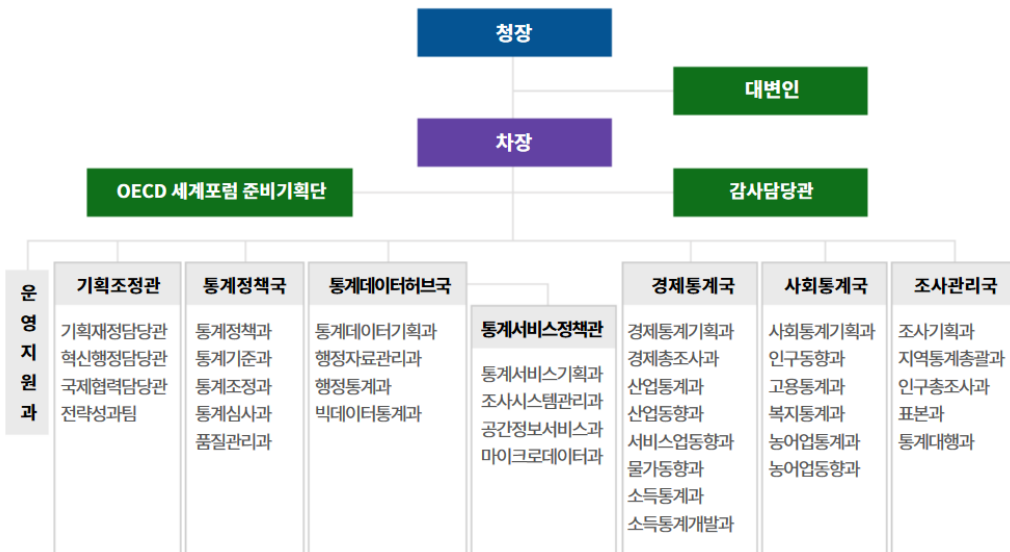
구분	절차
연구개발(R&D)사업 예산 조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⑤항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내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li>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부처별, 회계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대상 주요 연구개발사업 배분·조정안 제시</li> <li>-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배분·조정안은 유사중복 해소, 다부처 공동사업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amp;D 총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간 자원 조정가능(조정사유 제시)</li> </ul> </li> </ul>
국가통계 예산 편성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 계획: 개별 부처</li> <li>• 사업 선정, 예산 조정: 통계청(국가통계위원회)</li> <li>• 예산 확정: 기획재정부</li> <li>• 예산 확보: 부처(장기적으로 통계청)</li> <li>• 사업 수행: 부처</li> </ul>

자료: 기획재정부(2018).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2.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수요자 관점의 조직 개선

-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통계정책국 산하에 각각 통계조정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등 기능 중심으로 구성
  - 통계조정과와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는 해당 업무를 재정/복지, 과학/산업 등 기관(부처)별 과내 업무 분장 체계로 구성
  - 현재의 조직 구성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 있는 업무간의 원활한 연계성 측면에서는 취약한 구조
  - 수요자(부처 등) 관점에서는 해당 부처 관련 승인업무와 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업무를 동일한 담당자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부처의 통계 업무 만족도 제고가 가능

[그림 5-13] 통계청 조직도





<표 5-17> 현행 조직 및 업무분장

담당과	인력	주요 업무	업무분장 형태
통계 조정과	사무관 5 주무관 7 실무관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신규통계작성, 작성변경 및 중지 등의 승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평가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경제/금융/에너지 보건복지여성인구 고용교육정보통신 국토문화행정지역
통계 심사과	사무관 5 주무관 7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수립/시행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문화/해양 재정/복지 과학/산업 농림/환경 국토/고용
품질 관리과	사무관 4 주무관 7 실무관 2 수습 1	국가통계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 운영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 기법 개선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실시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토금융환경행정시도 과학통신해양농림어업 보건복지고용여성교육 경제재정산업문화

- Pollitt(1984)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의 원리 중 부처 통합은 정책을 조정하고 조직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함(김근세 외, 2014)
  - 특히 수평적 통합조직의 경우 거래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업무 연계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이는 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증대시킴
- 대 부처 업무 성격을 지닌 정부 조직 중 감사원과 특허청은 부처 전담 방식으로 조직 편제
  - 감사원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등 감사 대상인 부처별 전담 조직으로 구성
  - 특허청은 생활가전, 사무기기 등 특허 대상 기기별 전담 조직 구성

<표 5-18> 감사원, 특허청 조직 구성 특징

구분	조직 구성	특징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사무차장 11국 42과</li> <li>• 공직감찰본부는 감사청구, 특별조사, 민원조사 업무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대상 부처별 전담 체계</li> </ul>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20과 6팀</li> <li>• 특허심사기획국은 특허심사기획과 제도 업무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대상 기기별 전담 체계</li> </ul>

[그림 5-14] 감사원 조직도



[그림 5-15] 특허청 조직도



-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통계업무별(승인, 심사, 품질진단) 조직에서 정부 업무분야별(부처별) 담당 체계로 개편
  - 부처별 담당 체계는 정부 부처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통해 통계 개발/개선 권고를 받는 경우 통계개발 과정에서 통계승인 신청업무와 원활하게 연계 가능
  - 또한 통계승인과 품질진단 담당 조직이 동일하므로 승인 이후의 품질에 관한 관리의 내실화 기대 가능. 특히 승인제도 개선으로 시범통계 제도가 적용될 경우 시범통계의 승인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모니터링 가능
  - 통계청 담당자도 담당 부처의 해당 업무와 통계에 대한 이해도 증가로 업무 전문성 향상 가능
  - 부처별 담당 체계는 통계수요자(부처 통계 담당자)의 입장에서 해당 통계에 관한 승인과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표 5-19> 수요자 관점의 조직 개선(안)

현행	개선	주요 업무
통계조정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통계정책1과	재정/경제/과학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산업/금융/농림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정책2과	사회/복지/고용/여성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국토/해양/환경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정책3과	문화/교육/행정/지역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공공기관 분야 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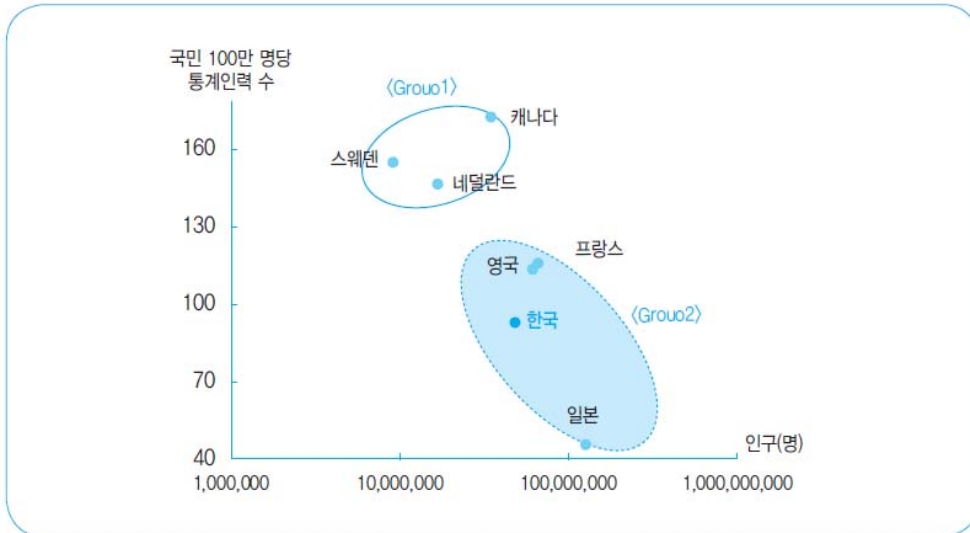
### 3.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 우리나라의 통계 전문 인력 규모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
  - 인구, 국토 규모가 유사한 국가(영국, 프랑스)와 비교해도 통계 인력

규모는 낮게 나타남

- 특히 통계업무별로 인력현황을 보면, 통계기획·분석과 같은 전문인력의 비중은 현장조사 인력에 비해 현저히 낮음(한국통계진흥원, 2014)

[그림 5-16] 국가별 통계인력 비교



자료: 한국통계진흥원(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 사업: 국가통계시스템구축,” p.46. 원출처는 박재용 외(2011). “국가 통계미래전략”, p.67.

- 통계지표 기획·수립 등을 지원하며 전문적 자문을 줄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12)
  - 특히 공공통계의 신설로 부처의 통계 관리 업무가 강화될 경우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각 정부 부처별로 통계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 통계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통계담당관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강행규정(強行規定)으로 개선 필요

〈표 5-20〉 통계전문가 확보 법령 개정안

구분	내용
통계법 [법률 제8541호]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법 개정(안)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담당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국가통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영국은 국가통계와 승인통계와 관련한 국민 인식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Visual.ONS**를 통하여 공식통계의 시각화를 구현,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표
  - 공식통계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자료 보급방안에 대한 교육 자료 작성 및 배포
  - 각종 통계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모든 공식통계를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및 생산통계자료의 보급도 확대
  - ※ 출처: 국가통계 전략 2015-2020(Strategy for UK Statistics 2015 to 2020), 2014
- 우리나라의 경우 승인통계 작성 체계가 부처-유관기관-협회 등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로 되어 있으나 통계 교육, 홍보 등은 작성 기관 위주로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
  - 특히 부처의 통계생산을 대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하 기관(진흥원, 개발원, 정보원 등), 협회, 단체 등은 통계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교육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통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절실

- 공공기관으로 승인제도 관리 범위 확대 시 제외되는 유관 기관,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홍보 필요

※ 프랑스 중앙통계기관인 INSEE(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는 정부부처에 통계관을 파견하여 통계작성 업무를 지원하며, 통계기관 외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이재형 외, 2017)

## 5. 관련 기관간 협업 제도화로 통계관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 현재 주요 부처는 통계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통계담당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통계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등은 통계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분야 통계발전을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 하도록 명시
-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표 5-21> 주요 부처의 통계 담당 조직

구분	조직별 기능	특징
환경부	총괄: 문체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기획/관리: 환경연구개발과 (3명)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문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17명) 기획/관리: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통합관리부(6명) 생산/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46명),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연구원을 통계업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정관에 문화관광 통계 생산·개발 및 분석 기능을 명시
교육부	총괄: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담당관(7명), 기획/연구: 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 연구본부 총괄(3명), 교육통계센터(47명), 교육지표연구실(20명) 총 70명 생산: 교육개발원 등	부처 통계 전담조직 운영 연구기관이 기획, 생산 전담 (교육개발원)
보건	총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7명)	부처 통계 전담조직 운영

구분	조직별 기능	특징
복지부	기획/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31명) 생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이 기획, 생산 전담 (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기획/관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산/연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등 10여개 유관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 기관으로 명시
국방부	총괄: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혁신행정담당관	국방전산정보원을 국방통계시스템 종합계획 수립·시행, 유지보수의 총괄기관으로 명시

- 최근 환경부의 경우 환경통계 재정립, 품질관리체계 개선, 활용성 강화 (접근성 포함)의 3가지로 주제를 나누어 환경통계에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수립
  - 통계기반 정책수립 등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언론, 국회등 에서의 통계 수치, 작성과정에 있어서 오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는 것이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의 배경
  - 각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별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취합하여 모으고, 연구개발과에서 검토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을 모두 취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통계생산에 대한 요구, 관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체적인 관리체계 및 관련 훈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정책기획관과 통계 책임관이 부처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승인진행통계 포함 총 20개 통계가 있고, 부처 특성상 관리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내용 영역, 범위가 문화, 체육, 관광 종교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있음
  - 각 담당 부서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 작성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된 부분들도 존

재하므로 통계 책임관이 기획조정 단계에서 관리하는 중앙 집권적 관리체계를 수립, 유지

-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통계 작성, 변경하는 경우 통계 책임관 실무자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각 과의 통계 생산, 관리, 보급에 걸친 전반적인 부분의 진행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모니터링

- 국가승인통계 이외에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통계”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 통계 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

\* 국가승인통계로 신청이 불가능한 각종 “인식조사” 등이 이에 해당

- 또한,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통계 중 품질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내부통계품질진단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규정에 명시

○ 통계청, 부처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관련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제도화하여 산학연관 협치(거버넌스)로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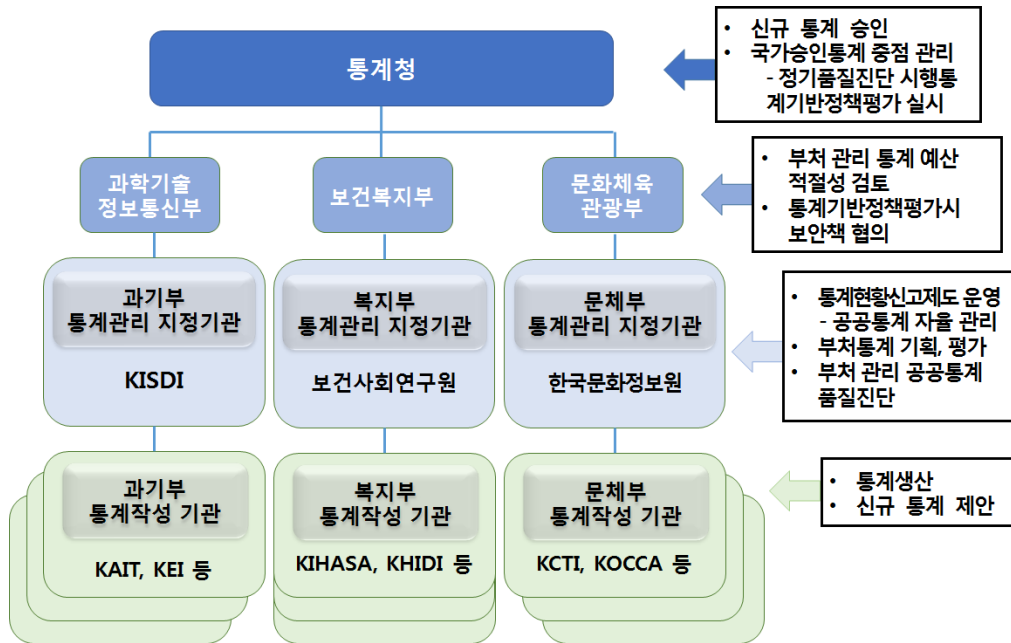
- 부처별로 업무 전문성을 보유한 통계 관리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부처 통계 전반에 대한 기획·평가 수행을 통한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업무 지원기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지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관련 통계 기획 및 평가 전담기관으로 KISDI 지정 사례를 참고하여 부처별 통계 지원 전담 기관 지정제도를 권장

- 국가승인통계 작성 과정에 정부, 공공기관(진흥원, 공사, 공단, 재단, 연구소), 협회, 조사회사 등이 협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회사와 같은 민간 기관의 경우 자체 생산 통계 중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민간 품질인증기구의 인증 제도를 통해 광의의 국가통계 생산 시스템에 포괄 필요



[그림 5-17] 통계 체계화 및 전문화 구조도(안)



## 6. 데이터 시대의 대비 위한 통계청의 위상 재정립

-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자산’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 통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의 위상 재정립은 시급한 실정<sup>41)</sup>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통계개혁과 증거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은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 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설계를 의미
  - 우리나라도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재편과 전문성 강화 노력은 미흡한 실정
    - ※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연합뉴스, 2018. 8. 31)
  -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 제출 등으로 통계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계가 국가 중요 사안으로 대두
- 현재 통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17. 12.)’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
  - 통계법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제18조),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제24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제12조의2),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6조), 통계정보시스템구축 등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데이터제공 요청(제11조),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제15조),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제20조), 데이터분석센터(제21조) 등과 매우 유사하여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
  -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의 관점에

---

41) 이재형 외(2017)는 우리나라 통계 조직의 문제점을 분산형 통계제도를 뒷받침할 조직기반 부실과 통계인력 부족, 통계정책 및 통계조정에서 거버넌스 기능 및 리더십 취약, 국가통계위원회의 기능 불충분, 연구·분석기능의 취약으로 지적.

서 행정 서식 및 업무 절차 재설계, 행정 부처 간 자료 공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규제 개혁,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표 5-22> 데이터(통계) 기반 정책 및 인프라 구축 계획

구분	행안부	통계청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li> <li>○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법률안 제출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통계위원회(기재부장관)</li> </ul>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제5조)</li> <li>-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li> <li>-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제18조)</li> <li>-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제21조)</li> <li>-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제23조)</li> <li>- 공공데이터의 제공(제26조)</li> </ul> </li> <li>○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17. 12.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제6조)</li> <li>- 데이터의 등록 등(제9조)</li> <li>- 데이터제공 요청(제11조)</li> <li>-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제15조)</li> <li>-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7조)</li> <li>-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제18조)</li> <li>-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제19조)</li> <li>-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제20조)</li> <li>- 데이터분석센터(제21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통계위원회(제5조의2)</li> <li>-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제18조)</li> <li>-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li> <li>-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제24조의2)</li> <li>- 통계기반정책평가(제12조2)</li> <li>-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6조)</li> <li>- 통계정보시스템구축 운영(제7조의2)</li> </ul> </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운영</li> <li>○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발표('18.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통계포털(kosis.kr) 운영</li> <li>○ 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 개소('1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서울 개소 예정('19)</li> </ul> </li> </ul>

자료: 정용찬(2018). p.31.

○ 통계청은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데이터관리 전문 조

직으로 재탄생이 필요

- 국가통계 생산이 경제 통계 중심에서 문화, 보건복지 등 국가 행정 업무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고 국가 정책에서 통계와 데이터가 차지하는 위상 변화를 감안하면 국가 데이터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전환이 필요
- 특히 분산형 통계생산 체계에서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국가통계 예산 전반에 대한 조정 기능과 조사통계 위주에서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 조직이 필요
- 국가통계의 기획과 생산, 평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총리실 직속의 국가통계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격상이 필요.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영국의 통계위원회(UKSA)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통계 전담기관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 설치 필요<sup>42)</sup>
- 단기적으로는 청와대에 (가칭)데이터 수석을 신설, 미국 대통령실의 통계수석(Chief Statistician) 제도와 유사하게 국가통계를 포괄한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 검토 필요

<표 5-23> 통계조직 개편안

구분	주요 기능
총리실 직속 국가통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통계의 기획과 생산, 평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li> <li>-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할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li> <li>※ 현재 총리실 직속 기관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li> </ul>
청와대 데이터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데이터 전략, 데이터·통계 기반 행정, 데이터·통계 이용 활성화</li> <li>• 국가통계기획, 통계조정, 통계예산, 통계기준/표준화 담당</li> </ul>

42) 국가통계위원회 개편방안으로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방식(영국식) 이외에도 통계행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기구(미국식) 방식이 가능(이재형 외, 2017).

- 통계와 정책간의 연계 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통계 생산 중심에서 지표 생산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조사 방법론과 이론의 개발 등 연구개발 전문성 강화가 시급
- 특히 조사 환경 악화에 따라 행정자료와 빅데이터 등 민간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통계 이론과 방법론 개발을 담당할 전담 조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통계개발원의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
  - ※ 미국의 연방통계방법론위원회(FCSM, The 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의 경우 통계품질 평가 틀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통계기관정책조정위원회(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에 품질 관련 자문 기능 수행
  - ※ 프랑스는 INSEE 자체가 “국립경제통계연구소”인 만큼 강력한 연구·분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산하기관인 경제·통계연구센터(CREST,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s and Statistics)에서는 경제전반 및 통계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이재형 외, 2017)

## 7. 단계별 실행 전략

- 통계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개선은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포괄하는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단계별 개선을 통해 통계청 조직 내부뿐 아니라 부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선순환 체계 도입 준비기('19)인 1단계는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진단, 직무 분석, 개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부처 통계담당관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통계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함
-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현행 업무 프로세스 진단,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 도입 시범 사업을 위한 부처 선정을 진행.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교육/홍보 확대 방안을 수립하며 시스템 구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

- 선순환 체계 도입기('20-'21)는 조직을 정부업무분야별(부처별) 담당 체계로 개편하고 선순환 체계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함.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시범 사업(2~3개 부처)을 개시하며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홍보를 확대함. 또한 승인/평가/통계기반정책 업무 연계 시스템 사업을 발주
- 선순환 체계 확립기('22-'23)는 조직/업무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식별, 개선하고 선순환 체계 도입에 따른 성과 분석과, 확산 방안을 수립함.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부처를 확대하고 부처, 공공기관 등 통계 유관기관 대상 교육/홍보 내실화

<표 5-24> 관리체계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

구분	주요 실행 방안
1단계 선순환 체계 도입 준비기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인력: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진단, 직무 분석, 개선 공감대 형성 부처 통계담당관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통계법 개정</li> <li>• 관리 체계: 선순환 체계 도입을 위한 현행 업무 프로세스 진단, 프로세스 개선 방안 확정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 도입 시범 부처 선정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도출 및 교육/홍보 확대 방안 수립</li> <li>• 관리 시스템: 시스템 개선 방안 도출</li> </ul>
2단계 선순환 체계 도입기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인력: 통계업무별(승인, 심사, 품질진단) 조직에서 정부업무분야별(부처별) 담당 체계 로 개편 국가데이터관리 전문 부처로 조직 개편 타당성 검토</li> <li>• 관리 체계: 선순환 체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법령 개정)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시범 사업(2~3개 부처) 개시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홍보 확대</li> <li>• 관리 시스템: 시스템 개선 사업(승인/평가/통계기반정책 업무 연계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개 선) 발주, 안정화</li> </ul>
3단계 선순환 체계 확립기 ('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인력: 조직/업무 개편에 따른 문제점 식별, 개선</li> <li>• 관리 체계: 선순환 체계 도입에 따른 성과 분석, 확산 방안 수립 통계기획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 전담기관 지정 부처 확대 부처, 공공기관 등 통계 유관기관 대상 교육/홍보 내실화</li> <li>• 관리 시스템: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착수</li> </ul>

- 통계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해 통계기반 정책평가, 품질관리제도, 국가 통계승인제도의 유기적 연계로 선순환구조의 통계 거버넌스 체계 확립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통계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그림 5-18] 통계 거버넌스 체계(안)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17). 예산추추 2017년 가을호.
- 국회예산정책처(2018). 예산추추 2018년 여름호.
- 기획재정부(2018).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김근세·유홍림·송석휘·박현신(2014). 대부처주의 정부기관의 효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1).
- 김대중(2014). 정책증거의 활용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도로 네트워크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김민경·이궁희·이기재(2004). 국가통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영원·박민규·유승동·김주영·서우석·이기홍(2016).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방법론 연구. 대한민국 법원(2017). 사법연감
- 박승민(2009).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을 향하여: 흡연 임신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성·지속성·비용효과성 분석. 극동사회복지저널, 5.
- 박재용·김재수·송영혜·장수익·안필립(2011). 국가 통계미래전략, 통계청 연구보고서.
- 박철현(2014).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발전과 국내 적용방향. 형사정책연구, 25(2).
- 오세영·윤건·오균(2017).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오철호(2015).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연구경향과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24(1).
- 윤광석(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6-04. 한국행정연구원.
- 윤영근(2013). 정책증거(policy evidence)의 시차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정책사례의 적용. 행정논총, 51(4).
- 이삼열·정의룡·이은하(2009). 시범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4).
- 이성건·박민규·강현철·전세봄(2017).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등 빅데이터 품질관리방안 연구.
- 이재형·안상훈·이성호·이창근·이경애·이지애·김수한·조진경·김주훈(2017). 국가통계발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지영(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임준규·김두만(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임준규·김두만(2015). 국가통계기관의 범위 확대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임준규·김두만(2016).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용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 KISDI Premium Report  
 18-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김경훈·유선실·정환(2016. 8). ICT 통계조사 품질진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이원태·정혁·김윤화·유선실·정부연·오윤석·박민규·권현영·오형나(2017). 조사환경 변  
 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주재욱·정혁·김윤화·하형석(2015). ICT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중소기업청(2015).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최영준·전미선·윤선예(2016).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 멘탈모델, 증거, 불확실성  
 의 상호관계에 대한 서설적 이해. 한국행정학보, 50(2)  
 통계청(2006~2018년). 품질관리 정기/자체품질진단 매뉴얼.  
 통계청(2009~2018). 국가승인 통계현황 월중 변동내역.  
 통계청(2013.4). 제1차 국가통계발전[‘13~’17년] 기본계획.  
 통계청(2014~2017).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등급.  
 통계청(2014). 2014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통계청(2015).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통계청(2016. 10). 해외 주요국 통계법령  
 통계청(2017. 12). 제2차 국가통계발전[‘18~’22년] 기본계획.  
 통계청(2018a). 국가통계 품질관리 추진실적.  
 통계청(2018b).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통계청(2018c).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통계청(2018. 2).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매뉴얼  
 한국정보화진흥원(2018.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  
 한국통계진흥원(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 사업: 국가통계시스템구축.  
 한국행정연구원(2012).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해외]

ABS(2017), Forward Work Program.

Christiane Arndt(2014). OECD Framework for Regulatory Policy Evaluation. 6th Expert Meeting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OECD.

Davies, 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presented at the 4th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Federal Statistics, Multiple Data Sources, and Privacy Protection: Next Step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doi: <https://doi.org/10.17226/24893>.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doi: [10.17226/24652](https://doi.org/10.17226/24652).

National Statistics Quality Review (NSQR) Series (2) Report No. 2\_Review of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 of Payments. (2015.1).

National Statistics Quality Review (NSQR) Series (2) Report Number 1\_Review of Labour Force Survey. (2014.2).

National Statistics Quality Review (NSQR) Series (2) Report Number 3 -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2016.5).

National Statistics Quality Review (NSQR) Series (2) Report Number 4 - Foreign Direct Investment. (2016.7).

National Statistics Quality Review (NSQR) Series (2) Response to Report Number 1\_Review of Labour Force Survey. (2016.3).

Nutley, S. M., Powell, A. E., & Davies, H. T. O. (2013). What counts as good evidence

Sanderson, R. & Bremner, C.(2015). Improving quality through regular reviews: implementing regular quality reviews at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UK Statistics Authority(2014). Strategy for UK Statistics 2015 to 2020

UK Statistics Authority(2016). Delivering better statistics for better decisions, Why we need new legislation for better access to data.

UK Statistics Authority(2017).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UK Statistics Authority(2018).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Manage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Statistics.

UN(2018). UN Statistics Quality Assurance Framework.

US Department of Labor(2012). FY2012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OMB(2016). Building the capacity to produce and use evidence.

[국내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8. 5. 30)

[www.law.go.kr](http://www.law.go.kr)

국회도서관 사이트(검색일: 2018. 7. 9)

<https://www.nanet.go.kr/libintroduce/etc/libDataStatusView.do#>

국회예산정책처 사이트(검색일: 2018. 7. 9)

[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검색일: 2018. 7. 9)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MooringBill.do>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검색일: 2018. 7. 9)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연합뉴스(검색일: 2018. 8.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31/0200000000AKR20180831080200001.HTML>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검색일: 2018. 5. 7)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선거통계시스템(검색일: 2018. 7. 9)

<http://info.nec.go.kr/>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승인통계현황(검색일: 2018. 7. 9)

<https://www.narastat.kr/pms/index.do>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정책지원서비스(검색일: 2018. 7. 9)

<https://www.narastat.kr/pms/scs/css/selectConfmStatsList.do?selectMenuId=0010002300427436>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현황 월중 변동내역(2009.1.1~2018.4.30 기준, 검색일: 2018. 5. 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2/index.boar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2/index.board)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현황(2018년 4월말 기준, 검색일: 2018. 5. 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action](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action)  
통계청, 품질관리 2006~2018년 정기/자체품질진단 매뉴얼(검색일: 2018. 5. 7)  
[http://kostat.go.kr/policy/quality/qt\\_dl/1/index.board](http://kostat.go.kr/policy/quality/qt_dl/1/index.board)  
통계청, 통계품질관리 통계품질진단보고서(검색일: 2018. 5. 7)  
[http://kostat.go.kr/policy/quality/qt\\_dl/5/1/index.board](http://kostat.go.kr/policy/quality/qt_dl/5/1/index.board)  
헌법재판소 사이트(검색일: 2018. 7. 9)  
<https://www.ccourt.go.kr/cckhome/kor/newinfo/newEventStaticBoard1.do>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검색일: 2018. 5. 23)  
<https://www.data.go.kr/guide/guide/qualityAdmin.do>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http://www.cleaneye.go.kr/>

#### [외국 사이트]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검색일: 2018. 10. 15)  
<https://www.bea.gov/>  
미국 교육부 국립교육통계센터(검색일: 2018. 10. 15)  
<https://nces.ed.gov/>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검색일: 2018. 10. 15)  
<https://www.census.gov/fesac/>  
미국 노동부 통계국(검색일: 2018. 10. 15)  
<https://www.bls.gov/advisory/tac.htm>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검색일: 2018. 10.15)  
<https://www.cdc.gov/nchs/about/organization.htm>  
영국통계청(검색일: 2018. 9. 13)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osr/what-we-do/list-of-national-statistics/>  
영국 정보통계서비스(검색일: 2018. 9. 13)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

영국통계청(검색일: 2018. 9. 13)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news/release-of-the-refreshed-code-of-practice-for-statistics/>

일본 총무성, 통계법(검색일: 2018. 7. 9)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houbun2n.htm](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houbun2n.htm)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go.jp>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abs.gov.au/>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http://www.whitehouse.gov>

UK,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2018년 9월 기준, 검색일: 2018. 9. 17)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ivil-service-government-statistical-service>

Wikipedia.org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통계’, 평가기관 지정 관련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정 2017. 12.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 12 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등록통계”란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에 등록된 통계를 말한다.

**제9조(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조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①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가승인통계 및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를 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통신·방송통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b>정보통신·방송통계 등록부</b>					
통 계 명 칭		등 록 일 자			
통계관리번호		통계작성승인번호			
작 성 근 거	<input type="checkbox"/> 통계법 제18조 <input type="checkbox"/> 통계법 이외의 다른 법률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 성 형 태	<input type="checkbox"/> 조사통계 <input type="checkbox"/> 보고통계 <input type="checkbox"/> 가공통계				
작 성 목 적					
조사(보고)항목					
조사(보고)대상	단 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모 집 단				
	범 위 및 규 모				
	지 역				
작 성 기 준 시 점 (기 간)		조 사 (보 고) 기 간		작 성 주 기	
조사(보고)체계					
통계결과 항목					
통계결과 공표	<input type="checkbox"/> 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input type="checkbox"/> 비공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